# 서울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있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 차 년 도

2022



\$H서울주택도시공사 Hankook Research

#### 연 구 진

#### 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책임 성진욱 책임연구원(SH도시연구원)

연구참여 김기중 책임연구원(SH도시연구원)

#### ㈜한국리서치

조사책임 박종선 이사(여론조사사업부)

조사참여 권성욱 차장(여론조사사업부)

남휘진 대리(여론조사사업부)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차년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조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패널조사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

1차년도 조사를 통해 구축한 패널 가구 및 해당 가구의 만 19세 이상 가구원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4차조사	
	1741	2/12/1	U-1-1	기존패널 시구패널	
조사목표가구	3,000 가구	3,009 가구	2,986 가구	2,890가구 400가구	
조사완료가구	3,009 가구	2,744 가구	2,511 가구	2,320가구 401가구	
조사시기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	

조사방법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담당 기관

조사주관 5H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사수행 Hankook Research

이자료에서 제시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주자 패널조시"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 위탁조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보고서세부내용은서울주택도시공사의공식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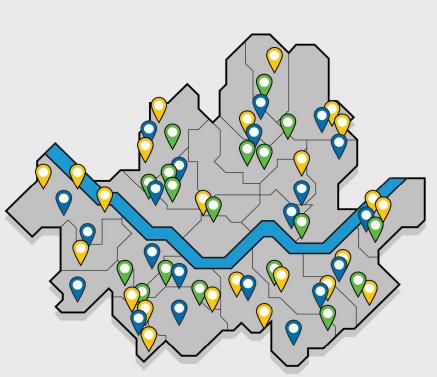
#### 기관별 추출

모집단 196,798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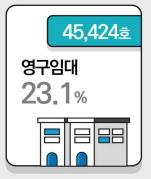
**5H** 서울주택도시공사







#### 유형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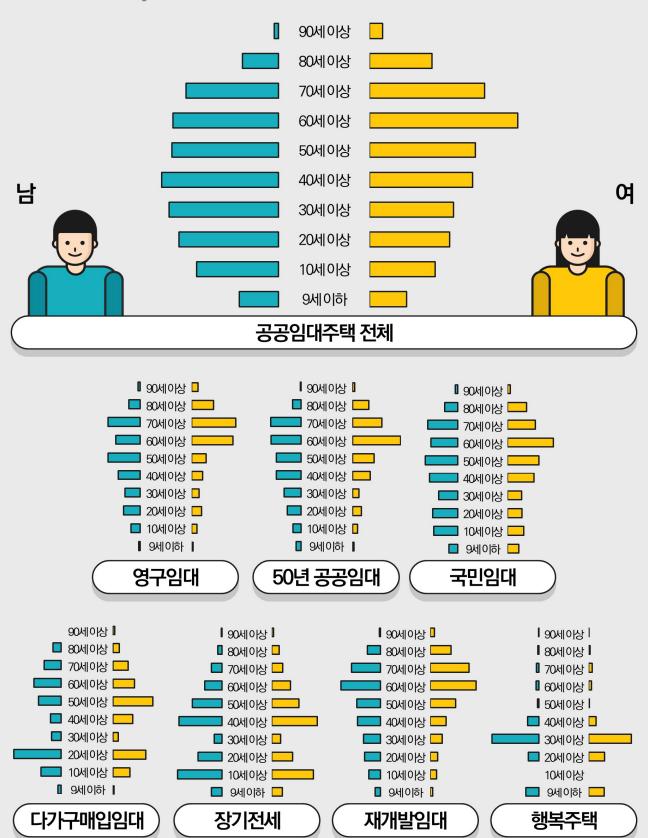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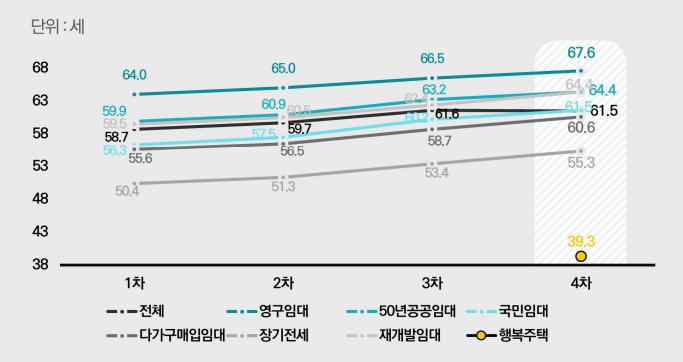


### 인구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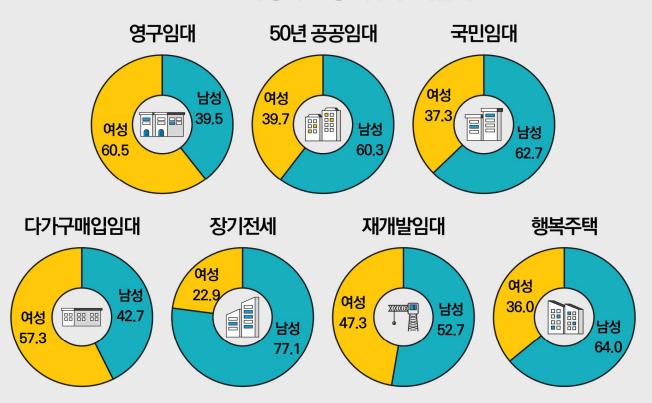
# 인구구조 전반적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음



### 가구주 나이 기구주 연령 증가, 영구임대 가장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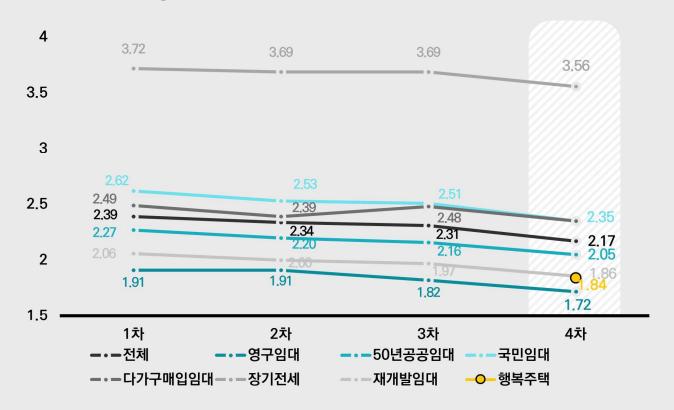


가구주 성별 영구임대·다가구매입임대 제외한 모든 유형이 남성 가구주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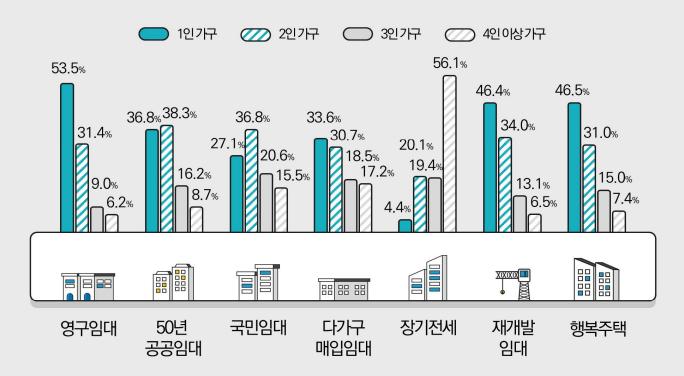
# 가구특성

### 가구원수 동거 가구원 수 점차적으로 감소



# 임대유형별 가구원 수

#### 영구·재개발임대 가구 규모 작은 반면, 장기전세는 4인 이상이 절반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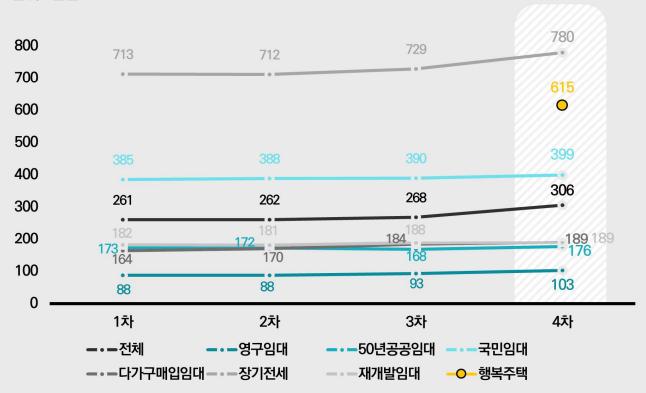
# 주거특성

#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지난 5년간 주거비 변동은 크게 없음

#### 현재주택 전환 월세 평균

단위:천원



## 보증금 및 월세 부담정도

# 10가구중 4가구는 보증금 월세 부담이 덜하다고 응답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5.5% 매우 부담된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약간 부담된다 12.5%

월세 부담 정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매우 부담된다

9.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약간 부담된다 40.7% 14.8%
---

# 주거특성

재개발

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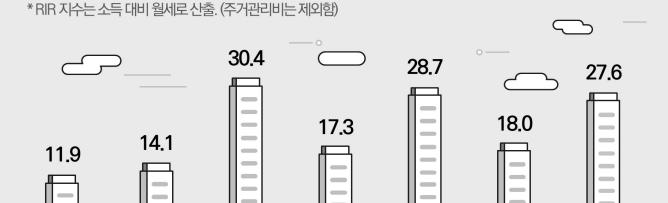
행복주택

행복주택

18.0%

#### 

#### RIR 지수



다기구

매입임대

장기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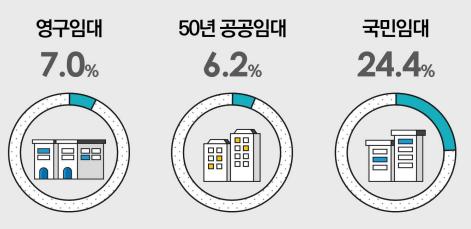
#### RIR 30% 초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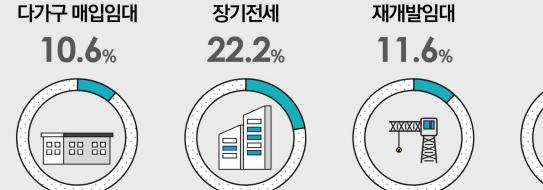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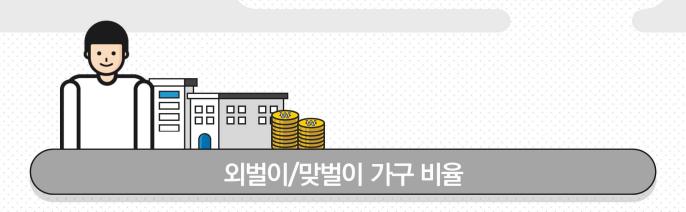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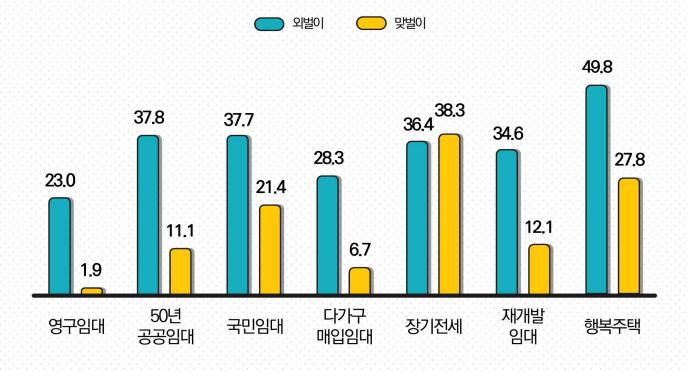


# 경제특성

# 경제활동 가구원 세 가구 중 두 가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 고용·노동특성

## 고용관계 상용직 근로자가 다수이고 주로 전일제 근무

Q. 귀하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상용직임금근로자 23.0%



고용주 및 자영업자

7.6%



임시직 임금근로자

10.8%



실업자

6.0%



일용직 임금근로자

6.3%



비경제활동인구

43.8%



Q.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73.8% 26.2%

### 고용·노동특성

#### 대표적인 블루칼라 직업이 다수를 차지 고용관계





도소매업





보건업및 스비사자본호사



숙박및 음식점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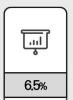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및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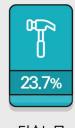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직업



단순노무



서비스



사무



전문가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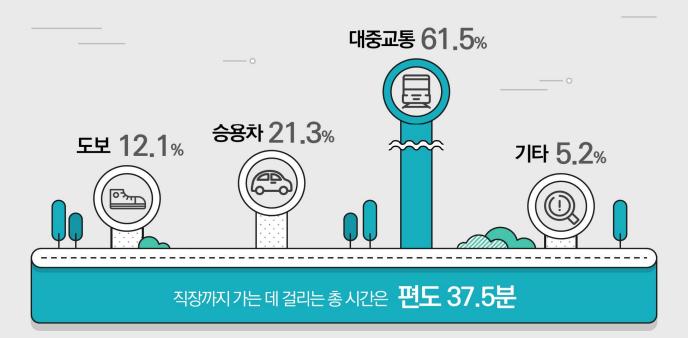
판매



기타

####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평균 38분 소요 출퇴근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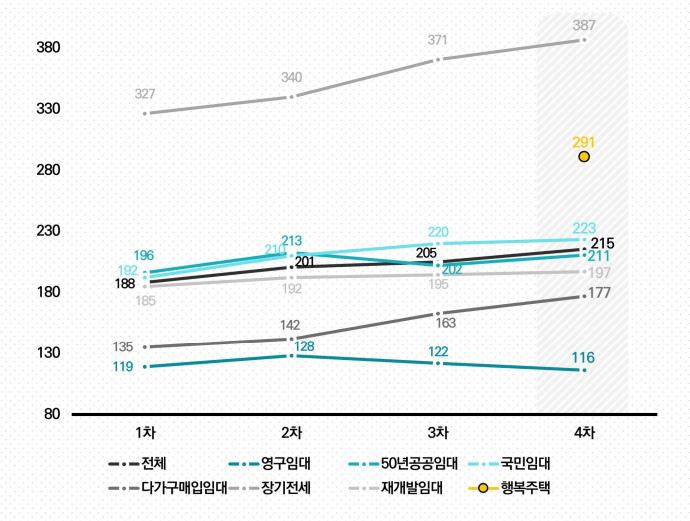
Q. 직장까지 가는 주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월 평균 가구 경상 소득

단위 : 만원

### 가구 경상소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가구특성

#### 거주기간 | 평균 거주기간은 13년 가장 오래 거주하고 있는 유형은 영구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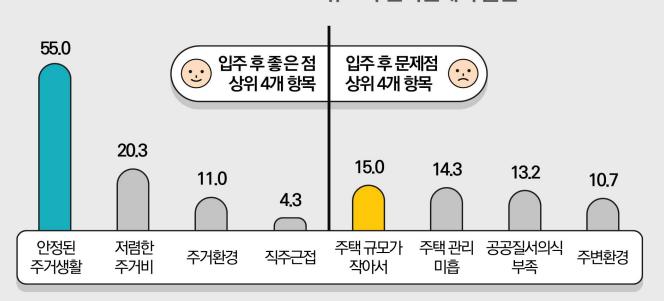
## 거주만족도 10명 중 9명이 임대주택 거주에 대해 만족

Q.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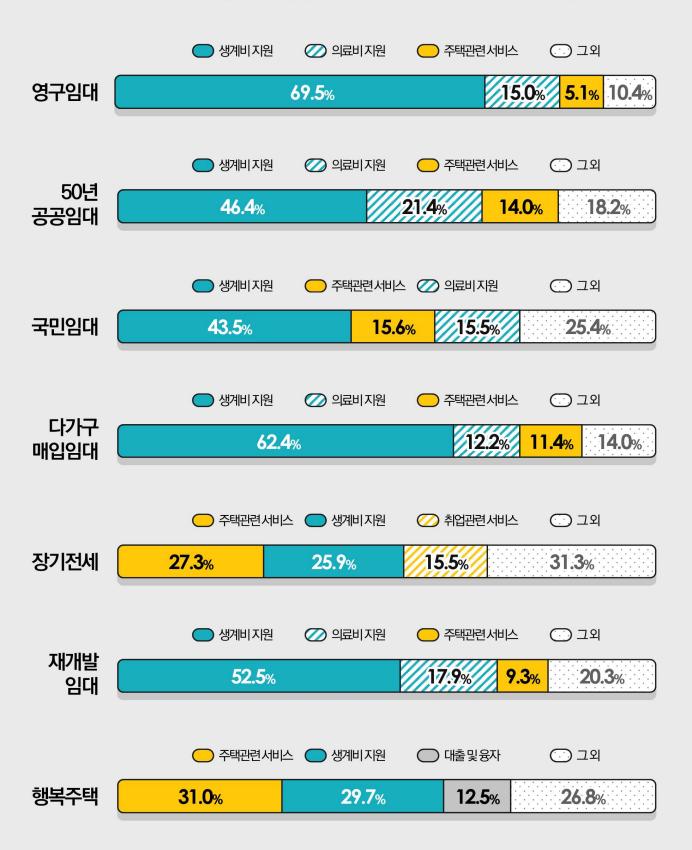
가구원용설문 응답기준임.

#### 



## 희망 및 개선 사항

### 필요 서비스 대부분 생계비 지원 서비스 희망, 장기전세·행복주택은 주택관련 서비스 희망 높은 편





### 자료 이용 전 유의사항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통계적 오차가 존재하며, 유사 조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과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 특정 시점(2016년)에 구축한 패널을 활용하는 조사 특성상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신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며, 전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본 조사 결과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리스트 DB의 모집단 정보와 부합하도록 조정한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 기본적으로 횡단가중치를 적용해 분석하였으며, 표본 구성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여러 결과를 편집하여 생성한 자료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조사 주요 결과는 <del>공공</del>임대주택 유형별, 소<del>득구분</del>별로 분석하였음.
  - 공공임대주택 유형 : 영구임대 / 50년공공임대 / 국민임대 / 다가구매입임대 / 장기전세 / 재개발임대 / 행복주택
  - 소득구분 1 : 월 평균 100만원 미만 / 100~200만원 미만 / 200~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산출기준 : 연 소득 총액/12)
  - 소득구분 2 : 30% 이하 / 30% 초과 50% 이하 / 5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월 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기준)
- 본 보고서의 원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음(http://www.i-sh.co.kr/shuri/index.do).













l. 조사 개요 ······	1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3
2. 조사 설계	4
II. 주요 조사결과····································	5
Ⅱ−1. 패널 기초현황 ····································	7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13
1. 가구구성 ······	13
2. 기구주	21
3. 경제활동	24
4. 주거비 부담	40
5. 생활비	46
6. 복지서비스 이용	53
II-3. 입주전 생활상과 입주 경로····································	54
1. 직전주택 특성	54
2. 입주경로 ·····	57
-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및 인식	58
1. 안정적 주거지 역할 및 주거이동	58
2. 인식 및 희망사항	67
3. 이웃과의 관계	80
4. 소셜 믹스	82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 차 년 도





Ⅲ. 향후계획 ····································	3
부록1. 표본설계 및 가중치 8	39
부록2 설무지 요	)3

#### 서울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있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 차 년 도

C H A P T E R

# I 조사 개요



#### ☑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주거복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써 평가받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일정수준 이상의 재고량 확보를 위해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집행이 이뤄져 왔음.

- 국토교통부(2020), 「임대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서울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33만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약 22만 호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 및 관리하고 있음.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의 재고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표본으로써 대표성을 가짐.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차원에서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이 조사는 그 간 시도된 바 없었던 공공임대주택 가구 및 가구원 대상의 패널조사를 통해 정책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2016년 최초 조사 당시 표본으로 유효했던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와 같이 6가지 임대유형에 대해 구축함.
- 그러나 최근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요 정책대상인 점을 고려해볼 때, 주요 입주대상 계층인 행복주택 유형을 4차년도(2021)부터 표본을 추가하여 조사함으로써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한 조사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의 결과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현주소이자 향후 가이드라인으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즉, 정책의사결정자들의 양적공급 당위성에 더해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제시 가능
- 또한 선제적으로 입주자의 삶의 질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정책효과 검증 등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음.



#### 2. 조사 설계

#### 2021년 9월~2022년 1월 ▶ 조사 기간

#### ▶ 조사 대상 패널가구 및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 패널 가구는 1차년도에 구축한 3,009가구 및 4차년도에 추가한 행복주택 401가구
- 4차년도에는 가구 소멸,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동 등으로 패널에서 탈락한 가구를 제 외하고 총 2,890가구를 추적하여 조사함.

구분		1차 (`16)	2차 3차 (`17) (`19)	4차 (`21)		5차 (`23예정)		
			(10)	(17)	(19)	기존	신규	(23418)
	목표		3,000	3,009	2,986	2,890	400	3,177
-1-		성공	3,009	2,744	2,511	2,320	401	
	조사	패널 탈락	-	23	46	35	_	-
	대상 제외	퇴거	_	_	50	79	_	_
가구원		목표	6,118	5,625	4,942	4,360	620	
기구면		성공	5,583	5,239	4,643	4,078	605	

\*퇴거 가구 : 퇴거 사실을 확인한 연도만 조사하고 다음 차수 조사부터 대상에서 제외함.

#### ▶ 조사 방법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 태블릿 PC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 패널과 접촉한 후 태블릿 PC 를 이용해 구조화된 설문에 따라 질문하고 응답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

#### ▶ 조사 내용 가구용 및 가구원용으로 구분

분류	주요 내용
가구용	가구사항, 현재·직전 주거 실태, 현재 주택 입주 경로, 이사 계획, 연금, 맞춤형 급여, 복지서비스 이용, 소득, 생활비, 자산, 퇴거 가구, 분가 가구
가구원용	일자리, 이웃관계,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주민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 사회적 환경 인식, 장애인 및 고령자, 건강 및 의료,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여가활동, 코로나19

#### ▶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sup>\*\*</sup>분가 가구 : 원가구가 아니며 공공임대 특성도 상실했기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sup>\*\*\*</sup>퇴거 및 분가 가구에 대한 추적 원칙은 3차에 확립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서울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있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 차 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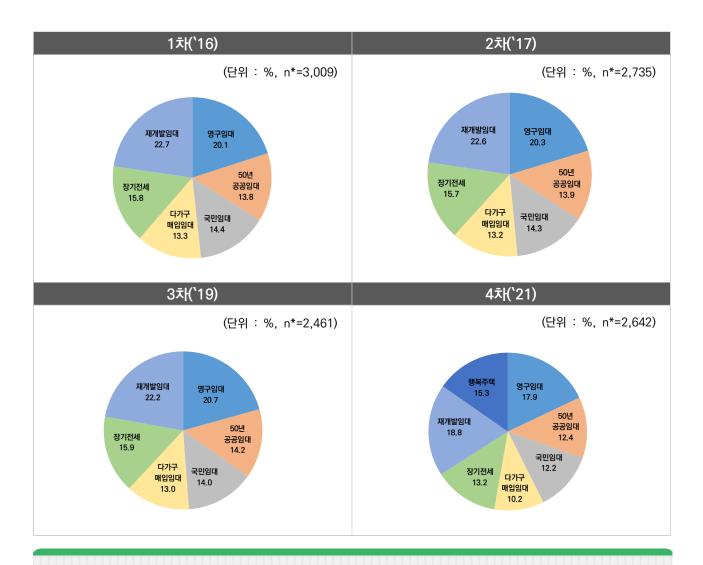
# Ⅱ 주요 조사결과

### Ⅲ 주요 조사결과

#### Ⅱ-1. 패널 기초현황

#### 🛃 임대유형별 적정비율을 배분하여 조사

- 기존 6개 임대유형, 4차년도 신규 유형 추가
  - 1차년도 패널 구축 당시 6개 주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구성
  - 4차년도 행복주택 추가
  - ※ 가중치를 미적용한 사례 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n\*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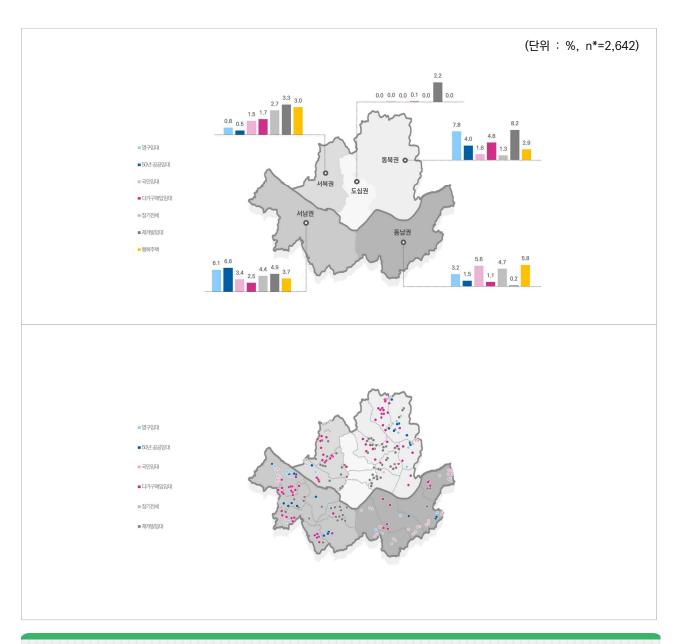
- □ 2016년 패널조사 당시 구축한 6개 임대유형으로 1차('16) ~ 3차('19) 까지 조사하였고, 2021년 4차 조사부터는 '행복주택'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함. 특히 최근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나타나는 정책효과 측정 가능함.
- □ 또한 국토교통부(2020),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334,036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중 50년임대주택(재개발임대주택 등 포함)이 86,590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 주요 조사결과

#### Ⅱ-1. 패널 기초현황

#### ₫ 다가구매입임대와 재개발임대는 주로 도심 내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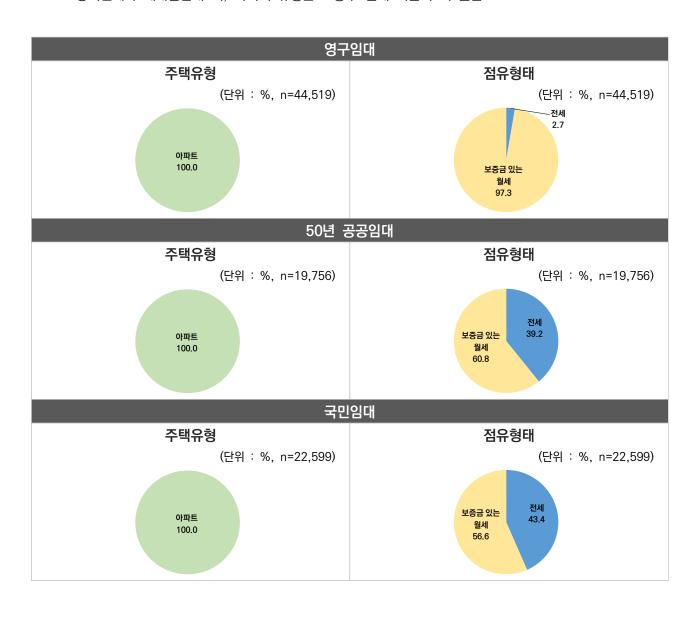
- 패널가구는 서남권, 동북권에 다수 분포
  - 서남권 31.5%, 동북권 30.5%, 동남권 22.2%, 서북권 13.5%, 도심권 2.3%
- 장기전세는 외곽에 분포, 다가구매입임대와 재개발임대는 도심부에 위치
- 주택공급 방식에 따른 분포현황의 차이
  - 기존 도심지 개발을 통한 재개발임대와 매입형 임대주택은 입지적으로 고루 분포
  -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건설형 임대주택은 주로 외곽에 위치



및 국토교통부(2019),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자치구별 재고파악이 가능하며 전체 307,606호 중 강 서구 11.0%(33,727호), 노원구 9.3%(28,556호), 강남구 5.7%(17,459호) 순으로 나타남.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 33.3%(102,280호), 서남권 31.6%(97,108호), 동남권 18.7%(57,675호), 서북권 13.0%(40,091호), 도심권 3.4%(10.452)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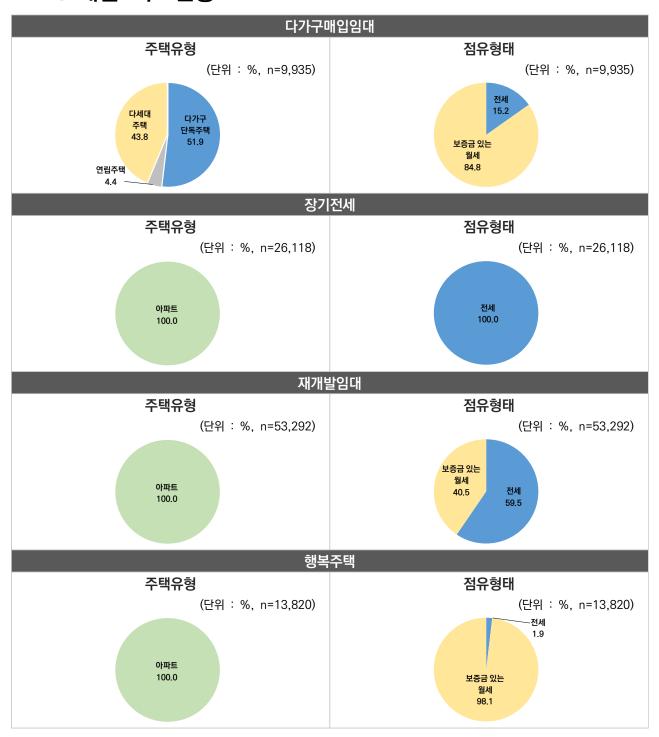
####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아파트

- 다가구매입임대를 제외한 모든 임대유형 아파트로 공급
  -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는 아파트로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는 다가구 단독주택 51.9%, 다세대 43.8%, 연립주택 4.4% 비율 \*서울시 행복주택 전체 공급 물량 중에는 일부 비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조사 패널은 아파트로만 구성
- 점유형태는 전세와 보증금 월세 혼합
  - 장기전세는 100% 전세형태로 공급
- 장기전세와 재개발임대 외, 나머지 유형은 보증부 월세 비율이 더 높음



#### 주요 조사결과

#### Ⅱ-1. 패널 기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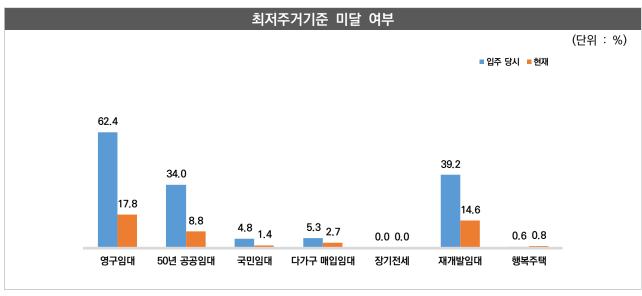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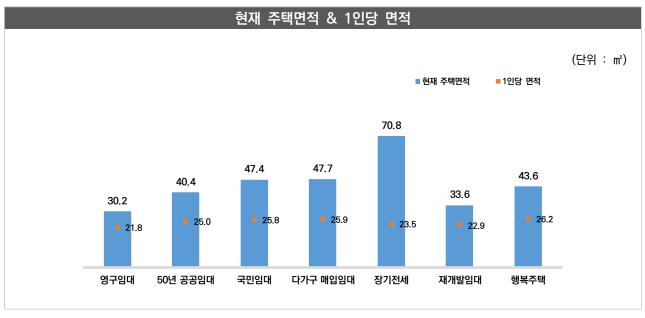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상호전환할 수 있음. ①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 보증금↑, 임대료↓ 효과를 보이며 전환이율은 6.7% 적용함. ②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시 반대로 임 대보증금↓, 임대료↑ 효과가 있으며 전환이율은 2.5%임. 두 가지 모두 전환금액은 기준 임대료 및 보증금 의 60%까지 전환이 가능함.

#### 🔯 1인당 전용면적은 유사하나, 임대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차이

- 현재 주택 면적이 가장 넓은 유형은 장기전세(70.8㎡), 1인당 면적이 가장 넓은 유형은 행복주택(26.2㎡)
- 장기전세, 행복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입주 당시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감소
  - 입주 당시와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 가장 높은 유형은 모두 영구임대로, 입주 당시는 62.4%, 현재 는 17.8%
- 가구구성 변화로 인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차이
  - 주택의 물리적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당시와 현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차이가 있는 것은 가구구성의 변화가 원인으로 유추
  - \*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동거 가구원 수별 기준 면적 미만 여부로 산정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면적	14 m²	26 m²	36m²	43 m²	46 m²	55 m²	





### 주요 조사결과

#### Ⅱ-1. 패널 기초현황

➡️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가구원 수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약 11.5%로 나타나며, 이는 전국 및 서울시 평균 보다 높은 수치임.

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전국
가구원 수를 고려한	23,527	234,403	674,335
최저주거면적 미달가구	(11.5%)	(6.1%)	(3.3%)
전용면적 14㎡ 미달가구	465	137,656	399,043
	(0.2%)	(3.6%)	(2.0%)
전체가구	204,221	3,848,016	20,238,355

주: 서울시 및 전국 자료는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표본자료(국토교통부), SH는 내부자료(시설 및 침실기준은 세부자료 부재 로 분석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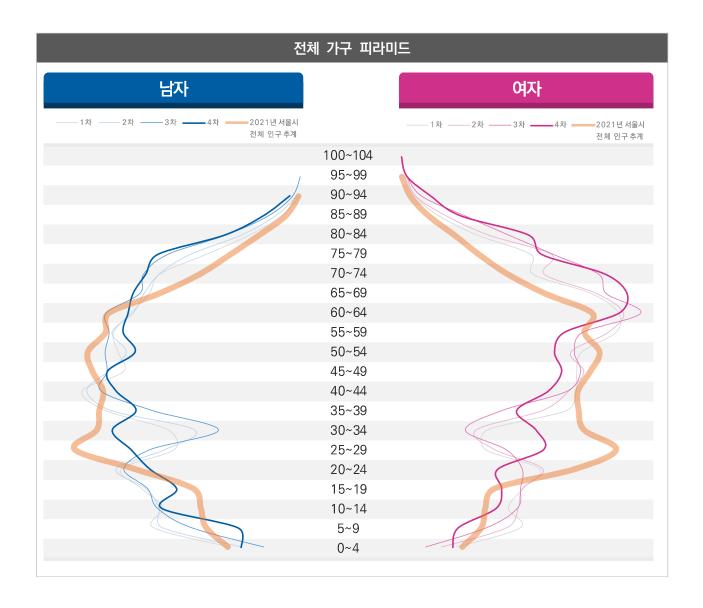
## 주요 조사결과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1.** 가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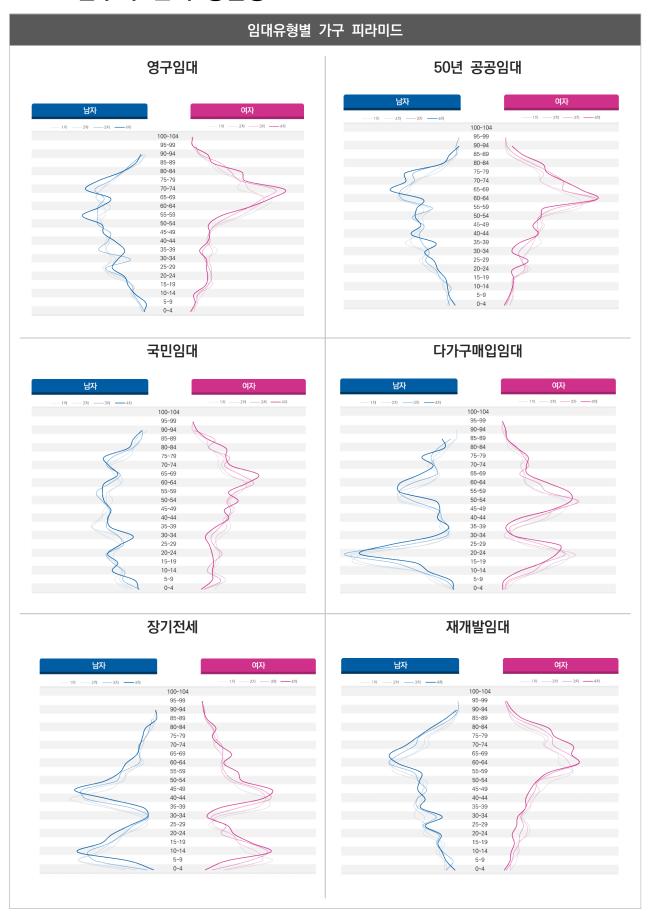
#### 🕵 노인·중장년이 주로 거주하며, 임대유형별 가구구성 차이

-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패널가구의 고령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서울시 전체 인구피라미드와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60세 이상 노인층 비율이 높음. \*2021년 서울시 전체 인구 추계 기준
  - 4차년도 조사에서 행복주택 유형이 추가되며 청년층 비율이 증가
- 임대 유형별 세대 분포 양상이 상이
  -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행복주택은 1세대 가구로 구성
  - 다가구매입임대, 장기전세는 2세대 가구로 구성
- 4차년도 행복주택 유형 추가를 통하여 청년층 패널 확보
  - 전체 가구원 피라미드는 1~3차년도까지 청년층이 부족하였으나, 4차년도에 보강됨.



### Ⅲ 주요 조사결과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弾 인구피라미드는 인구가 성장할 때의 모양을 형성하는 형태이며, 입주자격 기준의 차이에 따라 임대유형별 특 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서울 공공임대패널 데이터를 통해 인구학 관점에서 개인 및 가구의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짚어볼 수 있음.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 조사차수에 따라 노인가구 점차 증가

- 노인가구의 비율 증가 추세
  - 노인가구의 비율 가장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로, 4차년도 비율 63.7%
- 임대주택은 장기거주할 수 있는 여건임에 따라 기존 입주자가 노령화됨에 따른 노인가구 증가로 판단
-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유형이므로 해당 계층의 비율이 높음.

(단위 : %)

구분	1차('16)	2차('17)	3차('19)	4末('21)
영구임대	(n=45,424)	(n=45,319)	(n=44,685)	(n=44,519)  ***********************************
	(n=19,970)	(n=19,804)	(n=19,721)	(n=19,756)
50년 공공임대	보인가구 8.0 보인가구 39.1 중정보가구 52.9	5년가구 7,8 노인가구 41.2 동원인가구 61.2	\$1977 4.9 5.1077 46.7 \$35577 46.9	노인가구 53.4 중인단가구 43.6
	(n=22,731)	(n=22,434)	(n=22,001)	(n=22,599)
국민임대	5.2 <sup>17</sup> 17.7 29.0 5.32 <sup>17</sup> 17.7 57.1	\$8977 11.6 33.0 \$88877 55.5	8577 8.5 5.277 3.1 89577 65.4	報告77字 6.7 42.6 多数57字 63.7
	(n=11,032)	(n=11,071)	(n=10,746)	(n=9,935)
다가구 매입임대	보인기구 8.4 22.3 중한단기구 68.2	数27円 7.0 22.4 表記セクロー 66.6	95/77 3.7 27.5 \$595/77 68.8	정보가구 0.4 보건가구 30.0 환경보가구 60.7
	(n=27,063)	(n=27,180)	(n=26,747)	(n=26,118)
장기전세	5.82가구 15.3 설년가구 17.4 8.88년가구 67.1	보인가 17.0 13.8 5청만가구 69.2	\$50777 20.4 \$85577 72.7	2.4 2.3 2.3 89277 76.3
	(n=56,995)	(n=56,911)	(n=54,971)	(n=53,292)
재개발 임대	8년가구 36.1 동청년가구 56.5	315777 7.3 5.0777 38.8 5385777 53.9	5.8 노인기구 45.4 동있단기구 45.0	한번가구 5.8 노인가구 52.4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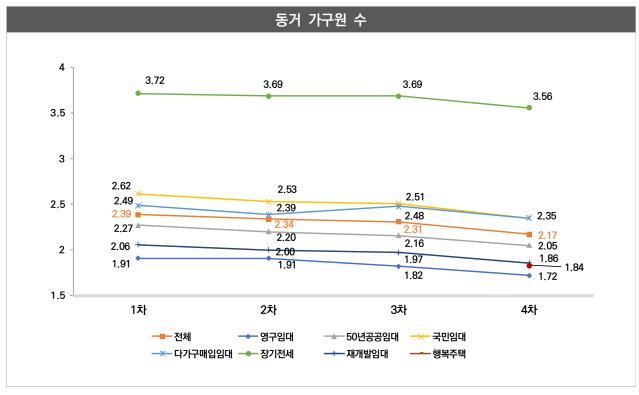
→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주 평균연령만 살펴보더라도 상당히 고령화 되어있으며 두 집 중 한집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음. 무엇보다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16) 15.8%, (19) 19.2%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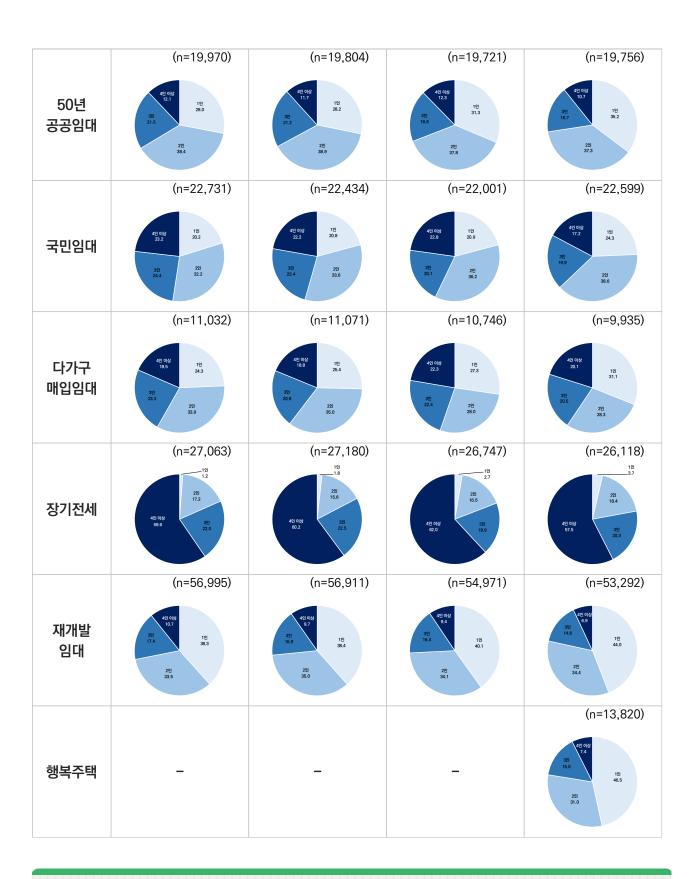
# € 동거 가구원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1인가구 증가

- 동거 가구원 수는 감소 추세
  - 동거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장기전세(3.56명), 가장 적은 유형은 영구임대(1.72명)
- 1~2인 가구의 비율 증가 추이
  - 1~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로, 4차('21) 비율 83.9%
- 장기전세는 유일하게 4인 가구 이상 비율(57.5%)이 가장 높음.
- 영구임대는 노인·1인가구 증가 뚜렷함.
  - 임대유형별 가구원 수 변화와 노인가구 비율 변화를 종합하면, 영구임대의 노인·1인가구 증가현상이 뚜렷 하게 나타남.

(단위: 명)



				\
구분	1차('16)	2차('17)	3차('19)	4차('21)
	(n=45,424)	(n=45,319)	(n=44,685)	(n=44,519)
영구임대	302 8.5 12 12 44.9 202 33.6	3년 8.0 14.5 1년 43.8 2년 33.6	201 086 12.9 191 12.9 191 47.3 201 33.0	201 08 0 4 191 52.2 251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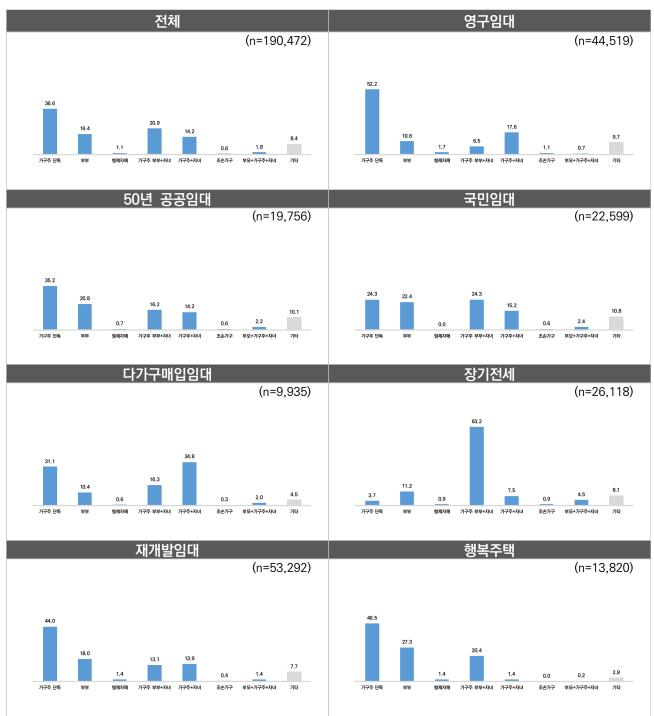
<sup>☞</sup>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 전체를 보더라도 1인 가구의 비율이 36.8%로 가장 높음(자료: 통계청, 2021). 이에 따라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특별대책으로 4대 분야(건강, 범죄, 고립, 주거) 차원 에서「씽글벙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 다가구매입임대, 장기전세를 제외하고 가구주 단독 1인 가구 다수

- 장기전세·다가구매입임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가구주 단독 비율이 가장 높음.
  - 장기전세는 가구주 부부+자녀(63.2%), 다가구매입임대는 가구주+자녀(34.8%)의 비율이 가장 높음.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다가구매입임대에서 가구주+자녀 세대 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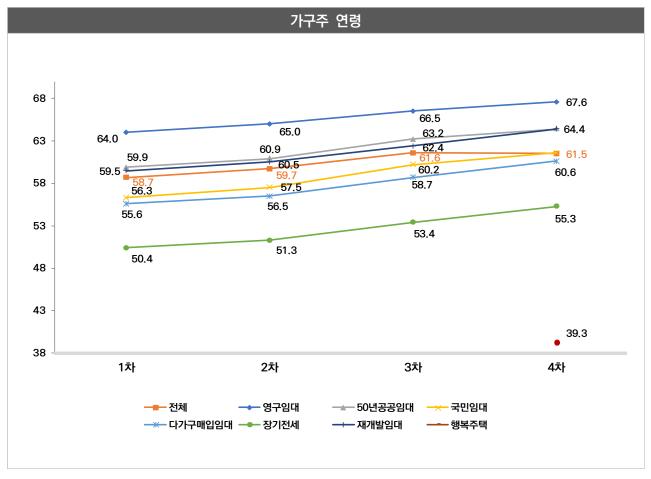


### 2. 가구주

# 🕵 영구임대는 가장 고령화되었으며 여성 가구주 비율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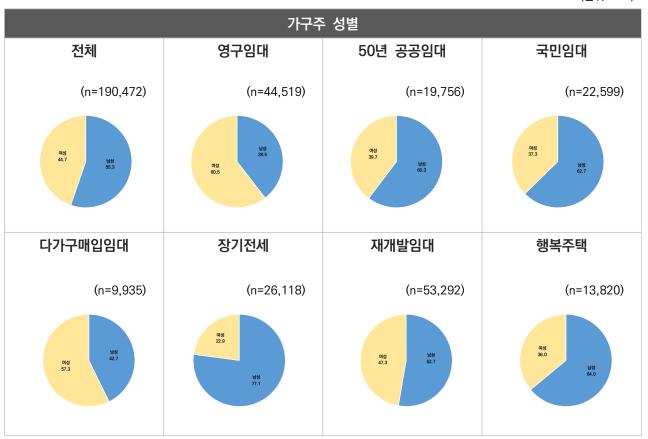
- 가구주 연령은 증가하고 있음
  - 가구주 연령 가장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67.6세), 가장 낮은 유형은 행복주택(39.3세)
-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가구주 성별 남성 비율이 높음.
  - 여성 가구주 비율은 영구임대 60.5%, 다가구매입임대 57.3%
- 가구주 연령의 변화는 조사 차수에 따른 자연적인 추세
- 영구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에서 여성 가구주가 많은 이유는 시별 및 한부모 기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단위 : 세)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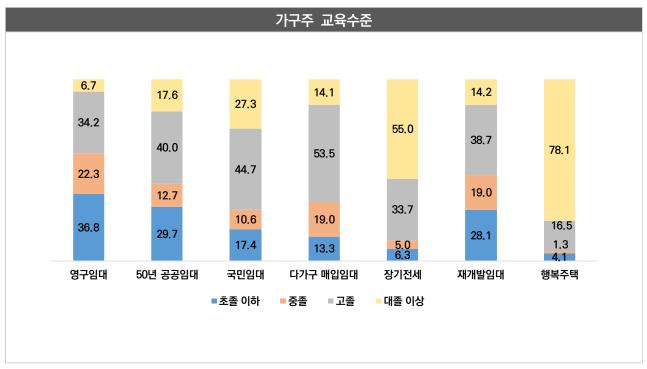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기구원을 대상으로 볼 때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인구수)는 3차(19) 기준 으로 84명으로 나타났으며, 동일년도 서울시 성비 93.1명(자료: 통계청, 2019)과 비교 시 공공임대주택에서 는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음.

# 🛃 임대유형별 가구주 교육수준 차이가 있으나, 자녀세대 대물림은 개선

- 영구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을 제외한 4개 유형은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 비율이 가장 높음.
  - 영구임대는 초졸(36.8%), 장기전세와 행복주택은 대졸 이상(각각 55.0%, 78.1%)의 비율이 가장 높음.
- 부모/자녀 세대별 대학 진학 여부는 부모 세대의 경우 미진학(81.0%) 비율이 더 높고, 자녀 세대의 경 우 진학(56.2%) 비율이 더 높음.
- 자녀세대의 대학진학률이 부모세대보다 높기는 하나, 일반가구 취학률보다 저조
  - 2021년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71.5%임을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자녀세대 취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단위:%)

#### 부모와 자녀 세대 대학 진학 여부

	사례수 (명)	미진학	진학	계
세대 구분				
부모 세대	(1,046)	81.0	19.0	100.0
자녀 세대	(1,064)	43.8	5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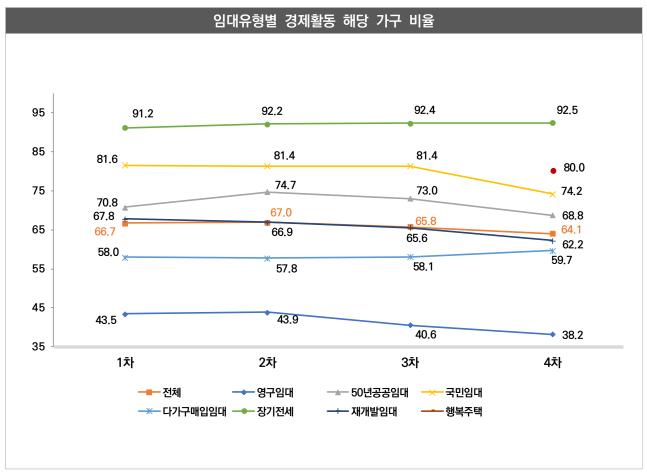
竝 부모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의 교육수준이 개선되고 있으나 서울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대학진학률은 35.7%로 전국평균 68.9%의 절반수준으로 분석됨. 또한 대학진학률은 임대유형별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나 소득구간에 따른 통계적 차이 확인함.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3. 경제활동**

## 遠 전체 가구 60% 이상 경제활동에 참여, 차수별 차이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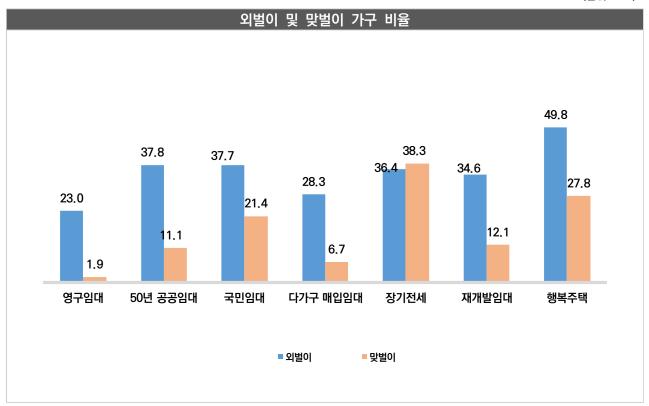
- 전체 경제활동 해당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경제활동 해당 가구 비율 가장 높은 유형은 장기전세(92.5%), 가장 낮은 유형은 영구임대(38.2%)
- 3차('19)~4차('21) 감소비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 장기전세 가구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큰 변동이 없음.
  -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 비율 감소
  - 다가구매입임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폭 상승



# 청년·중장년층 대상 임대유형에서 맞벌이 비율 높음

- 장기전세, 행복주택의 맞벌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특히 장기전세는 외벌이 36.4%, 맞벌이 38.3%로 맞벌이 비율이 더 높음.
- 영구임대 외벌이 비율이 높은 것은 단독 가구주 비율이 높기 때문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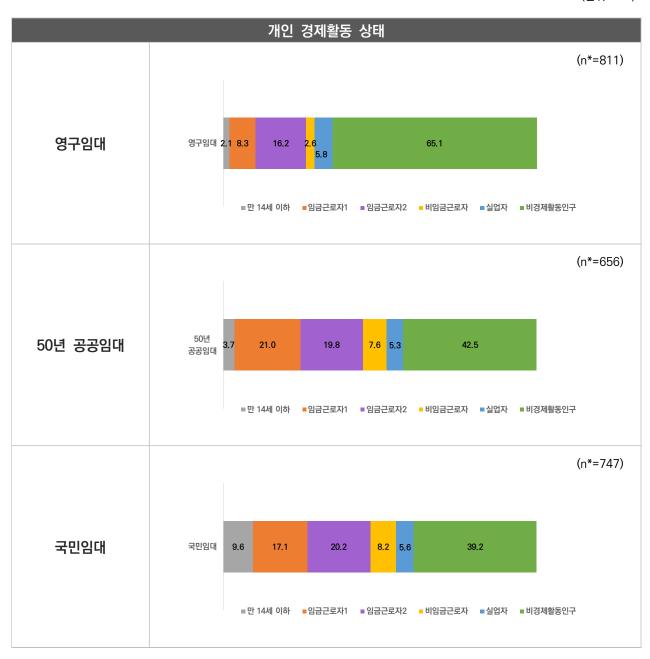


💷 결혼 후 출산이 보편적인 문화에서 취약한 주거안정성은 출산과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특 히 외벌이 및 주택 미소유의 경우 자녀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출처: 성진욱·이훈, 2021).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높으나,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은 주로 임금근로자

- 개인 경제활동 상태는 행복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음.
  - 행복주택은 임금근로자1(46.5%) 비율이 가장 높음.
-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에 국한하여 보면, 임금근로자 비율이 비임금근로자 비율보다 높음.
  - \* 경제활동 상태 분류
    - -임금근로자1: 상용직
    - -임금근로자2: 임시직, 일용직,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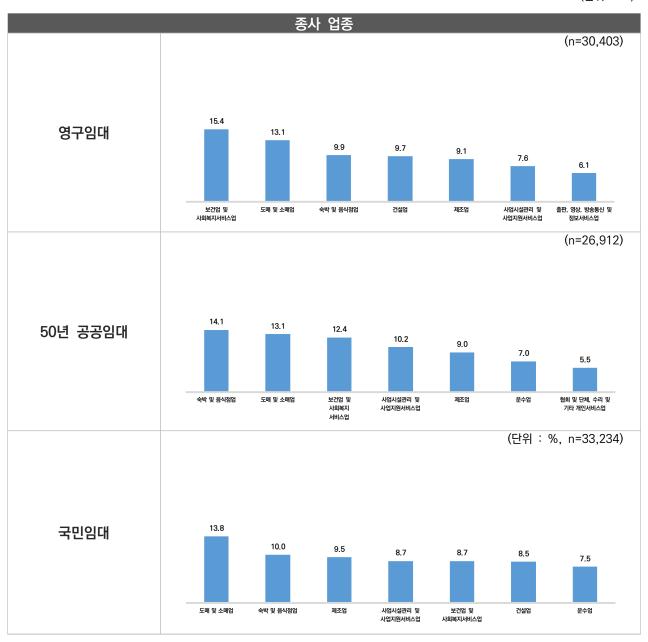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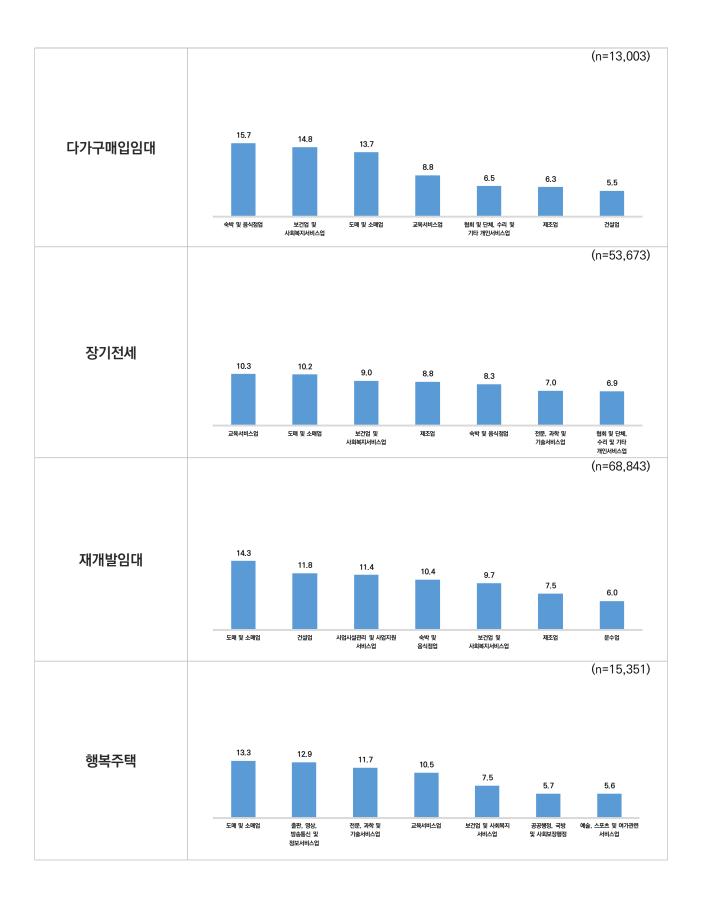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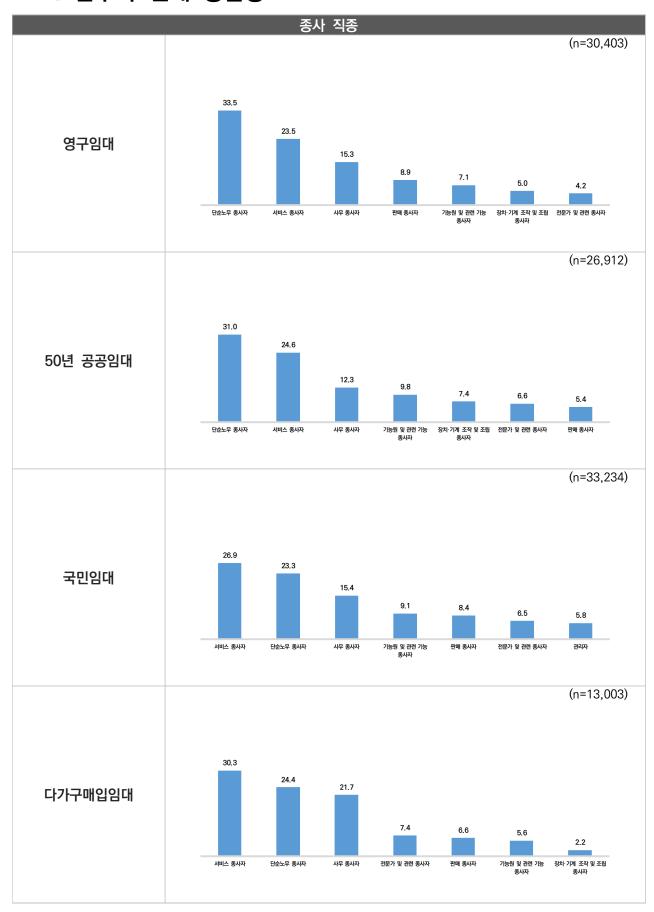
# 도소매,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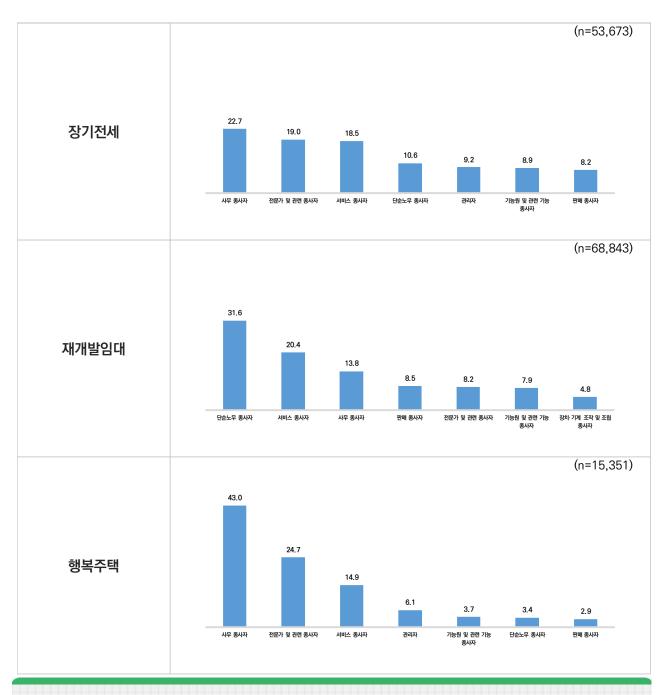
- 임대유형별로 비율 차이는 있으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각종 서비스업 종사 비율이 높음.
- 직종으로 살펴보면, 장기전세와 행복주택을 제외한 임대유형은 단순노무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가 차지 하는 비율이 50% 이상
  - 장기전세와 행복주택은 사무 종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율이 높음.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주로 단순 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업인 경우 학력, 경력, 기술능력부족의 이유임. 또한 비경제활동의 이유는 나이와 근로능력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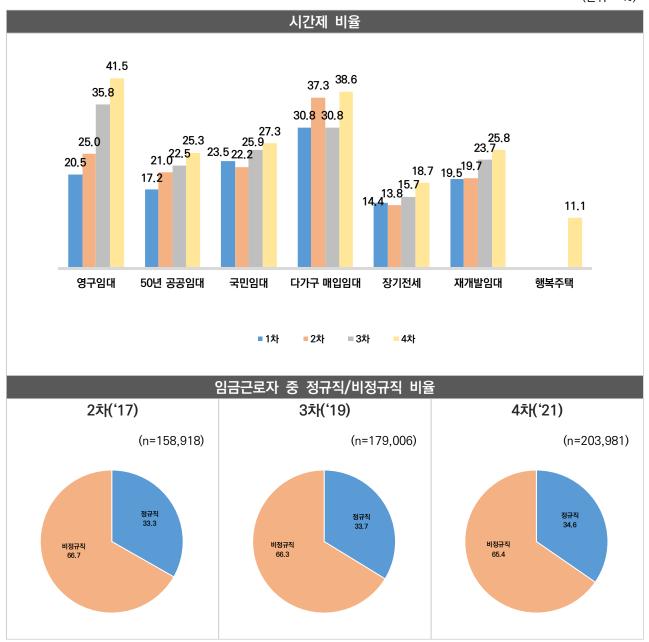
# ₩ 주요 조사결과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 시간제 비율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절반 이상 비정규직

- 시간제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시간제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41.5%), 가장 낮은 유형은 행복주택(11.1%)
- 임금근로자 가구원의 정규직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은 34.6%
  -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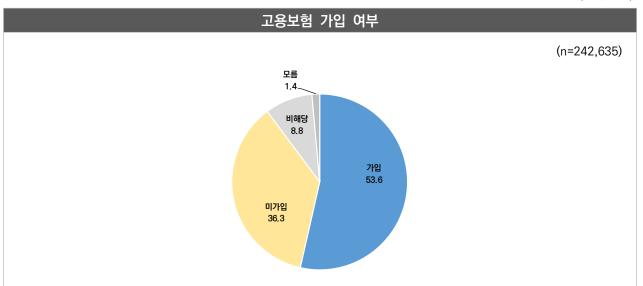


□ 개인용 설문지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확인 후 정규직 여부를 판별할 수 있음.

# €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36.3%,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 취약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가입 비율(53.6%)이 가장 높음.
  -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상용직의 경우 가입 비율 89.2%, 임시/일용/공공일자리 29.4%, 비임금 9.3%
-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고용안정성 크게 차이
  - 공공임대 가구원은 비상용직 비율이 높은 특성상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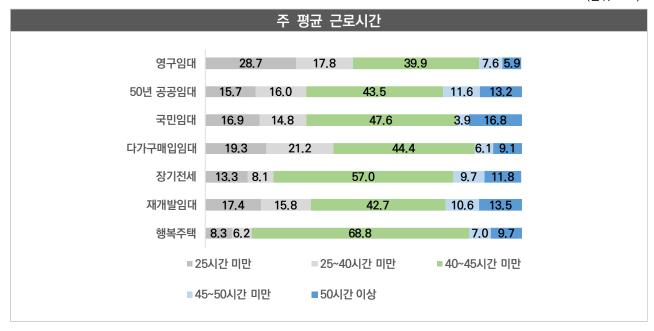
#### 경제활동 상태별 고용보험 가입여부

	사례수 (명)	가입	미가입	비해당	모름	계
전체	(242,635)	53.6	36.3	8.8	1.4	100.0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11,035)	89.2	6.7	4.0	0.1	100.0
임시/일용/공공일자리	(92,945)	29.4	57.8	9.5	3.3	100.0
비임금	(38,654)	9.3	69.7	20.6	0.3	100.0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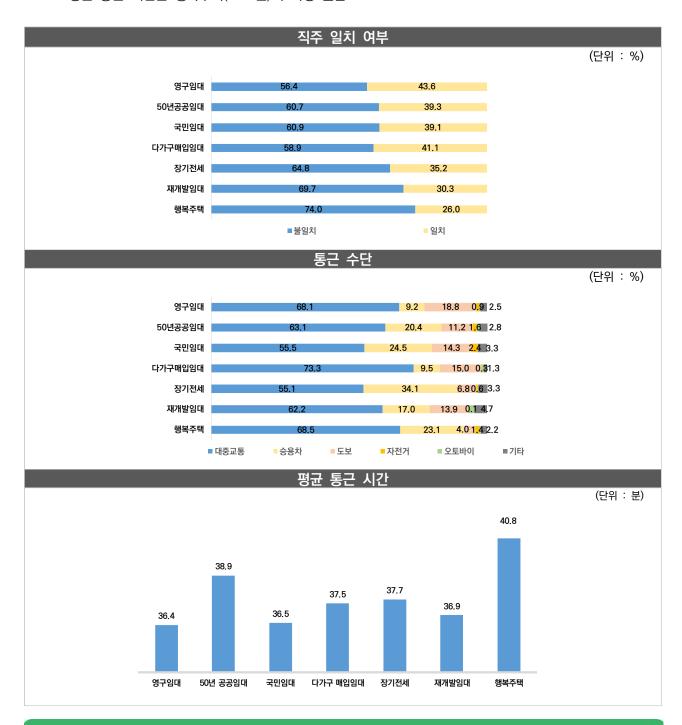
###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단시간 근로 다수

- 주 평균 근로시간은 40~45시간 미만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음.
  - 행복주택과 장기전세는 과반의 비율이 40~45시간 미만에 해당(각각 68.8%, 57.0%)
- 영구임대, 다가구매입임대 25시간 미만 비율 각각 28.7%, 19.3%
- 안정적인 근로시간 확보된 일자리가 다수이지만, 영구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는 단시간 근로 일자리 비 율도 높음.
  - 대체적으로 주 평균 근로시간 40~45시간, 일평균 8시간 가량 근무
  - 영구임대 가구 중 25시간 미만, 일평균 5시간 미만 근무 비율 28.7%



### 氢 직주 불일치 비율이 높으며, 평균 통근시간 36분 이상

- 직주 지역은 모든 임대유형에서 불일치 비율이 일치에 비해 높음.
  -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행복주택(74.0%)
- 통근수단은 모든 임대유형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음.
  - 대중교통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다가구매입임대(73.3%)
- 평균 통근 시간은 행복주택(40.8분)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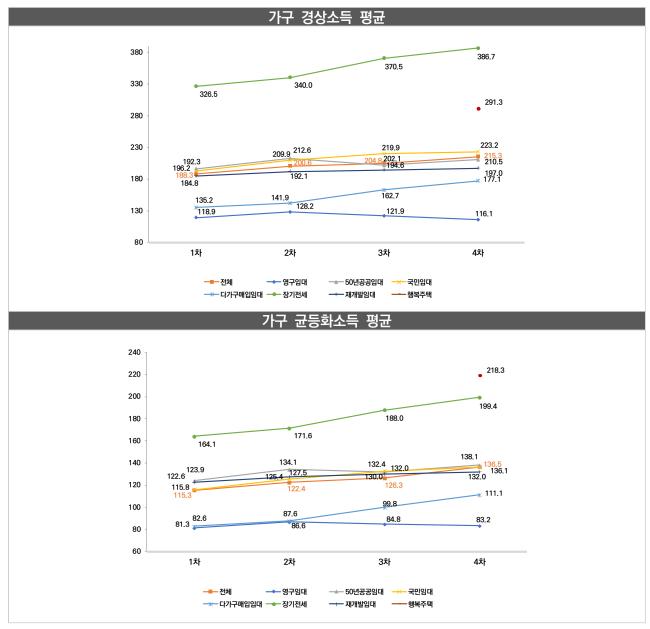
竝 도심 내 소규모 동별로 공급된 다가구매입임대의 경우 정책도입 취지에 맞춰 대중교통 접근 등 직주근접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출처: 성진욱, 2019).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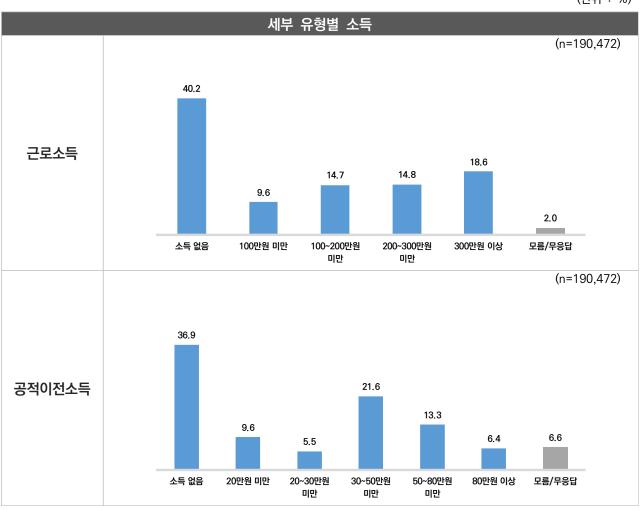
# € 가구 경상소득은 증가추세이며,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주 수입원

- 전체 가구의 경상소득과 균등화소득은 증가하고 있음.
  - 가구 경상소득 평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장기전세(386.7만원)이고, 균등화소득 평균이 가장 높은 유형은 행복주택(218.3만원)
  - \*균등화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개인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총합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는 소득
- 대부분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공적이전 소득에서 발생
  - 근로소득 있음 비율 57.8%, 공적이전 소득 있음 비율 56.5%
-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개인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가구는 소수
  - 사업소득 비율 13.2%, 금융소득 1%, 부동산소득 0.1%, 사회보험소득 19.9%, 개인연금소득 0.6%, 사적이전소득 17.7%

(단위: 만원)



(단위:%)



竝 2020년 서울 공공임대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소득별로 구분 시, 일정소득 이상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함. 즉,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 경제적 문제가 낮 게 나타나는 것은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의한 소득감소의 영향보다는 기초생활보장 등을 통해 보충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출처: 성진욱 외, 2021).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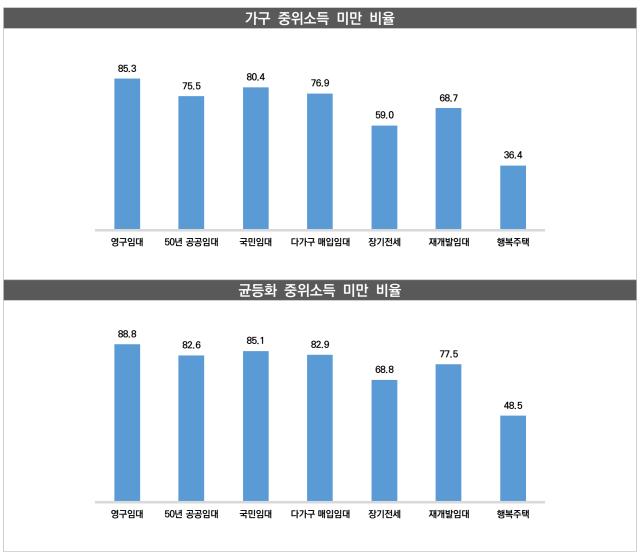
# € 대부분 가구는 중위소득 미만

- 가구 중위소득 미만 비율은 행복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50% 이상
  - 행복주택 가구 중위소득 미만 비율은 36.4%
- 균등화 중위소득 미만 비율은 모든 유형이 가구 중위소득 미만 비율에 비해 높음.

\*가구 중위소득 기준(2020년)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가구소득(원)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9,156,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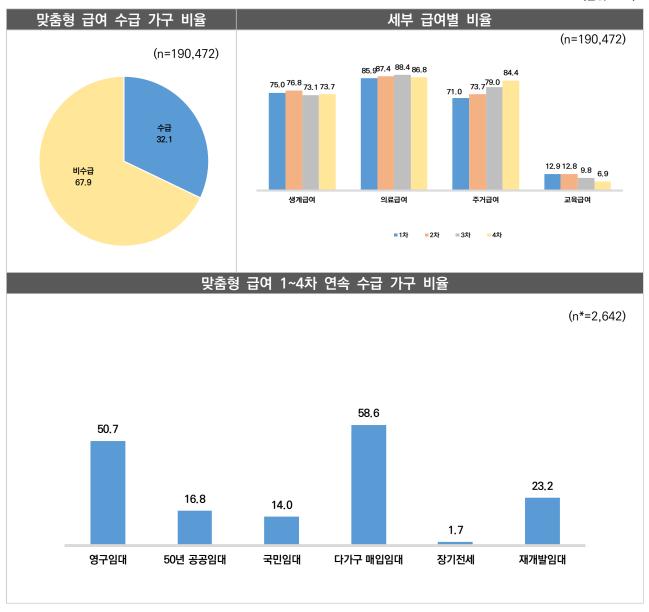
\*가구 균등화 중위소득 기준(2020년) : 연 2,998만원



# 🛃 10가구 중 3가구는 맞춤형 급여를 수급

- 맞춤형 급여 수급 가구 비율은 32.1%
  - 의료급여의 수급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 주거급여 수급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맞춤형 급여 1~4차년도 연속 수급 가구 비율은 다가구매입임대(58.6%)가 상대적으로 높음.
- 영구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 기구 절반 이상은 맞춤형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급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 운 가구가 다수

(단위: %)



🔟 2025년 통합급여체계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분리 독립하였으며, 본 조사의 차수를 고려한 주 거급여 대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6: 1차) 43%, (17: 2차) 43%, (19: 3차) 44%, (21: 4차) 45% 이하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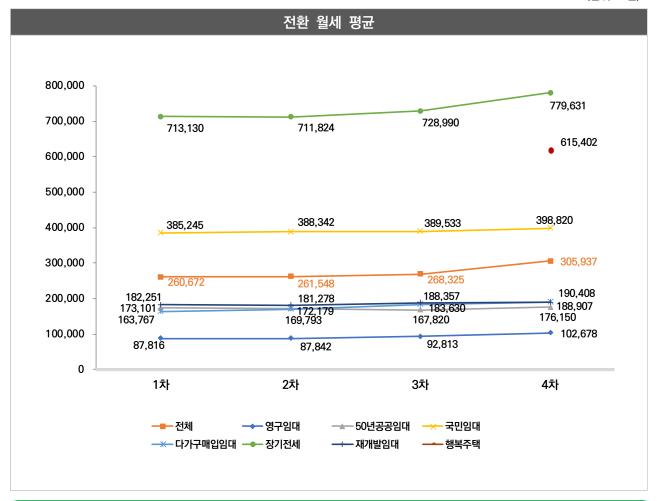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 🔯 지난 5년간 주거비 변동은 크게 없음

- 임대료의 변화는 크게 없음.
  - 전세, 보증부월세 임대료를 비교하기 위하여 월세화하여 비교함.
    - \*전월세 전환율 5%로 산정
  - 전환 월세 평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장기전세(779,631원)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영구임대(102,678원)임.
  - 장기전세의 경우, 3~4차년도 사이 약 7% 임대료 상승
- SH 임대주택 지난 10년간 임대료 동결로 인하여 큰 변동 없음.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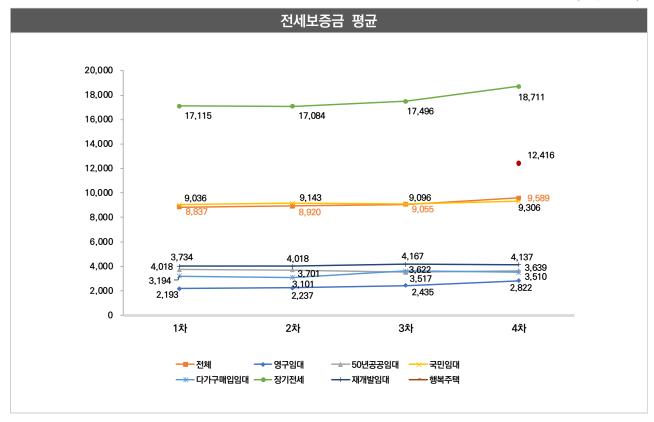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연도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은 2012년 이후 현재 까지 동결인 상황임,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시기에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 공임대주택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수준의 주거비 수준으로 조사(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자료)

# 전세보증금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

-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전세로 인한 영향
  - 전세보증금 평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장기전세(18,711만원)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영구임대(2,822만원)
- 장기전세 임대료 상승은 재계약에 따른 상승분으로 추정
  - 장기전세는 재계약 시, 주변시세 80% 범위 내 최대 5% 이내로 전세보증금 산정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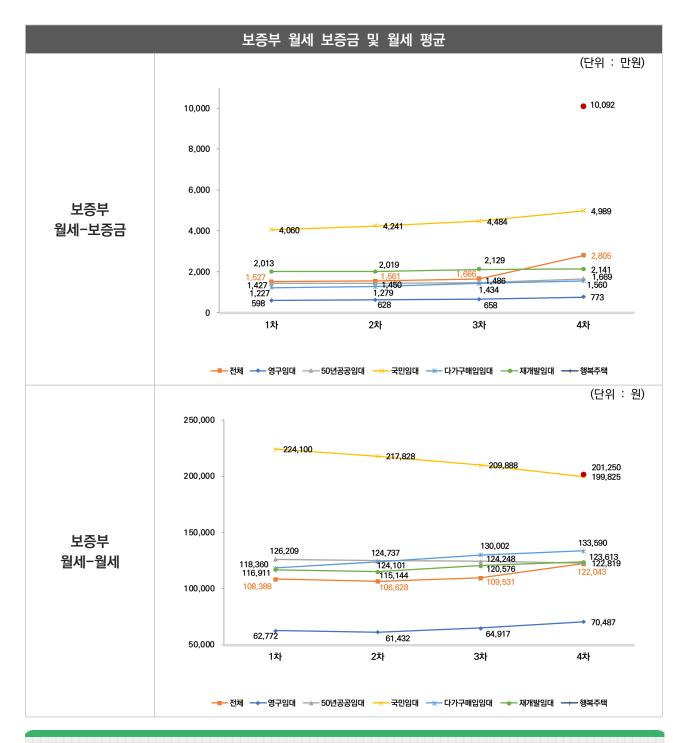


项 장기전세는 유사한 인근 2~3개 단지 전세가격 평균액을 고려하며, 주변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 이내로 재계약 시 전세보증금 재산정하며, 월임대료는 부과되지 않음.

# Ⅲ 주요 조사결과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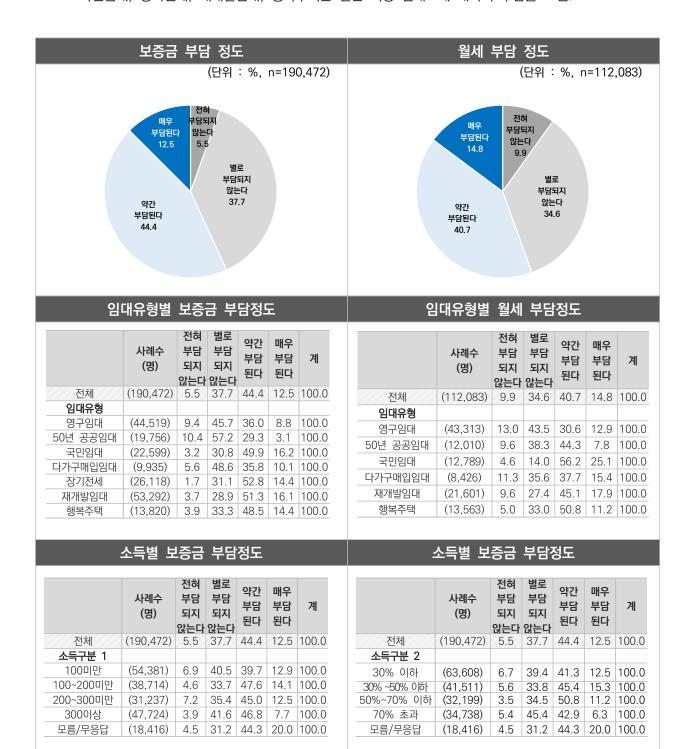
- ₫ 행복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는 타 임대유형에 비하여 높음
  - 전체 기준,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과 월세는 4차년도 소폭 증가
    - 보증부 월세 보증금과 월세의 평균이 가장 높은 유형은 모두 행복주택(각각 10,092만원, 201,250원)
    - 국민임대 보증금은 증가하였으나, 월세는 감소 추세



☑ 성진욱·이훈(2021)이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12,206가구를 분석한 결과, 신혼부부 44.9%, 청년 32.6%로 나타남. 평균 보증금이 약 1억으로 나타나는 것은 입주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평균의 왜곡으로 보임. 신혼부부가구의 경우 약 140백만원, 청년가구의 경우 약 65백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 10가구 중 4가구는 보증금·월세 부담이 덜하다고 응답

- 보증금·월세 '부담되지 않는다' 응답 40% 수준
  - 보증금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5.5%,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7.7%
  - 월세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9.9%,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4.6%
- 보증금 부담은 50년 공공임대가 적으며, 월세는 영구임대 부담이 적음.
-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은 절반 이상 임대료에 대하여 부담을 느낌.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 민간임차가구 대비하여 주거비 부담이 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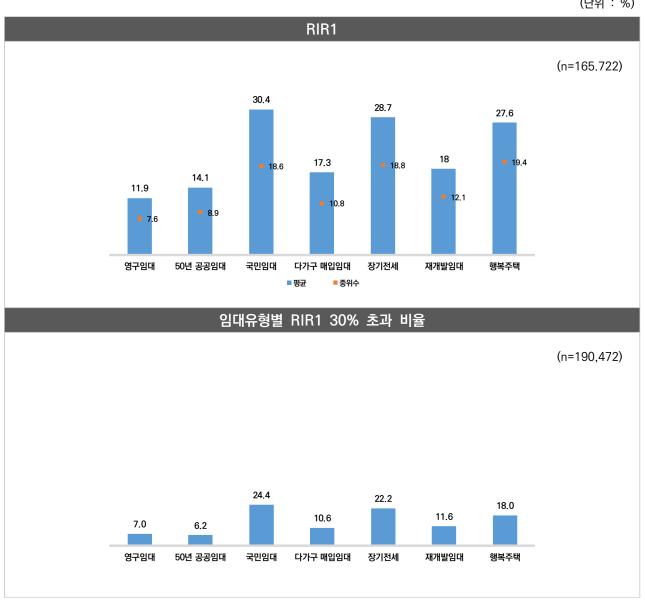
•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는 RIR과 슈바베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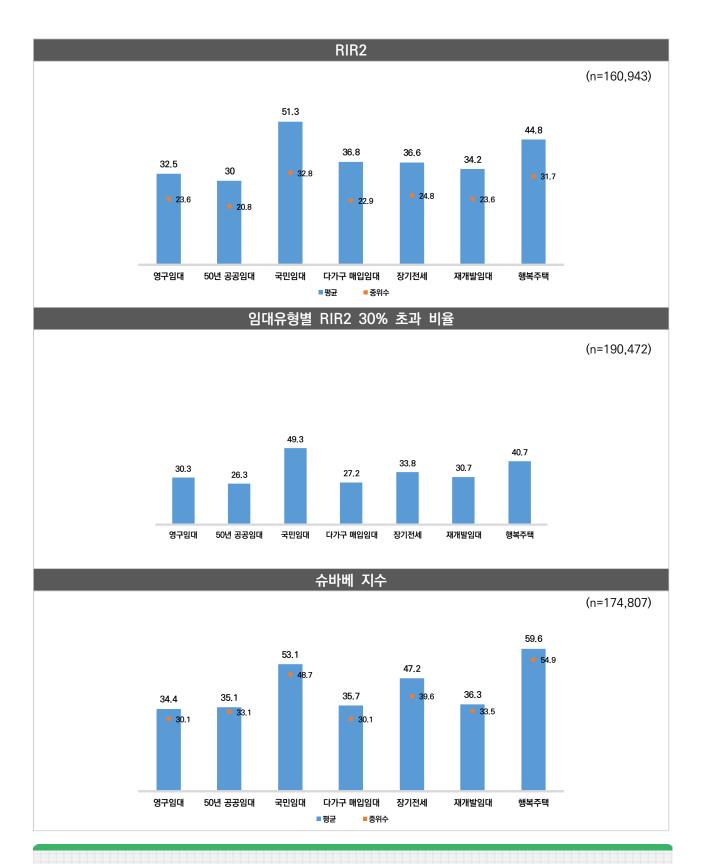
\*RIR1 : 소득 대비 월세

\*RIR2 : 소득 대비 월세+주거관리비 \*슈바베 지수 : 가구 생계비 대비 주거비

- RIR1 지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국민임대(30.4)
  - RIR1 30% 초과 비율 또한 국민임대(24.4%)가 가장 높음.
- RIR2 지수는 RIR1보다 상승
  - RIR2 지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국민임대(51.3)로, RIR2 30% 초과 비율 또한 국민임대(49.3%)가 가장 높음.
- 슈바베 지수는 행복주택(59.6)이 가장 높음.
-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평균 RIR 33%를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부담이 적음.

\*2019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자료 활용





፴ 2016년 대비 2019년 보증금 및 월세의 미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절대액 기준으로 볼 때 상승폭 은 없다고 봐도 무방함. 즉,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고 임대료는 동결인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 은 대부분의 임대유형에서 개선되고 있다는 정책효과를 발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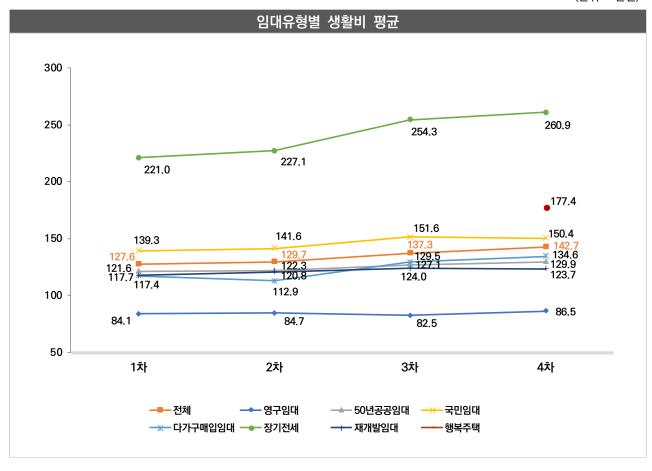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 5. 생활비

### 생활비지출은 지난 5년간 증가하였고. 평균적으로 143만원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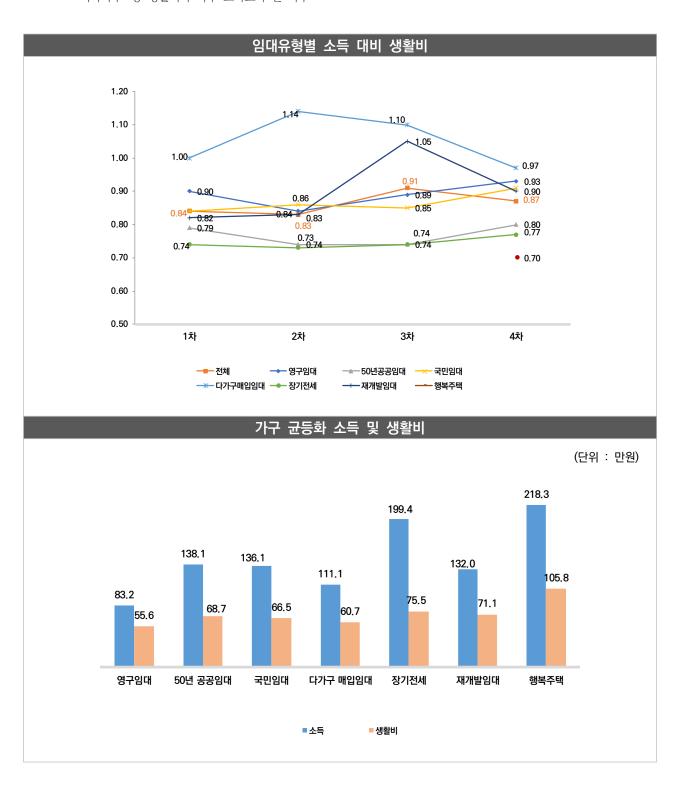
- 전체 생활비는 증가하고 있음.
  - 생활비 평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장기전세(260.9만원)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영구임대(86.5만원)
  - 장기전세, 다가구매입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생활비 지출은 큰 변동 없음.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장기전세 외 임대유형은 실질생활비 지출 감소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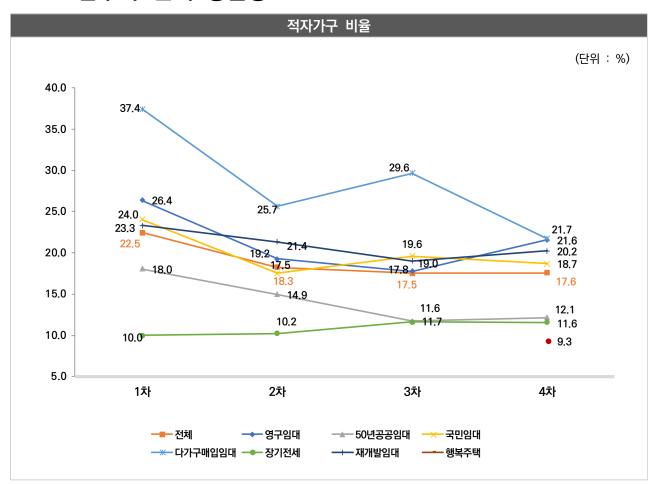


# 소득의 80% 이상을 생활비로 사용, 일부 적자가구 존재

- 소득 대비 생활비는 전체 0.87(4차)
  - 4차년도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다가구매입임대(0.97)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행복주택(0.70)
- 전체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적자기구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다가구매입임대(21.7%)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행복주택(9.3%) \*적자가구: 총 생활비가 가구 소득보다 큰 가구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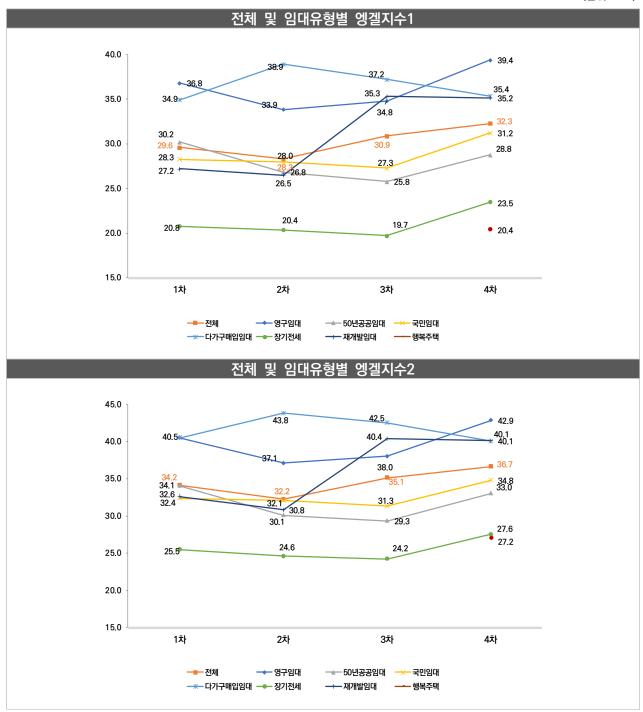
# 🥑 생활비의 30%는 식료품비로 사용

- 전체 엥겔지수는 증가하고 있음.
  - 엥겔지수가 가장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39.4)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행복주택(20.4)

\*엥겔지수1: 소득 대비 식료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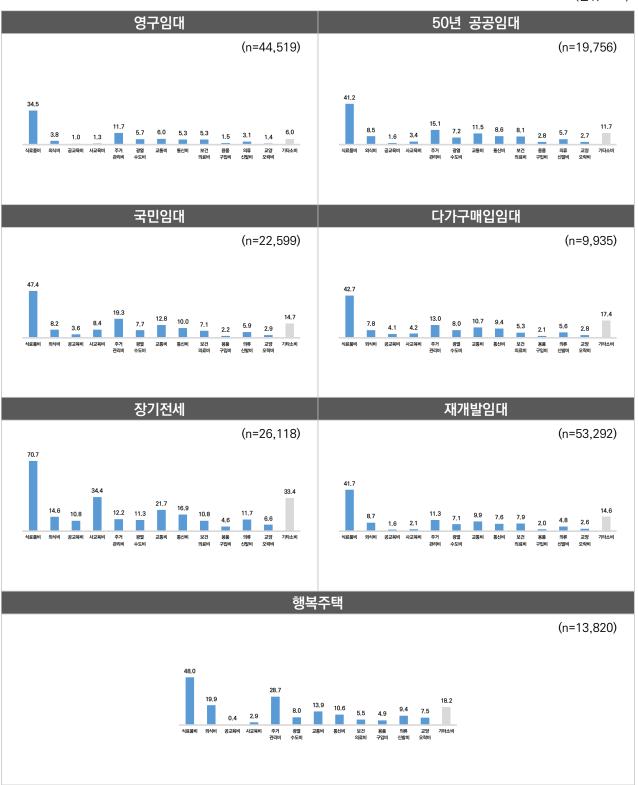
\*엥겔지수2: 소득 대비 식료품비+외식비

• 생활비 항목별로는 모든 임대유형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가장 높음.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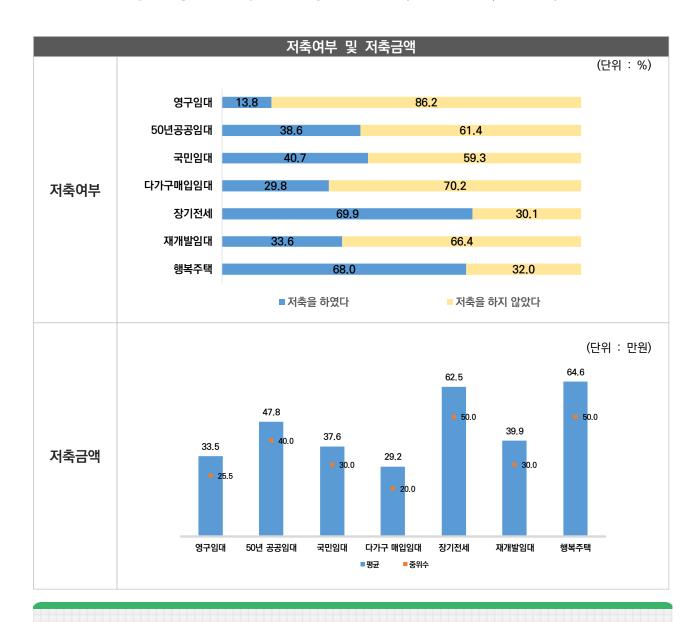
(단위:%)



∰ 일반적으로 엥겔지수는 저소득 가계일수록 높게 나타는데 영구임대 유형에서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음. 최근 신혼부부 가구 등이 주요 입주대상인 행복주택에서는 이와 반대로 엥겔지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냄.

#### 정기전세·행복주택 가구는 68% 이상 저축, 저축금액은 월 60만원 이상

- 장기전세, 행복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저축을 하지 않은 비율이 저축을 한 비율보다 높음.
  - 장기전세의 저축 비율은 69.9%, 행복주택은 68.0%
- 저축금액 평균은 행복주택과 장기전세가 상대적으로 높음(각각 64.6만원, 62.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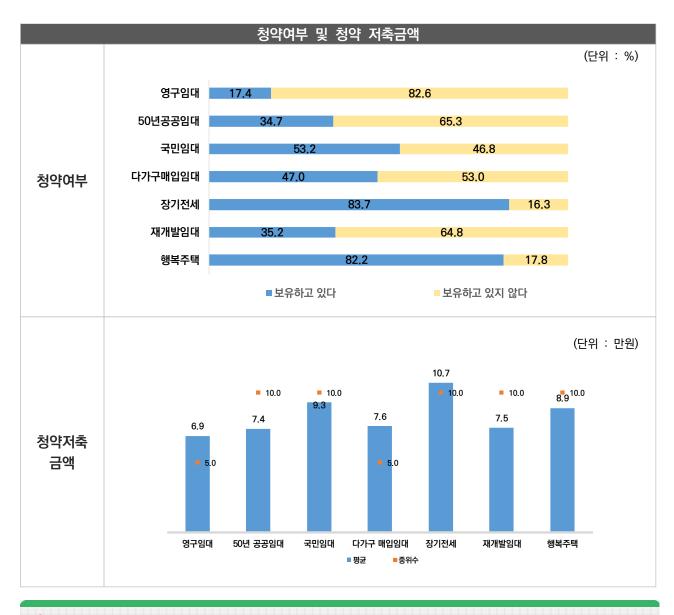


→ 공공임대주택 3가구당 1가구가 저축을 하고 있으며, 임대유형별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장기전세, 행복주택에서 저축비율과 저축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Ⅱ 주요 조사결과

#### Ⅱ-2. 입주자 현재 생활상

- 3가구 중 1가구 청약저축 가입 (영구임대 제외)
  -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을 제외한 유형은 청약 미보유 비율이 보유에 비해 높음.
    - 국민임대의 청약 보유 비율은 53.2%, 장기전세는 83.7%, 행복주택은 82.2%
  - 청약 저축금액 평균은 장기전세(10.7만원)가 가장 높고, 청약 저축금액 중위수는 영구임대와 다가구매 입임대를 제외한 유형 모두 10.0만원
  - 장기전세와 행복주택은 청약을 통한 주거상향 이동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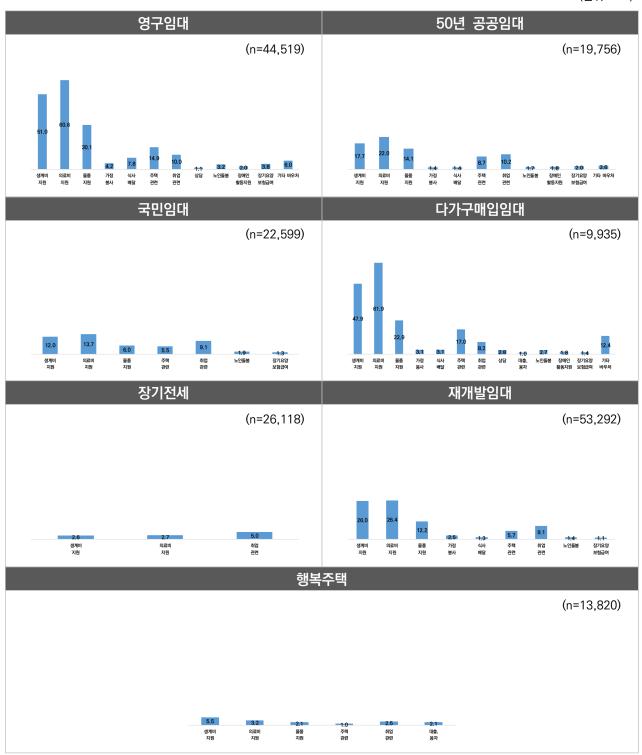


□ 저축여부 및 저축금액과 연계하여 청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기전세 및 행복주택에서는 자산축적 등을 통해 내집마련 등 주거상향이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청약저축금액은 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으나, 동 규칙 제10조에 따라 월 납임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함에 따라 중위수가 10만원이 가장 많이 나타남.

# 🜇 | 6. 복지서비스 이용

# 생계비, 의료비 지원서비스를 다수 이용 중

-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이용 비율 상대적으로 높음.
-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있으나, 생계와 건강에 대한 서비스 활용도가 높음.



# Ⅱ 주요 조사결과

# Ⅱ-3. 입주전 생활상과 입주 경로

# 집 │ 1. 직전주택 특성

- 절반 이상 단독/다가구에서 거주하다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였고, 비주택 탈출비율은 5.2%
  - 직전주택 유형으로는 단독/다가구(64.2%) 비율이 가장 높음.



□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의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것 자체가 정책효과로 볼 수 있음. 주거실태조사(2020)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서울의 주거취약계층은 약 48만 가구로 나타남. 이 중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가구는 약 14만 가구로 분석됨.

10.8

6.9

16.2

64

13.2

20.3

12.8

10.7

0.5

1.2

1.1

0.5

0.8

1.1

0.6

0.9

0.0

1.5

0.0

0.1

02

0.2

0.2

0.5

0.3

0.5

0.2

16

38

0.0

0.5

12

100.0

100.0

100.0

100.0

22.0

6.6

38.5

49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주택

(22.731)

(11,032)

(27,063)

(56.995)

12.1

10.6

6.9

23.0

35.3

50.9

22.0

49.9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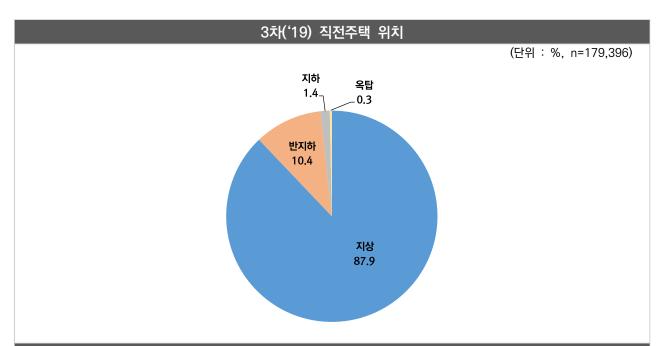
0.2

0.9

0.1

#### 지하·반지하·옥탑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한 가구 12.1%

- 3차('19) 직전주택 위치로는 지상(87.9%) 비율이 가장 높음.
- 비주택뿐만 아니라 지하·반지하·옥탑 거주 가구를 주거용 및 지상으로 이주시킨 점은 공공임대주택의 큰 역할



#### 임대유형별 직전주택 위치

('19) 3차

(10) 0.4							
	사례수 (명)	지상	반지하	지하	옥탑	계	
전체	(179,396)	87.9	10.4	1.4	0.3	100.0	
임대유형							
영구임대	(44,685)	82.1	14.6	2.6	0.6	100.0	
50년 공공임대	(19,721)	93.7	5.9	0.4	0.0	100.0	
국민임대	(22,001)	90.7	9.1	0.2	0.0	100.0	
다가구매입임대	(10,746)	79.1	13.5	6.8	0.7	100.0	
장기전세	(26,747)	98.4	1.6	0.0	0.0	100.0	
재개발임대주택	(54,971)	86.1	12.7	0.8	0.4	100.0	
행복주택	(60)	100.0	0.0	0.0	0.0	100.0	

('21) 4차

	사례수 (명)	지상	반지하	옥탑	계
전체	(13,583)	98.4	1.4	0.2	100.0
임대유형					
행복주택	(13,583)	98.4	1.4	0.2	100.0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제시함.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하여 지역 커뮤니티시 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더 이상 주거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 주요 조사결과

# Ⅱ-3. 입주전 생활상과 입주 경로

# € 직전주택 점유형태 중 일부는 사글세, 일세, 무상

- 1차('16) 직전주택 점유형태로는 보증금 있는 월세(44.1%)와 전세(43.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4차('21) 직전주택 점유형태 또한 보증금 있는 월세(44.5%)와 전세(32.7%)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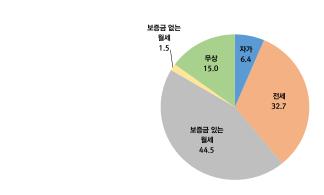


#### 1차('16) 임대유형별 직전주택 점유형태

	사례수 (명)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또는 연세	일세	무상	계
전체	(183,215)	4.4	43.7	44.1	2.1	0.8	0.1	4.8	100.0
임대유형									
영구임대	(45,424)	3.6	18.7	65.7	6.0	0.8	0.0	5.2	100.0
50년 공공임대	(19,970)	6.5	38.4	45.2	0.8	0.6	0.8	7.7	100.0
국민임대	(22,731)	4.2	47.7	42.1	1.5	0.9	0.1	3.5	100.0
다가구매입임대	(11,032)	3.3	19.2	69.1	2.6	0.6	0.0	5.1	100.0
장기전세	(27,063)	4.2	84.9	8.4	0.0	0.0	0.0	2.4	100.0
재개발임대주택	(56,995)	4.6	49.0	39.5	0.7	1.2	0.0	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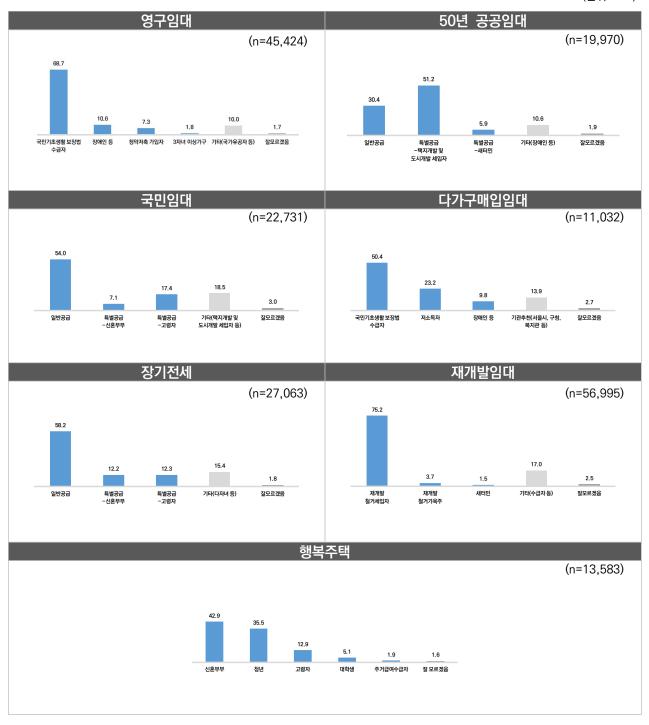
(단위: %, n=13,583)



#### ☑ 2. 입주경로

#### 임대유형별 입주경로 차이 명확

- 영구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요 입주대상
-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 비율이 78.4%
-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는 절반 이상 일반공급
- 각 임대유형별 입주계층 차별화에 따른 결과



#### 주요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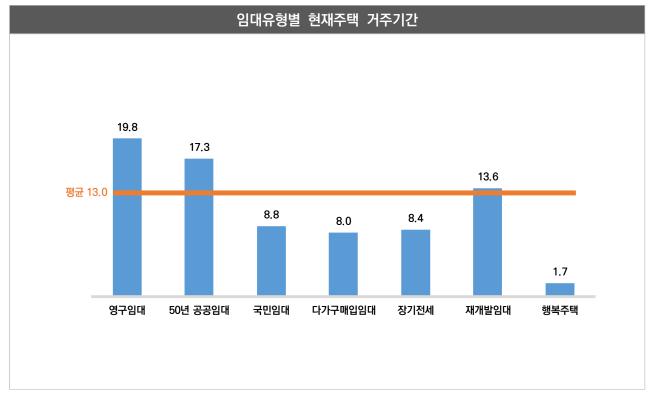
# 11-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및 인식

#### □ 1. 안정적 주거지 역할 및 주거이동

# 🛃 공공임대 평균 거주기간은 13년

-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임대의 거주기간 평균은 전체 평균보다 긺.
  - 영구임대 19.8년, 50년 공공임대 17.3년, 재개발임대 13.6년
-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짧은 것은 타 유형보다 최근에 공급되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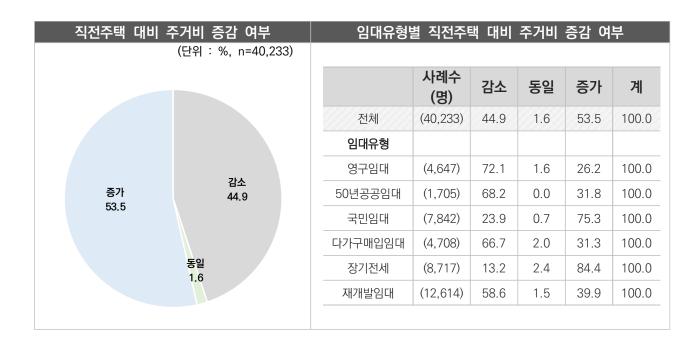
(단위 : 년)



💷 무주택 임차가구 3.5년, 자가가구 9.8년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거 주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출처: 성진욱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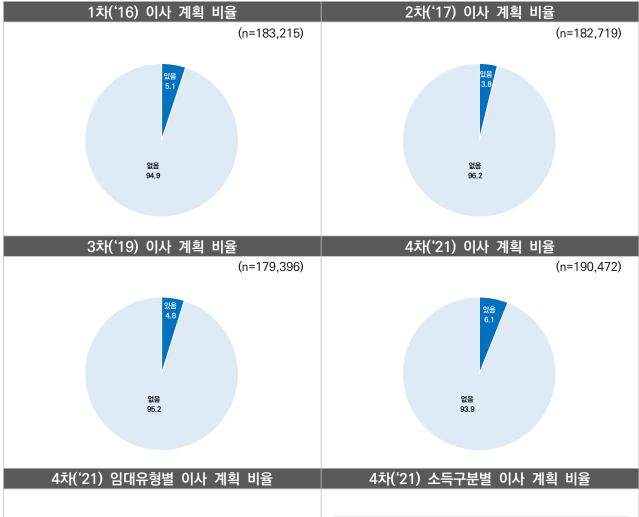
#### 대부분 직전주택 주거비 이하 수준에서 거주

- 직전주택 대비 감소했다는 비율이 44.9%, 증가했다는 비율이 53.5%
  - \*직전주택 주거비는 2차년도 응답값 기준, 현재주택 주거비는 1차년도 응답값 기준으로 산출
  - \*직전주택과 현재주택의 점유형태 변경된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전환 월세 금액 기준으로 비교(전환율 5%)
  - \*직전주택 주거비와 현재주택 주거비 중 모름/무응답 있는 경우 비교 불가로 제외



#### € 대부분의 가구가 이사계획이 없음

- 1~4차년도 모두 이사 계획 비율 10% 미만 수준
  - 행복주택 가구 이사계획은 32.8%로 가장 높음.
  - 소득이 높을수록 이사계획을 갖는 경향이 있음.
-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
  - 다가구매입임대는 주거비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사계획가구 비율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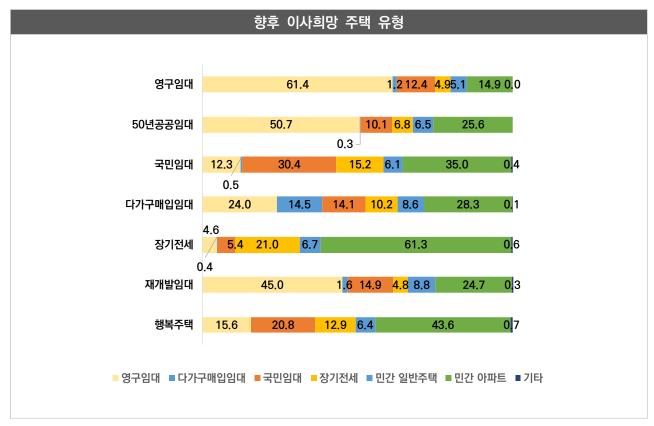
	사례수 (명)	있음	없음	계
전체	(190,472)	6.1	93.9	100.0
임대유형				
영구임대	(44,519)	0.9	99.1	100.0
50년 공공임대	(19,756)	0.6	99.4	100.0
국민임대	(22,599)	5.0	95.0	100.0
다가구매입임대	(9,935)	10.3	89.7	100.0
장기전세	(26,118)	8.8	91.2	100.0
재개발임대	(53,292)	3.9	96.1	100.0
행복주택	(13,820)	32.8	67.2	100.0

사례수 (명)	있음	없음	계
(190,472)	6.1	93.9	100.0
(54,381)	1.2	98.8	100.0
(38,714)	3.4	96.6	100.0
(31,237)	7.2	92.8	100.0
(47,724)	12.6	87.4	100.0
(18,416)	7.5	92.5	100.0
	(명) (190,472) (54,381) (38,714) (31,237) (47,724)	(g) (190,472) 6.1 (54,381) 1.2 (38,714) 3.4 (31,237) 7.2 (47,724) 12.6	(9) (190,472) 6.1 93.9 (54,381) 1.2 98.8 (38,714) 3.4 96.6 (31,237) 7.2 92.8 (47,724) 12.6 87.4

#### 장기전세 외. 절반 이상 향후에도 공공임대 거주 희망

- 향후 이사를 희망하는 유형으로 공공임대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79.9%)
  - 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재개발임대는 향후 이사희망 주택유형으로 영구임대 비율이 높음.
  - 국민임대·다가구매입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은 민간 아파트를 선호
- 취약계층은 더욱 저렴한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함.
  - 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재개발임대 가구는 향후 이사희망 주택 유형으로 영구임대를 선호하였고, 이는 더 욱 저렴한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

(단위 : %)



💷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좋은 점 1순위는 '이 사걱정 없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볼 때 현재주택 지속거주 의사가 강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이사계획의 주된 이유는 규모, 시설, 자가 마련

-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은 '자가주택 마련'이 이사계획 이유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영구임대는 주택 규모 확장을 응답한 비율이 71.1%
- 시설 및 설비 양호를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28.9%), 다가구매입임대 (34.4%), 재개발임대(24.1%)
-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협소한 규모,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음.





➡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기존 대비 1.5배 이상 면적 확대, 단열시공 등을 통한 실내공간 개선, 공유공간 조 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성 확대 등 개선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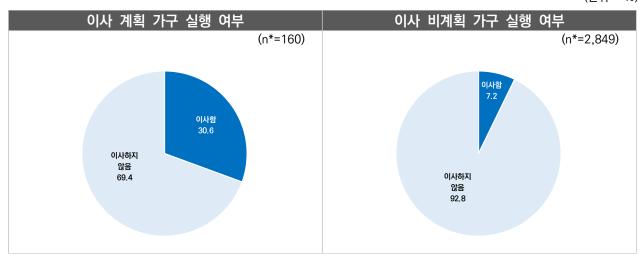
# 주요 조사결과

#### Ⅱ-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및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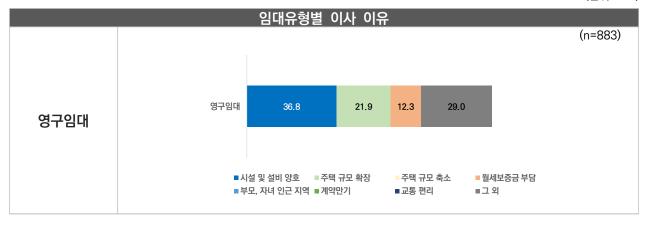
#### 이사계획 가구 중 30% 실행, 시설과 규모가 주된 이유

• 1차년도 이사 계획 가구 중 30.6% 실행, 이사 비계획 가구 중 7.2%가 실행 \*1차년도에 이사 계획 응답 기준, 2~4차년도 이사 여부 확인

(단위:%)



- 시설 및 설비 양호 비율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36.8%), 국민임대(33.0%), 장기전세 (56.1%)
- 주택 규모 확장 비율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21.9%), 50년 공공임대(35.9%), 국민임대 (56.9%), 재개발임대(29.7%)
- 다가구매입임대는 계약만기(53.9%)를 꼽은 비율이 절반 이상
- 이사계획가구와 이사실행가구의 주된 이유는 면적과 시설 및 설비
  - '계약만기' 이유를 제외하고 이사실행가구의 주된 이유는 '시설 및 설비 양호'한 주택으로의 이동, '주택 규모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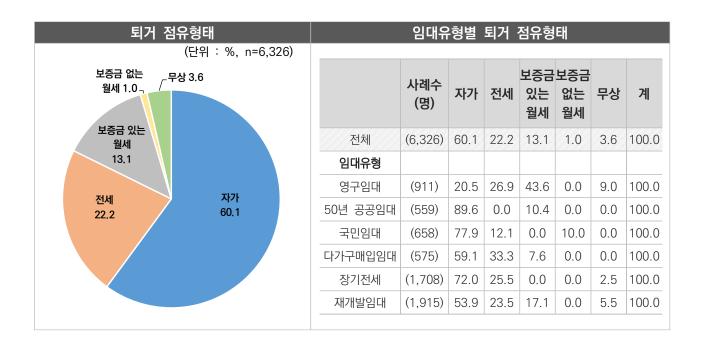


# Ⅱ 주요 조사결과

# Ⅱ-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및 인식

#### 鬉 퇴거가구 중 60% 자가주택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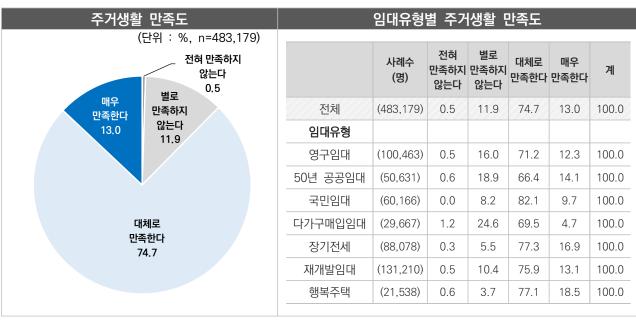
- 퇴거 이후의 점유형태 자가 60.1%, 전세 22.2%, 보증금 있는 월세 13.1%
  - 영구임대 가구는 퇴거 후 자가주택 마련 비율 20% 수준이며, 전월세 비율이 약 70%
  - 50년 공공임대, 퇴거 후 자가주택 마련 비율 89.6%로 가장 높음.
- 점유형태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절반이상이 주거상향이동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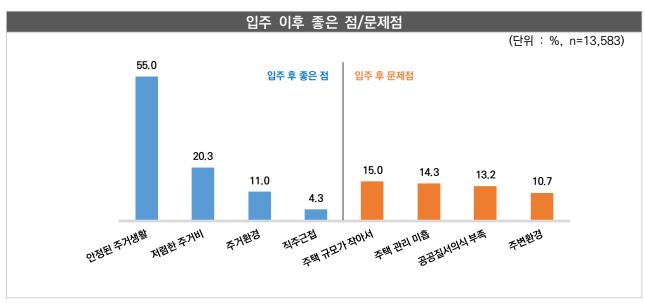


#### ☑ │ 2. 인식 및 희망사항

#### 🔯 안정적 주거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나. 전용면적과 관리에 불만

- 주거생활에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전체의 87.7%
  - 상대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의 불만족도가 높음.
- 입주 후 좋은 점으로는 '안정된 주거생활(55.0%)'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문제점으로는 '주택 규모가 작아서(15.0%)'의 비율이 가장 높음.
- 공공임대주택의 주된 역할인 주거 안정성과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규모, 미흡한 관리에 대한 불만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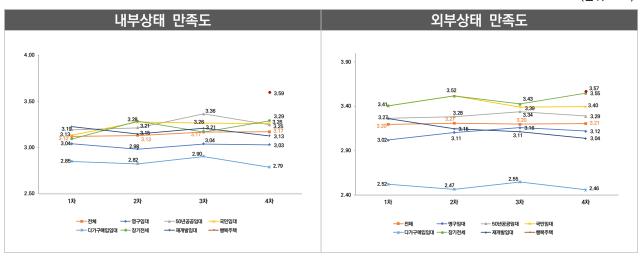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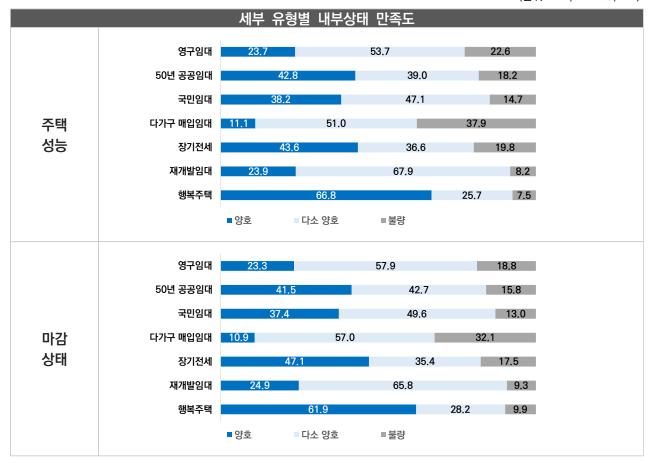
#### € 임대유형별 외부상태 만족도 차이가 내부상태 만족도 보다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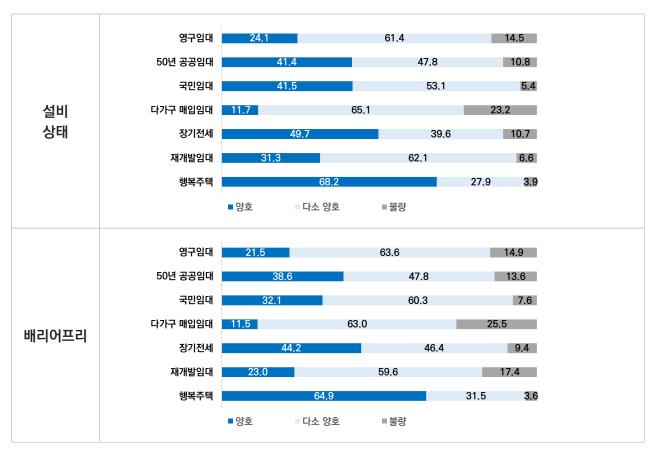
- 다가구매입임대는 내부상태 만족도와 외부상태 만족도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다가구매입임대는 주택유형 특성상 만족도가 낮음.
  - 다가구매입임대는 타 임대유형과 달리, 비아파트 유형으로 내외부상태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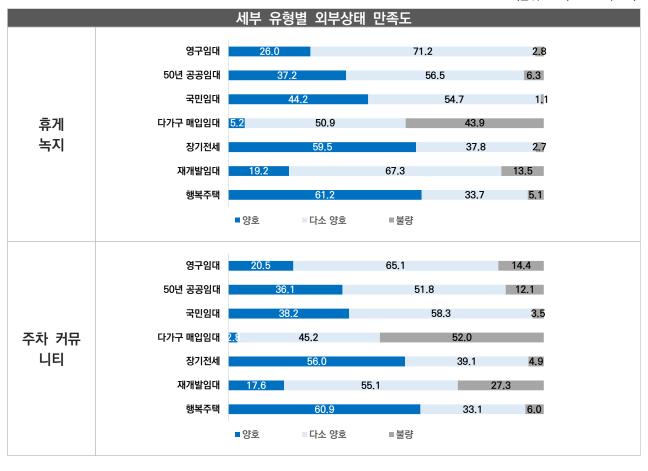


(단위: %, n=190,472)





(단위: %, n=190,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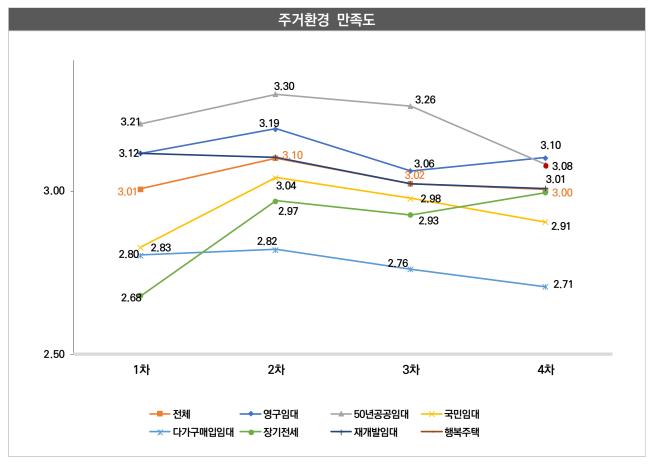


👊 특히 다가구매입임대의 경우 타 임대유형과 달리 단지형이 아닌 별동형태의 다세대 및 다가구로 구성됨. 이 에 따라 실무적으로 대두되는 민원 1순위는 시설물 보수요청 보수처리 지연, 보수비용 등 시설보수에 대한 불만족임. 또한 다가구매입임대를 유지 및 관리하는 센터와 개별 공공임대주택 간의 접근성이 낮으며, 평균 3.6km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출처: 성진욱,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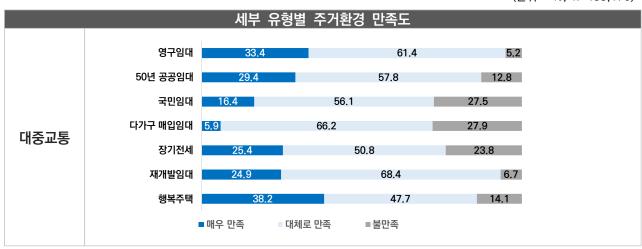
#### 주거환경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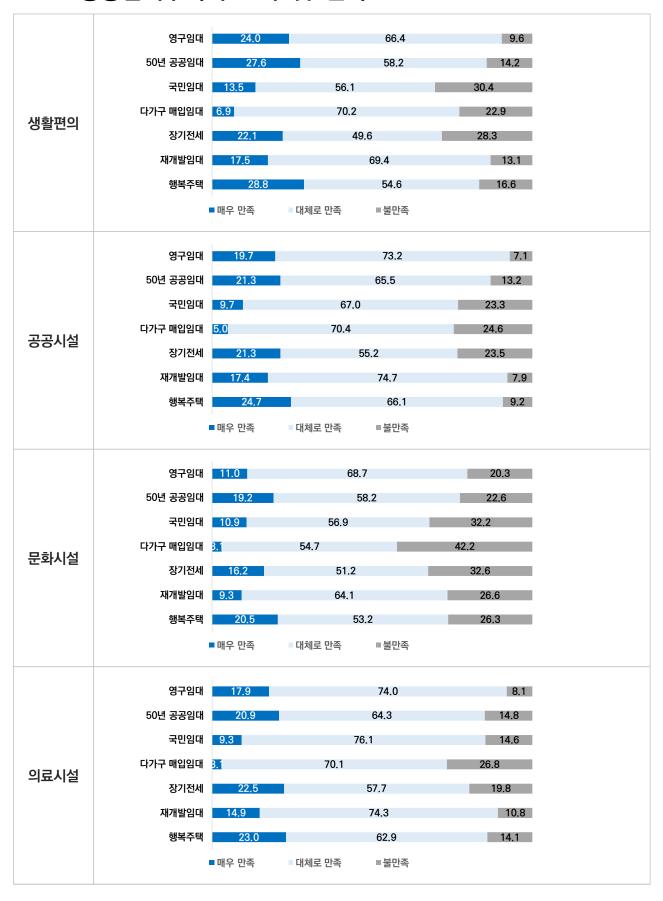
- 전체에 대한 주거환경 만족도는 4점 척도 기준, 3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
- 다가구매입임대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특히 문화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다가구매입임대는 입지적으로 자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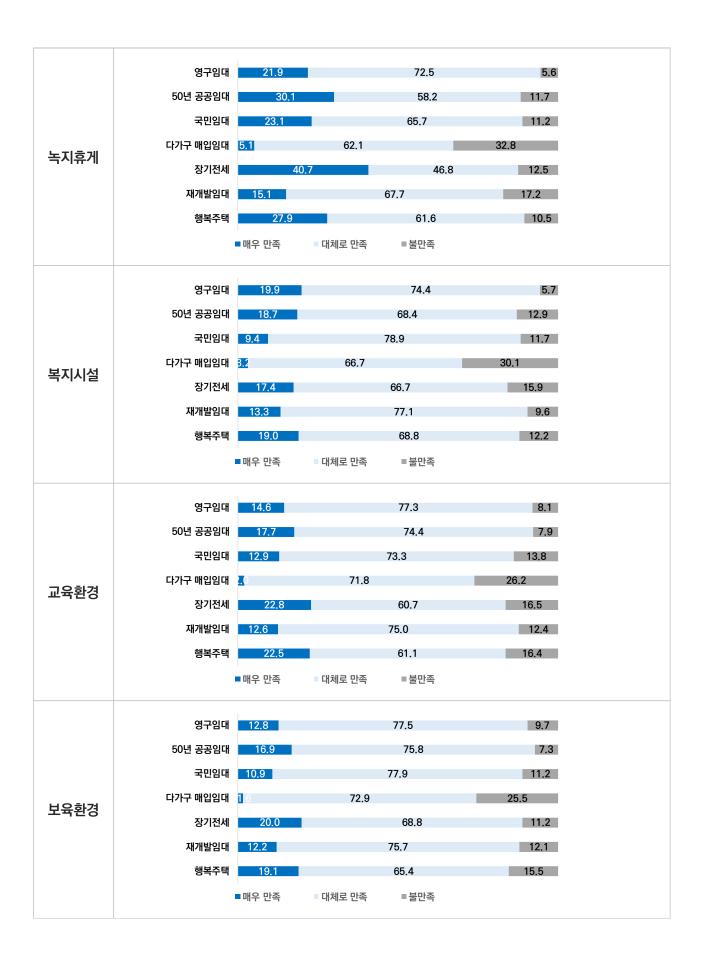
(단위: 점)



(단위: %, n=483,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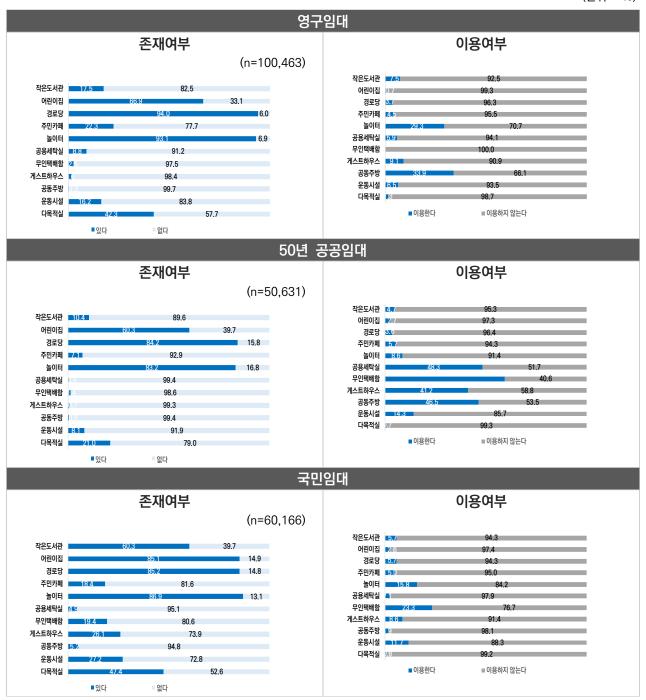
#### 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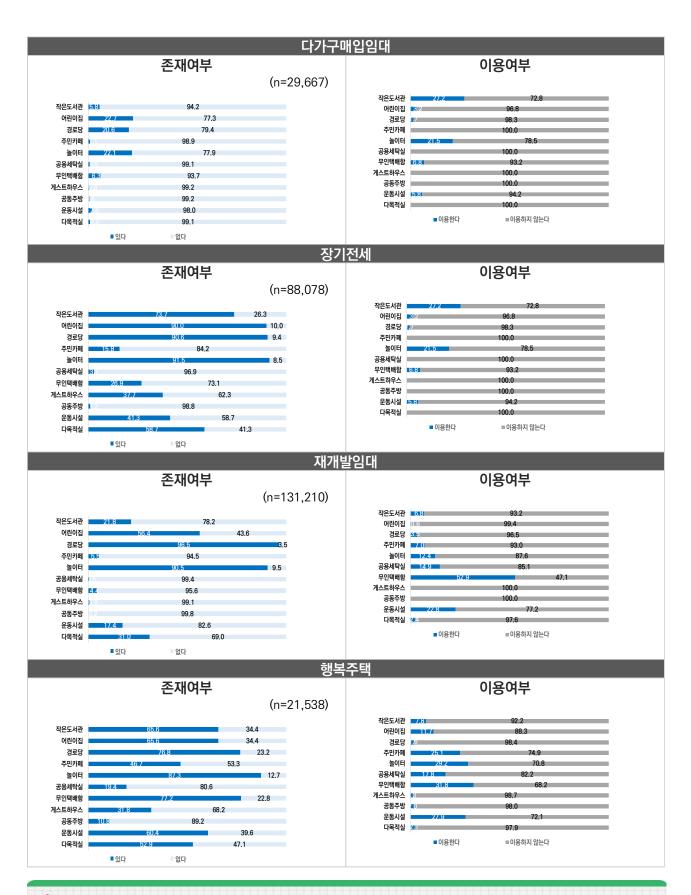
#### 주요 조사결과

#### Ⅱ-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및 인식

####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공급되었으나 이용은 미미

- 커뮤니티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의 존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의 커뮤니티시설 부재가 뚜렷
- 커뮤니티시설 공급과 이용의 미스매칭 발생





♥ 커뮤니티시설의 공급증기에 비해 입주지들의 낮은 활용률과 공실 등의 문제발생으로 운영관리 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 생하고 있음. 단지규모 및 수요피약을 통해 적정규모의 공간혜확과 프로그램. 운영주체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주요 조사결과

# 11-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및 인식

# € 운동시설 추가 설치를 희망

-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로는 운동시설의 응답 비율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음.
  - 추가로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운동시설, 주민카페, 무인택배함, 작은도서관 응답이 다수였으며, 그중 운동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 장기전세·행복주택은 주택관련 서비스, 나머지 유형은 생계비 지원 서비스 를 원함
  - 장기전세 27.3%, 행복주택 31.0%가 주택관련 서비스 희망
  - 생계비 지원 서비스는 영구임대(69.5%). 다가구매입임대(62.4%)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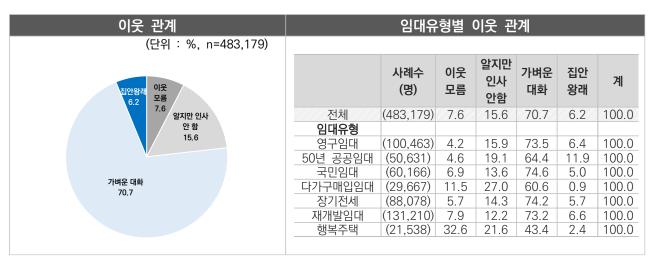
#### 주요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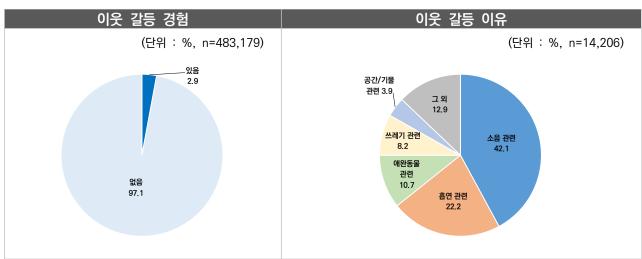
# Ⅱ-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및 인식

#### 环 🛘 3. 이웃과의 관계

#### 🔯 이웃과 가벼운 대화를 하고 지내며. 큰 갈등 없음

- 이웃관계 유형 중에서는 가벼운 대화를 하고 지낸다는 비율이 70.7%로 가장 높음.
- 이웃 간 갈등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전체의 2.9%이며, 갈등 이유로는 소음 관련(42.1%)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음.
- 혼합유형별 이웃 갈등 경험비율 차이는 거의 없음.
  - 혼합단지 이웃 갈등 경험 3.3%, 전용임대단지 이웃 갈등 경험 2.7%





단지구부벽	NI으	가드	겨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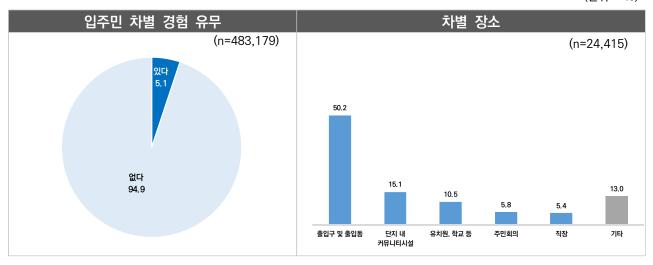
(단위 :
-------

	사례수 (명)	있음	없음	계
전체	(483,179)	2.9	97.1	100.0
단지구분				
혼합단지	(186,710)	3.3	96.7	100.0
전용임대단지	(296,469)	2.7	97.3	100.0

#### 🔂 입주민 일부가 차별 경험을 하였고, 주된 장소는 출입구

•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1%이며, 차별 장소로는 '출입구 및 출입동 (50.2%)'의 비율이 가장 높음.

(단위:%)



→ 공공임대주택은 그 간 저소득계층의 집단적 거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가구주뿐만 아 니라 자녀세대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나타남. 영구임대의 경우 자녀세대에서 차별경험이 있는 경우 22.7%인 반면 유사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다가구매입임대의 경우 2.9%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는 다가구매입임대 정책취지와 같이 소규모 분산공급으로 인한 낙인화 측면에서 대해서 개선 효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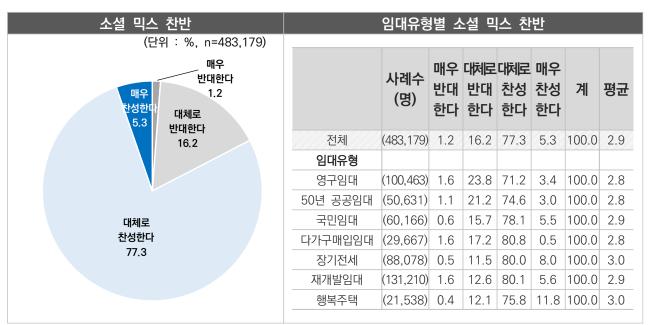
# 주요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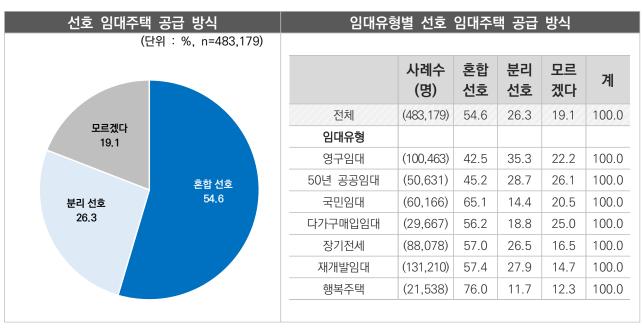
#### Ⅱ-4. 공공임대주택의 효과 및 인식

# 4. 소셜 믹스

#### € 소셜 믹스에 80%이상 찬성, 한 단지 혼합형 선호

- 소셜 믹스에 '찬성한다(매우 찬성한다+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6%
  - 모든 임대유형에서 '찬성한다' 응답비율이 70%이상으로 임대유형별 차이 미미
-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는 한 단지에 혼합하여 짓는 방식을 선호한다(54.6%)는 비율이 가장 높음.





# 서울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있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 차 년 도

C H A P T E R

# Ⅲ 향후계획

#### 🎐 드디어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가구 상황을 한눈에 파악 가능

-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이 미흡하였으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함.
- 이 조사는 그간 양적인 차원의 주택공급이 아닌 질적인 차원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가구특성을 반영한 정책 근거를 모색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음.

#### 🎐 패널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까지 추적조사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가구를 원표본으로 확정하여 퇴거할 때까지 추적하는 조사임.
- 기존의 선행된 많은 패널조사, 횡단면 조사와 차이를 보이며 주거실태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조사를 통 한 기초 현황자료의 생산이 가능함.

#### 🏺 패널조사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이를 토대로 활발한 연구 필요

- 햇수로는 7년째 접어들었으며, 조사 차수로는 4번의 검증과정을 거쳐 보다 정제된 데이터를 생산하였음.
- 해당 데이터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체계 를 갖추었음.

#### 🌞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시리즈 지속 추진

- 2021년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 ㅣ: 연도별 및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에서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전반적 흐름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살펴볼 수 있었으며 공공임대유형 간 차 이도 확인할 수 있었던 기초보고서로써 의미를 가짐.
- 2022년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 II: 정책효과를 중심으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옴 니버스식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일한 데이터를 바탕 으로 다른 시각에서 공공임대주택 가구를 살펴보았기에 공통적 인식과 함께 차별적인 논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임.
- 향후 2023년에는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 Ⅲ: 공간분석을 중심으로」를 기획하고 있음. 2016년부터 구축된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가구의 특성,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은 충분히 패널자료로써 안정된 구축을 완료하였음.
- 그러나 삶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떠한 주거환경을 누리는지를 주관적 인 설문 응답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예를 들어 응답한 패널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에 지하철역은 몇 개가 존재하고, 접근성은 어느 정도 인지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를 포함하여 인근 주변주택 가격과의 격차 등 일정범위, 행정동·자치 구·서울시 차원에서 공간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향후계획

####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패널조사의 방향

-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에는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한 물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기초분석 에 그치지 않고, 정책효과 분석을 시도하고 있고, 정책의사결정자 및 연구자를 포함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을 위해 더욱 정진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행복주택 임대유형 추가에 따른 심층분석,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자료와 연계한 임대유형 내임 대유형 간 심층분석, 공간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 매년 차례로 면밀한 검토를 이어가는 것은 여전 히 남아 있는 과제임.

#### 참고문헌

-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9년.
- ✓ 김윤중·성진욱(2020), 2019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3차년도), SH도시연구원.
- ☑ 김윤중·윤윤채(201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50년공공임대주택, SH도시연구원.
- ☑ 김윤중·윤윤채(201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국민임대주택, SH도시연구원.
-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2016년, 2017년, 2019년, 2021년.
- ✓ 성진욱(2019),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SH도시연구원.
- ✓ 성진욱·김기중·오정석·권윤지·이창효·이훈·장성만·장윤정·정지영(2022),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 (Ⅱ): 정책효과를 중심으로, SH도시연구원. (발간예정 '22.12)
- ✓ 성진욱·정윤혜·김기중(2021),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 (Ⅰ): 연도별 및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SH도시연구원.
- ☑ 성진욱·정윤혜·김기중(202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SH도시연구원.
- ☑ 성진욱·정윤혜·김기중(2021), 코로나19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가구에 미치는 영향, SH도시연구원.
- ✓ 성진욱·이훈(2021),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방안: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SH도시연구원.
- ☑ 오정석·이성원(201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영구임대주택, SH도시연구원.
- ✓ 오정석·이성원(201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다가구매입임대주택, SH도시연구원.
- ☑ 이영민·성진욱(201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총괄보고서, SH도시연구원.
- ☑ 이영민·성진욱(201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장기전세주택, SH도시연구원.
- ▼ 이영민·성진욱(2017),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재개발임대주택, SH도시연구원.
- ☑ 이영민·성진욱(2018), 201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2차년도), SH도시연구원.
- ✓ 이영민·이미연(2015),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SH도시연구원.
- ▼ 장영희·이영민·성진욱(2017), 2016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기초분석 보고서(1차년도), SH도시연구원.
- ☑ 지규현·이영민·성진욱(2017),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의 적정성 평가, SH도시연구원.

## 서울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있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 차 년 도

C H A P T E R

부록1

표본설계 및 가중치



## 1. 표본설계

#### 표본설계 기본 방향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를 대상으로 다차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입주자 패널조사 수행이 가능한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여, 조사 목적에 부합하고 대표성 높은 표본을 추출함.

#### 표본설계 상세

• 모집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중 공동생활 가구와 단체계약자를 제외

• 층화 : 공공임대주택 유형과 주거복지센터 구분에 따라 층화

• 배분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제곱근비례배분(다가구매입임대 표본 크기는 조정)

고드라지기네다	공공임대주택유형												
관할주거센터	50년공공임대	국민임대	다구매입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합계						
강남주거센터	25	85	20	105	105	0	340						
강서주거센터	70	65	51	195	60	0	441						
관악주거센터	45	0	18	10	5	130	208						
노원주거센터	105	25	69	175	10	35	419						
동대문주거센터	20	25	35	40	35	70	225						
마포주거센터	20	30	11	25	25	55	166						
성동주거센터	0	10	3	0	5	125	143						
성북주거센터	0	5	64	55	0	105	229						
송파주거센터	25	110	14	0	90	15	254						
양천주거센터	100	45	54	0	75	55	329						
은평주거센터	0	30	61	0	65	90	246						
합계	410	430	400	605	475	680	3,000						

\*1차년도 조사 결과 실제 구축된 패널 가구 수는 총 3,009가구임.

• 추출 - 1차 추출단위(PSU) : 아파트 단지(다가구매입임대는 1차 추출단위를 가구로 설정)

- 2차 추출단위(SSU) : 단지 내 임대가구

#### 표본 보완 필요성

- 1차년도 패널 구축 당시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중 주요한 6개 유형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유형은 설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매년 이루어지고 기존에 없던 유형도 생겨났지만, 패널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구축 당시 구성을 유지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구성과의 차이가 커짐.



#### 행복주택 표본 추가(4차년도)

- 기존 6개 유형 이외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행복주택을 4차년도 표본으로 추가함.
  - 주택 공급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매회 조사마다 표본을 추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특정 시기마다 공급 현황을 반영하여 주요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모집단과 표본 간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음.

관할주거센터	공공임대주택유형											
선일구기센터	고령자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LH	합계					
남부복지단	15	5	90	5	35	0	150					
서부복지단	5	0	25	5	50	10	95					
중부복지단	5	0	35	0	35	10	85					
북부복지단	5	5	30	0	20	10	70					
합계	30	10	180	10	140	30	400					

<sup>\*4</sup>차년도 조사 결과 실제 추가된 행복주택 패널 가구 수는 총 401가구임.

## 2. 가중치

- 1차년도 표본 가구의 가중치는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설계가중치를 설정하고, 무응답 조정과 모집단 정보를 바탕으로 사후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함(개인의 경우 표본 가구 내 설계가중치는 동일).
- 이후에는 각 차수별로 응답 분포 현황을 분석하고 응답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들을 추려내어, 표본 가구(또는 개인)가 조사에 응답할 확률을 로지스틱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 model)을 통해 추정함.
  - 즉, 해당 차수에 응답했는지 여부를 반응변수로 하고 지역 구분 / 임대주택 유형 / 가구주 연령 등의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적합하여 응답률의 차이를 보정함.

4차년도 예시 : 4차년도 패널가구가중치=3차년도 가구가중치 $imes \frac{1}{4$ 차년도조사 응답확률

## 서울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있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 차 년 도

C H A P T E R

부록2

설문지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차년도 설문지

가구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주거생활, 경제활동, 주거복지 수요 등 주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합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 응답 내용 및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9월

이 조사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주관기관

## **5H** 서울주택도시공사

※ 담당자 : 성진욱 책임연구원※ 연락처 : 02-3410-8521

수행기관	<u>.</u>
	Hankook Research

※ 담당자 : 김지혜 수석팀장※ 연락처 : 02-3014-0122

가구번호				응답자 구분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응답자 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주소	시/.	도	시/군/-	구 세부주소 :				
면적이니	월	<u>o</u> l	O.	면접 시작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일시		즫	일	면접 종료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원 ID				면접원 성명				
검증결과								



## A. 가구사항

**A1** 

귀 댁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된 직계가족 모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이란?

가구원

비가구원

- 1) 동거, 사실혼 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포함
- 2)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 전원(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 제외)
- 3) 다른 지방 근무(해외 근무 포함), 학업(해외 유학 포함), 군복무, 치료 및 요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된 직계가족
- 1) 함께 살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미혼자녀
- 2) 분가한 기혼자녀
- 3) 같이 살고 있는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
- 4)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장기간 요양하거나 수용되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되지 않는 가족

No	1) 성명	2) 가구주 와의 관계	3)출생연월 (주민등록 기		4) 성별	5) 실제 동거 여부	6) 비동거 사유 (5=②만 응답)	7) 주민등 <del>록</del> 상 등재 여부	8) 미등재 사유 (7=②만 응답)	9) 종교	10) 혼인상태	11) 교육수준	12) 이수 여부 (11=3~®만 응답)	13) 현재 주된 경제 활동 참여 상태
ı			연도	월	① 남성 ② 여성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다른 지방 근무 ② 해외 근무 중 ③ 학업 (해외 유학포함) ④ 군복무 ⑤ 입원 및 요양 ⑥ 별거 ⑦ 가출 ⑧ 양육 및 보육 ⑨ 기타	① 등재 ② 미등재	① 비혈연 ② 사실혼 ③ 기타	① 있음 ② 없음	① 유배우 ② 사별·이혼· 별거 ③ 미혼 ④ 미해당 (만18세 이하)	① 미취학 ② 무학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	① 졸업 ② 수료 ③ 중퇴 ④ 재학 ⑤ 휴학	(1) 만14세 이하 (1) 상용직 임금근로자 (2) 임시직 임금근로자 (3) 일용직 임금근로자 (4)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5) 고용주 (6) 자영업자 (7) 무급가족종사자 (8) 실업자 (9) 비경제활동인구 (주부, 학생, 군복무 등)
1														
2														
3														
4														
5														

주된 경제 활동	참여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가운데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사람을 말함
임시직 임금근로자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일반적으로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다른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긴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된 자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음
일용직 임금근로자	임금(또는 현물)을 받기로 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말함. 이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임시공·일일공, 때에 따라서는 계절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음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함
노인일자리 근로자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노인 인력 운영 센터, 민간사업 수행 기관이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에게 제공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노인 근로자를 말함
고용주	사업의 경영주체로 한 명 이상의 피고용인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자영업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포함)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함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사람을 말함
실업자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주간 1주 동안 ① 1주일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② 항상 취업이 가능하며,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을 말함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자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자를 말함.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공익근무요원 등이 여기에 해당

10.가구주의 할아버지       20. 가구주의 배우자의할아버지         01. 가구주의 할머니       04. 가구주의 배우자의 할머니         05. 가구주의 아버지       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6. 가구주의 어머니       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3. 가구주의 첫째 자녀       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14, 다섯째=15,)       (넷째=24, 다섯째=25,)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31, 둘째=32,)       (첫째=41, 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선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의 및 그 배우자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의 및 그 배우자       (셋째=233, 넷째는 234,)         997. 기타 친인적       998. 인적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숫자에 관계없이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표	
02. 가구주의 할머니 04. 가구주의 배우자의 할머니 05. 가구주의 아버지 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6. 가구주의 어머니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 가구주의 첫째 자녀 2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 가구주의 첫째 자녀 23.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14, 다섯째=15,) (넷째=24, 다섯째=25,)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31, 둘째=32,) (첫째=41,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청째 자녀의 불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3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24,) (셋째=233, 넷째는 224,)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셋째=133, 넷째는 134,)	10.가구주	20. 가구주의 배우자
05. 가구주의 아버지 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06. 가구주의 어머니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14, 다섯째=15,) (셋째=24, 다섯째=25,)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 =31, 둘째=32,) (첫째=41,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셋째=133, 넷째는 134,)	01. 가구주의 할아버지	03.가구주의배우자의할아버지
06. 가구주의 어머니       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14, 다섯째=15,)       (넷째=24, 다섯째=25,)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 =31, 둘째=32,)       (첫째=41,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02. 가구주의 할머니	04. 가구주의 배우자의 할머니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14, 다섯째=15,) (넷째=24, 다섯째=25,)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 =31, 둘째=32,) (첫째=41,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41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불째 자녀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3.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233, 넷째는 234,)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05. 가구주의 아버지	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
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넷째=14, 다섯째=15,) (넷째=24, 다섯째=25,) (셋째=31, 둘째=32,) (첫째=41,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06. 가구주의 어머니	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
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14, 다섯째=15,) (넷째=24, 다섯째=25,)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 =31, 둘째=32,) (첫째=41,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2.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1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11. 가구주의 첫째 자녀	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넷째=14, 다섯째=15,)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 =31, 둘째=3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13, 넷째는 1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214,) 13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1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1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 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12. 가구주의 둘째 자녀	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 =31, 둘째=32,) (첫째=41,둘째=4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 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13. 가구주의 셋째 자녀	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
(첫째 =31, 둘째=32,)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13, 넷째는 1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214,) (셋째=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넷째=14, 다섯째=15,)	(넷째=24, 다섯째=25,)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첫째 =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123, 넷째는 214,)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124,)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33, 넷째는 124,)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134,) (셋째=135, 넷째는 134,)	31. 가구주의 형제/자매	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
(첫째 =51, 둘째=5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13, 넷째는 1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213, 넷째는 2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첫째 =31, 둘째=32,)	(첫째=41,둘째=42)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첫째 =51, 둘째=52,)	(첫째=61, 둘째=62)
(셋째=113, 넷째는 114,)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셋째=113, 넷째는 114,)	(셋째=213, 넷째는 214,)
(셋째=123, 넷째는 124,)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셋째=2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착관계가 아닌 동거인	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	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	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셋째=123, 넷째는 124,)	(셋째=223, 넷째는 224,)
(셋째=133, 넷째는 134,)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	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	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셋째=133, 넷째는 134,)	(셋째=233, 넷째는 234,)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996.가구주의열째이상자녀및그배우자,	
	가구주의 열째 이상 자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997. 기타 친인척	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 번호)

A1-1

귀 댁의 가구원에 대한 질문 중 동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구 내에서 동거하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구성원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지만 다시 돌아올 것으로 전제된 직계가족 모두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No	1) 기존/신규 가구원 구분	2) 가구원 동거 상태	3) 비동거 사유 (2=②만 응답)	4) 분가 시기 (2=③만 응		5) 분가 사유 (2=③만 응답)	6) 분가 정보 -주소 (2=③만 응답)		9) I망 시 <sup>7</sup> ④만 응		10) 사망 사유 (2=④만 응답)		11) P 유입 E②만 용		12) 신규 유입 사유 (1=②만 응답)
	① 기존 ② 신규	① 함께 살고 있다 ②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③ 결혼, 이혼, 경제적, 독립 등의 이유로 분가하였다 ④ 지난 조사 이후 사망하였다	① 다른 지방 근무 ② 해외 근무 중 ③ 학업 (해외 유학포함) ④ 군복무 ⑤ 입원 및 요양 ⑥ 별거 ⑦ 가출 ⑧ 양육 및 보육 ⑨ 기타	연도	열	① 혼인 ② 이혼 ③ 경제적 독립 ④ 경제활동 지역 변경 (근무지/ 사업장 이동) ⑤ (손)자녀 양육 및 교육 ⑥ 거주 공간 협소 ⑦ 주택 구입 ⑧ 기타 ( )	он <i>)</i>	연도		어떤	① 노환 ② 사고 ③ 질병 ④ 기타 ( )	연도		염	① 출생 ② 입양 ③ 혼인 ④ 합가 ⑤ 기타 ( )
1															
2															
3															
4															
5															

	① 예 ② 아니오	+ A3 이동 + A4 이동			
A3	가구원 중 등록장이 장애유형이 중복인			장애유형, 장애구분 응답해 주십시오.	을 응답해주세요.
	1) 가구원 번호	2) 가구원 성명	3) 주·	된 장애유형	4) 장애구분
				@ 71	© XX(7 X 1 07)
	보	기	① 지체 ② 뇌병변 ③ 시각 ④ 청각 ⑤ 언어 ⑥ 안면 ⑦ 신장 ⑧ 심장	<ul> <li>⑨ 간</li> <li>⑩ 호흡기</li> <li>⑪ 장루·요루</li> <li>⑫ 뇌전증</li> <li>⑬ 지적</li> <li>⑭ 정신</li> <li>⑮ 자폐증</li> </ul>	① 중증(기존 1~3급) ② 경증(기존 4~6급)
A4					자녀가 결혼 및 독립한 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	В
A5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구입니까?		
	① 부모 ② 조부모 ③ 부모의 형제·자미 ④ 비혈연 인력(어린 ⑤ 성인의 돌봄이 없 ⑥ 기타(	이집 등 보육 인력,		E우미, 아이돌보미, 가?	정보육교사, 이웃 등)

**A2** 

귀 댁의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있습니까?

A6 (가구주 혼인 상태가 유배우인 경우만 응답) 귀하께서 결혼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A7** 귀댁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 B. 현재 주택

## PRE1 귀댁은 지난 조사 이후 이사를 하셨습니까?

- ① 이사했다
- ② 기존 주택에 그대로 살고 있다 B3 이동

### PRE1-1 이사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주택 마련
- ② 입주자격 상실
- ③ 월세, 보증금 부담
- ④ 계약만기
- ⑤ 주택 규모 확장
- ⑥ 주택 규모 축소
- ⑦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 ⑧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 ⑨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⑩ 직장 이동으로 인해(취직, 전근, 개인사업 등)
- ⑪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 ⑫ 가구 상황의 변화(분가, 독립, 이혼, 재혼 등)
- ③ 기타(

)

#### PRE1-2

## 이사를 하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2016년 당시 거주하시던 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기존 주택과 같은 동 ② 기존 주택과 같은 구의 다른 동
- ③ 기존 주택과 다른 구
- ④ 경기·인천
- ⑤ 수도권 외 다른 지역

#### B1

#### 귀 댁은 현재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공공임대주택
- ② 일반주택 → L. 퇴거 가구 파트 이동

### B1-1

####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영구임대주택
- ② 50년 공공임대주택
- ③ 국민임대주택
- ④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⑤ 장기전세주택
- ⑥ 재개발임대주택

⑦ 행복주택

	<ol> <li>일반단독주택</li> <li>영업겸용단독주택</li> <li>연립주택</li> </ol>	<ul><li>② 다가구단독주택</li><li>④ 아파트</li><li>⑥ 다세대주택</li></ul>
ВЗ	귀 댁의 현재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	까?
	<ul> <li>② 전세</li> <li>③ 보증금 있는 월세</li> <li>④ 보증금 없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li> <li>●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역</li> </ul>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객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전월세 전환한 경우
B4	귀 댁은 현재 주택에 언제부터 거주하기 /	시작하셨습니까?
	년 또는  • 현재 가구주의 기준으로 거주 년도를 응답 받습  • 가구주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가구주가 살게 된  • 공공임대주택을 명의변경하거나 상속 받은 경우	
B5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방은 몇 개입니까?	
		방 개
	거주공간으로서, 취침용, 서재, 옷방, 놀이방으로	지 않는 방과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B6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전용면적(실사용 민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평 또는 m²
	•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실사용 면적임	

**B2** 

귀 댁의 주택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귀 댁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 **B7**

**B8** 

시설의 내용	사용형태	종류
6) 난방 시설	C L ! ! ML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		③ 도시가스 보일러

##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 및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최근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 가격 및 임차료	2) 전	세(B3의 ②응답자)	전세보증금 :	억면	<u> </u> 만원
	3) 보증금 있는 월세(B3의 ③응답자)		보증금 :	억	<u> </u>
	3) 포증급 )	成亡 볼세(D3의 ⓒ중립시 <i>)</i>	월 세 :		_원
	4) 보증금 없는 월세(B3의 ④응답자)	월 세 :		_원	

- 입주 당시의 임차료가 아니라, 가장 근래에 체결/갱신한 현재 임차료를 기준으로 응답
-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융자받은 경우, 융자금을 포함한 총 주택 보증금액을 응답

#### (B3의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 응답자만) **B9** 현재 살고 계신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1) 금액		(2) 남은 대출금역	(3) 원리금 상환 여부	(4) 원리금 상환액(월)
1) 자기자금		억	만원			
2)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	1금융권	억	만원	억 만:	① 원리금 상환중 → ② 원리금 연체중 ③ 상환완료	만원
(여러 기관에서 융자받은 경우 합산)	2금융권	억	만원	억 만:	① 원리금 상환중 → ② 원리금 연체중 ③ 상환완료	만원
3) 금융기관 외 디 곳에서 빌린 금		억	만원	억 만	① 원리금 상환중 → ② 원리금 연체중 ③ 상환완료 ④ 기타(중도상환 및 일시상환 등)	만원
4)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		억	만원			

- 입주 당시의 임차료가 아닌 현재 임차료를 기준으로 마련 금액을 응답
-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융자받은 경우, 융자금을 포함한 총 주택 보증금액을 응답
- 남은 대출금이 0인 경우 (3) 원리금 상환여부는 ③상환완료로 체크
- 3)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의 경우 이자가 없거나, 일시상환이나 중도상환 시 같이 이자를 주기로 한 경우는 모두 ④ 기타에 체크

- (B3의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 응답자만) B10 귀 댁의 임차보증금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③ 약간 부담된다
  - ④ 매우 부담된다
  - 현재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부담 정도를 응답
- (B3의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 응답자만 응답) B11 현재 살고 계신 임차료(월세)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② 가족 · 친지의 도움
  - ③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④ 주거급여를 제외한 정부 및 지자체 도움
  - ⑤ 사회단체 도움
  - ⑥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론 이용
  - ⑦ 임차료를 마련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음
- (B3의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 응답자만 응답) **B12** 귀하께서는 월임차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 ③ 약간 부담된다
  - ④ 매우 부담된다
- 귀 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내부의 상태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불량으로 B13 표기해 주십시오.

구 분	불량	다소 불량	다소 양호	양호
1) 주택성능(결로·곰팡이, 누수·방수상태 등)	1	2	3	4
2) 마감상태(도배, 장판, 도어, 창문 등)	1	2	3	4
3) 설비상태(냉난방·냉온수 설비, 주방설비, 전등·콘센트 전기기구 등)	1	2	3	4
4) 배리어프리 설계(문턱 제거, 욕실단차 제거, 비상벨 등)	1	2	3	4

B14

## 귀 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환경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불량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구 분	불량	다소 불량	다소 양호	양호
1) 휴게·녹지공간(놀이터, 야외운동시설, 공원 등)	1	2	3	4
2) 주차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등)	1	2	3	4
3) 장애인·고령자 배려 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 보행로 단차 제거 등)	1	2	3	4
4) 방범상태(CCTV 설치, 가로등, 안심벨 등)	1	2	3	4



## C. 현재주택 입주 정보(행복주택만 진행)

C1	귀 가구의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경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입주경로	
	① 대학생 → C1-7-1 이동 ② 청년 → C1-7-2 이동 ③ 신혼부부 → C1-7-3 이동 ④ 고령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⑨ 잘 모르겠음	
	C1-7-1 대학생 중 어떤 유형으로 입주를 신청하셨습니까?	
	① 대학생 ② 취업준비생	
	C1-7-2 청년 중 어떤 유형으로 입주를 신청하셨습니까?	
	① 청년 ② 사회초년생	
	C1-7-3 신혼부부 중 어떤 유형으로 입주를 신청하셨습니까?	
	① 신혼부부 ② 예비신혼부부 ③ 한부모가족	
C2	귀 댁의 가구주께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만으로 몇 세였습니까?	
	만	세
C3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구원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명

C4	귀 댁의 가구주께서는 서울특별시 총 거주기간이 몇 년입니까?
	년
<b>C</b> 5	공공임대주택 입주이후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① 이사 걱정 없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서 ② 단지환경, 치안, 교육 등의 주거환경이 좋아서 ③ 주택 내부의 각종 시설이 좋아서 ④ 현재 거주하는 집의 평수 또는 방수가 넓어져서 ⑤ 임차료 및 관리비가 저렴해서 ⑥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⑦ 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이나 접근성이 좋아서 ⑥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서 ⑥ 시장, 마트, 공공기관 등 편의시설이 가까워서 ⑥ 기타( ) ① 없음
<b>C6</b>	공공임대주택 입주이후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① 직장 또는 생활터전과 멀어서 ② 임대주택 거주자라는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아서(사회적 소외 혹은 차별) ③ 이웃의 공공질서의식이 부족해서 ④ 교육 환경이 좋지 않아서 ⑤ 보증금, 임차료 및 관리비 부담이 커서 ⑥ 임차료 및 관리비를 제외한 일상 생활비가 더 들어가서 ⑦ 가구 수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또는 방수가 작아서 ⑧ 가구 수에 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또는 방수가 커서 ⑨ 주택 내부의 각종 시설과 설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⑩ 상담소나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입주 후 자격미달, 거리 등) ① 범죄, 소음, 쓰레기 등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① 하자보수 등 임대주택 관리가 미흡해서 ③ 기타( )

	— ×	4
	_ ×	н
		ш

## D. 직전주택(행복주택만 진행)

D1	귀 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전	거주하셨던 주택유	유형은 다음 중 어디	기에 해당됩니까?	
	① 일반단독주택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⑤ 연립주택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 ⑨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 ⑪ 기숙사		<ol> <li>다가구단독주택</li> <li>아파트</li> <li>다세대주택</li> <li>오피스텔</li> <li>고시원</li> <li>기타(특수사회사)</li> </ol>		
D2	귀 댁의 직전주택 점유형태는 다음	음 중 어디에 해당	됩니까?		
	<ol> <li>자가</li> <li>보증금 없는 월세</li> <li>무상</li> </ol>	② 전세 ⑤ 사글세 또는 (	견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⑥ 일세	
D3	귀 댁의 직전 주택의 전용면적(실	!사용 면적)은 얼미	·입니까?		
			평 또는	=	m²
D4	귀 댁의 직전 주택의 방은 몇 개	입니까?			
					개

#### D5 귀 댁의 직전주택의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

시설의 내용	(1) 사용형태	(2) 종류
1) 부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입식 ② 재래식
2) 화장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수세식 ② 재래식
3)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온수 ② 비온수
4) 상수도 시설	① 연결되어 있음(※ 수질이 양호한 ② 연결되어 있지 않음	지하수 이용시설 완비도 포함)
5) 하수 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6) 난방 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④ 기름 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⑥ 전기 보일러 ⑦ 연탄 보일러 ⑧ 기타

## (최근 5년이내 입주한 경우만 응답)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기 바로 전에 거주했던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D7** 

	1) 전	세(D2의 ②응답자)	전서	비보증	금:	 _억	만원
지저즈태 이치크	2) 비즈그 (	있는 월세(D2의 ③응답자)	보증	등금	:	 _억	만원
역산구력 감사료	2) 모증급 )	太亡 걸세(DZ의 じ중립시)	월	세	:		원
	3) 보증금 (	없는 월세(D2의 ④-⑥응답자)	월	세	:		원

#### **D8** 귀 댁의 직전주택 위치는 어디입니까?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지하

④ 옥탑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지 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 제일 윗층(예: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옥상이 아닌 ①지상으로 응답 받음



## 📑 E. 이사 계획

E1

귀 댁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① 계획있음 → E2 이동
- ② 계획없음 → E6 이동

**E2** 

이사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 골라주십시오.

2순위 1순위

- ① 자가주택 마련
- ② 입주자격 상실
- ③ 월세, 보증금 부담
- ④ 계약만기
- ⑤ 주택 규모 확장
- ⑥ 주택 규모 축소
- ⑦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
- ⑧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 ⑨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 때문에
- ⑩ 직장 이동으로 인해(취직, 전근, 개인사업 등)
- ⑪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 ⑫ 가구 상황의 변화(분가, 독립, 이혼, 재혼 등)
- ③ 기타(

E2-1

이사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주거환경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①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 ② 생활편의시설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 ③ 공공시설 주민센터, 경찰서, 우체국 등
- ④ 문화·여가시설 도서관, 미술관, 전시관 등
- ⑤ 의료시설 병원, 약국, 의료복지시설(종합병원) 등
- ⑥ 녹지·휴게 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 ⑦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경로당 등
- ⑧ 교육환경 유치원, 학교, 학원 등
- ⑨ 보육시설 어린이집, 놀이방 등

	① 현재 주택과 같은 동 ③ 현재 주택과 다른 구 ⑤ 수도권 외 다른 지역	② 현재 주택과 같은 구의 다른 동 ④ 경기·인천
E4	귀 댁이 이사하고자 하는 주택의 점유형태	는 무엇입니까?
	<ol> <li>자가</li> <li>보증금 있는 월세</li> <li>사글세 또는 연세</li> <li>무상</li> </ol>	<ul><li>② 전세</li><li>④ 보증금 없는 월세</li><li>⑥ 일세</li></ul>
<b>E5</b>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주택의 전용면적(	일사용 면적)은 얼마입니까?
		평 또는 m²
	→ <del>S</del>	답 후 F. 공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가입 파트 이동
	→ 응	답 후 F. 공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가입 파트 이동
E6	→ 응 이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	
E6	이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소 1순위  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어서 ② 임차료 가격이 민간 일반주택보다 저렴해서 ③ 민간 일반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④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해서	서대로 2개 골라주십시오. 2순위
E6	이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조 1순위 ①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어서 ② 임차료 가격이 민간 일반주택보다 저렴해서 ③ 민간 일반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서대로 2개 골라주십시오. 2순위

귀 댁이 이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F. 공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가입

F1

## 가구원별 공적연금, 개인연금, 건강보험에 대해 현재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공적	연금	국민연	금		
	F1. 가입 여부	F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F3. 가입 종별	F4. 납부 여부	F5. 개인 연금 가입 여부	F6. 건강 보험
No	<ul> <li>① 비해당 → F5 이동</li> <li>① 연금수급 → F5 이동</li> <li>② 연금가입 → F2 이동</li> <li>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 F2 이동</li> <li>④ 미가입 → F5 이동</li> <li>⑨ 모름 → F5 이동</li> </ul>	① 국민연금 → <b>F3 이동</b> ② 공무원 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 우체국 연금 ⑨ 모름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 ⑨ 모름 → F5 이동	① 납부하고 있음 ② 납부하지 않고 있음	① 가입 ② 미가입 ⑨ 모름	<ol> <li>직장가입자</li> <li>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li> <li>지역가입자</li> <li>지역가입자의 세대원</li> <li>의료급여 1종</li> <li>의료급여 2종</li> <li>미가입</li> </ol>
1						
2						
3						
4						
5						

1) 공적연금 가입형태	• 공적연금에는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이 포함되며 보훈연금은 제외				
3) 국민연금 가입종별	① 직장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함.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② 지역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지역에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자를 말함. 종업원 없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해당함			
	③ 임의가입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한 자를 말하며, 이들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함			
	④ 임의계속가입자	•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60세에 도달해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자로 연장 가입하여 수급권을 얻기 위해 신청을 하여 가입한 자를 말함			
4) 국민연금 납부 여부	• 현재 기준으로 납부 기한을 깜빡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				
5) 개인연금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 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 수단임				
<ul> <li>만 18세 미만의 가구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 비해당에 체크</li> <li>단, 18세 미만 청소년이 직장인일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 가능</li> </ul>					



## G. 맞춤형 급여

G1 귀 댁은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수급자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G2 이동

G1-1

현재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신지 응답해주십시오.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 수급 형태도 응답해 주십시오.

급여종류	(1) 수급여부	(2) 수급형태
1) 생계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2) 의료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3) 주거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ul><li>① 임치급여</li><li>② 임치급여특례</li></ul>
4) 교육급여	① 수급 ② 비수급	

#### → G1-1 응답 후 H.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파트 이동

-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 일반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이 되므로 가구원 중 한명의 급여수급계좌로만 입금되나 특례로 인정되는 수급자의 경우 가구와는 개별적으로 수급할 수 있음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
- 주거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면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학생 부교재비, 중·고등학생학용품비, 고교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 G2 귀 댁은 현재부터 지난 1년간 맞춤형 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 신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G3 이동**
  - ② 아니오 → H.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파트 이동
- G3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⑨ 잘 모르겠다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 (

)



## H.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H1

## 귀 댁은 현재부터 지난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1) 생계비 지원	1)	2
2) 의료비 지원	1)	2
3) 물품지원	1)	2
4) 가정봉사 서비스	1	2
5) 식사 배달 서비스	1	2
6) 주택관련 서비스	1)	2
7)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1	2
8) 상담서비스	1)	2
9)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1	2
10)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2
1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	2
12) 장기요양보험급여	1	2
13) 아동 상담 프로그램	1	2
14) 기타 바우처 서비스( )	1)	2

•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료급여 제외), 기초연금, 장애대상),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양육비), 긴급복지자비, 근로장려세제 등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등 사회보험 소득은 포함 안 됨. 보육료 지원비, 노인교정된 지원은 포함 안 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자	지원금(생계지원), 가정위( 한 현금(국민연금, 고용보 교통비, 학비지원, 바우처	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 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지원금 등 용도가 한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를 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함). 단,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개인적인 유	경우를 말함(현금, 현물	t, 재활서비스 모두 포
• 물품지원	식료품, 의류, 가구 등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 제도	
• 가정봉사서비스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의 가정활동에 도움을 필요로 ㅎ	는 분들에게 제공하는 /	서비스
• 주택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임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	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
• 직업훈련, 취업상담 알선	노인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를 포함		
• 상담서비스	고민 및 갈등, 정신건강 문제, 약물 및 알코올 문제, 학 관련된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대 및 가정폭력 문제, 이	동의 문제 등과
<ul> <li>생계, 생업, 자립, 교육</li> <li>등을 위한 각종 대출,</li> <li>융자</li> </ul>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통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융자,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 장애인 자		
8/1	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이 있음(단, 주택 관련	,	ND, NITO 66N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	는 가사 활동지원, 주간	보호 등의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저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포함	체공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노를 말하며
• 장기요양보험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5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 아동 상담 프로그램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 수정 등의 프로그램 등이 있음		족상담, 놀이치료, 행동
• 기타 바우처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유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 부모학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경  스, 자살고위험군 건강증 학교 서비스 등의 지역개	당애인 보조기기 렌탈서 등진서비스,

귀 댁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순서대로 H2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생계비 지원 ② 의료비 지원 ③ 물품지원 ④ 가정봉사 서비스 ⑤ 식사 배달 서비스 ⑥ 주택관련 서비스

> ⑦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⑧ 상담서비스 ⑨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을 위한 각종 대출, 융자

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⑫ 장기요양보험급여

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⑬ 아동상담 프로그램

귀 댁을 포함한 무주택 임차가구에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월세보조금 지원

H3

- ② 전세자금 대출 지원
- ③ 공공분양주택 공급
- ④ 공공임대주택 확대
- ⑤ 주거상담과 정보제공
- ⑥ 대출규제 완화
- ⑦ 개발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 ⑧ 기타( )

	4		
	^	î	
	×		
	,		

## l. 소득

I1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근로소득이 있었습니까?
	• 근로소득이란 근로(일)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포함
	① 있었다
	② 없었다
I2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20.01~2020.12) 사업소득이 있었습니까?
	• 사업소득이란 사업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함. 자영업이나 농림어업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연간 순소득(생산물이나 수확물의 연간 총 판매액에서 각종 임차료, 연료비, 농약대, 비료값, 사료값 등 각종 비용은 제외하되 생활비는 포함한 액수)을 말함
	① 있었다
	② 없었다
l3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금융소득이 있었습니까?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 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① 있었다
	② 없었다
<b>I4</b>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20.01~2020.12) 부동산소득이 있었습니까?
	• 부동산 소득이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 다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① 있었다 <b>I4-1. 연총액</b> 만원
	② 없었다

## 15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20.01~2020.12) 사회보험소득이 있었습니까?

- 사회보험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이 해당
- 사회보험의 종류는 아래 표 참고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훈연금	기타
<ol> <li>국민연금</li> <li>공무원연금</li> <li>군인연금</li> <li>사학연금</li> <li>별정직우체국연금</li> </ol>	<ul><li>⑥ 실업급여</li><li>⑦ 육아휴직급여</li><li>⑧ 직업능력개발급여</li></ul>	<ul><li>⑨ 휴업급여</li><li>⑩ 장해연금</li><li>⑪ 유족급여</li></ul>	① 간호수당 ③ 사망일시금 ④ 생명조정수당 ⑤ 군인사망보상금	⑯ 기타

② 없었다

16

17

###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개인연금 소득이 있었습니까?

-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응답
- 개인연금을 월 단위로 받은 경우, 받은 개월 수 계산해서 총액으로 기입

② 없었다

##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공적이전소득이 있었습니까?

- 공적이전소득이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대가없이 받는 보조금(현물 포함)을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점심 도시락 등 상시적으로 받는 보조금 등이 이에 속함.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해 1회성으로 정부 기관에서 받는 소득도 포함
- 기초연금이란,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된 후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경우를 대상으로 함.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함.
- 공적이전소득의 종류는 아래 표 참고

## 공적이전소득의 종류

- ①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맞춤형 급여)
- ②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 ③ 기초연금
- ④ 한부모가족지원
- ⑤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 ⑥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 ① 보육료 지원(i-사랑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 ⑧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 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 ⑩ 농어업 정부보조금
- ① 기타(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등)

17-1. 현금 연총액 ① 있었다 □ 17-2. 현물 연총액 만원 상당

② 없었다

[8]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20.01~2020.12) 사적이전소득이 있었습니까?
	• 사적이전소득이란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나 자녀, 친척, 친지, 민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민간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이웃, 복지관, 종교 및 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 보조 포함) 등 민간부분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지원금을 말함
	① 있었다
	② 없었다 
19	귀 댁에서는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기타소득이 있었습니까?
	• 기타소득이란 보험금 지급(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을 들었다가 해약하고 받은 돈)이나 퇴직금(위의 사회보험에서 받은 연금 제외), 복권 탄 돈, 증여 또는 상속, 축의금, 부의금, 분실물 찾아주고 받은 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폐품매각대금 등과 같이 위의 다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을 말함
	① 있었다
	② 없었다



## J. 생활비

J1

#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귀 댁의 생활비는 총 얼마입니까? 항목별로도 응답해 주십시오. 총 생활비와 총 합계가 맞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하목 	액수	
0) 총 생활비	월평균	_ _만원
1) 식료품비(주식비와 부식비)	월평균	_만원
2) 외식비	월평균	_만원
3) 자녀 공교육비(초등학교 이상 자녀 학교 등록금, 납입금 등)	월평균	만원
4) 자녀 사교육비(미취학아동 보육비, 학원, 과외비 등)	월평균	_만원
5) 주거관리비(월임차료, 주택설비 수선비, 관리비 등)	월평균	만원
5)-1 광열수도비(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취사연료비)	월평균	만원
6) 교통비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교통수단 이용료, 자동차 구입 및 수리비, 기름값, 대리운전비)	월평균	_만원
6)-1 통신비(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월평균	만원
7) 보건의료비(의료보험료 제외)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과진료비, 수술비, 약값,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 (안경, 콘택트렌즈 등) 등	월평균	_만원
8) 가구·가사용품비(가구, 가정용 기기, 식기 주방 용품, 가사 서비스료 등)	월평균	만원
9) 의류 · 신발비(겉옷, 속옷, 신발, 모자 등의 구입비, 수선, 세탁, 대여비)	월평균	만원
10) 교양오락비 (서적, TV등 교양오락용품 기구 구입, 공연경기관람, 운동강습료, 여행비 등)	월평균	_만원
11) 기타소비지출 (담배, 위생, 미용, 장신구, 손해보험, 보장성 보험, 경조비, 헌금, 시주, 기부금 등)	월평균	_만원
12) 총 생활비((1)+(2)+(3)+(4)+(5)+(5-1)+(6)+(6-1)+(7)+(8)+(9)+(10)+(11))	월평균	만원

- 생활비란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돈
- 생활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1)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공적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비롯해, 타 가구에 보내는 돈 등
  - (2) 저축,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유가증권 부동산 구입, 빌려준 돈 등
  - (3) 주택부금 상환, 빌린 돈 갚은 금액 등
  - (4) 혼수장만이나 교통사고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 등

J1-1

#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귀 댁의 사적 비소비지출은 얼마입니까? 월 평균 금액을 응답해 주십시오.

- 사적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1) 이자비용 :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조달을 위한 이자만 해당(사업자금대출로 인한 이자 제외)
  - (2) 가구 간 이전지출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자녀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 (3) 비영리 단체로 이전 :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은 제외함

월 평균		만원
------	--	----

## J2 지난 1년 간(2020.01~2020.12)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J3 이동 J2-1 생활비 부족 시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고정 저축비용 중 일부활용 ② 대출 ③ 신용카드·카드론 ④ 가족 및 친지 도움 ⑤ 친구 및 이웃 도움 ⑥ 연체 또는 미납 ⑦ 생활비를 줄임 ⑧ 기타( ) J3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겨울철 난방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①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 ② 다소 춥더라도 아껴서 사용한다 ③ 매우 춥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④ 보일러는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을 이용한다 ⑤ 기타( ) J4 지난 1년 간(2020.01~2020.12) 여름철 냉방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① 에어컨이 있고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 ② 에어컨이 있지만 아껴서 사용한다 ③ 에어컨 없이 선풍기, 쿨매트 등을 이용한다 ④ 기타( ) J5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광열수도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셨습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약간 부담된다

④ 매우 부담된다 ⑨ 해당없음

- 지난 1년 간(2020.01~2020.12) 저축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모든 형태의 저축액 총합을 응답해 주십시오.

   저축에는 일반 저축, 적금, 저축성 보험, 개인연금, 계 등이 포함됩니다.
   저축성 보험이란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 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을 말합니다. 예로 새가정복지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노후복지연금 보험 등이 있습니다.

② 저축을 하지 않았다

# J7 귀댁은 지난 1년 간(2020.01~2020.12)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1) 2달 이상 임차료가 밀린 적이 있다	1	2	
2)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못내서 끊긴 적이 있다	1	2	
3)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1	2	9
4)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다	1	2	
5)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가 있다	1	2	
6)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1)	2	
7)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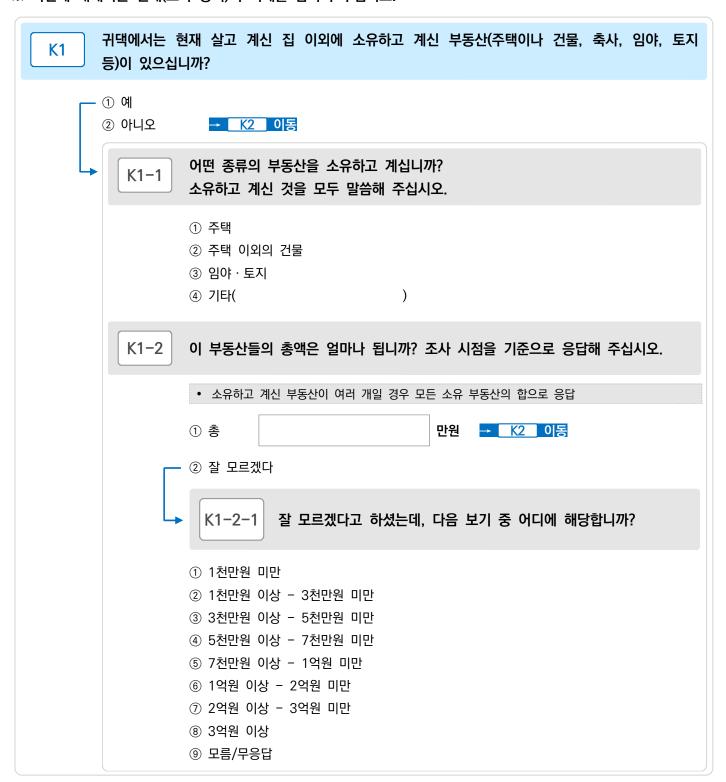
## J8 귀댁은 현재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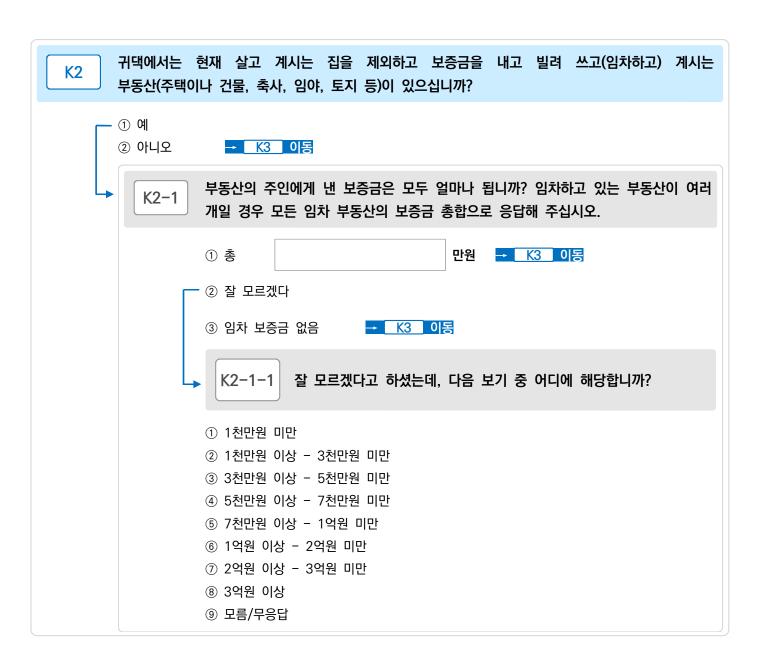
- ② 보유하고 있지 않다



## K. 자산

※ 자산에 대해서는 현재(조사 당시)의 시세를 답하여 주십시오.





**K3** 

## 귀댁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를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 소유 여부	(2) 금 액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총만원

• 자동차는 구입가격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를 중고가로 판매할 경우의 금액을 기입해주십시오.

K3-1

## (K3)-(1)의 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수를 실제 사용목적별 자동차 종류에 따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택시	
자가용	대	다			
생업용	대	대	대	대	

- 자가용과 생업용의 구분은 번호판 종류가 아니라 실제 사용목적으로 구분하여 응답함
- 승합차 : 11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스타렉스 등과 25인승 이상의 버스를 포함
- 화물차 : 트럭, 탑차 등 크기에 관계없이 화물 운반의 목적인 차량은 모두 포함

**K4** 

## 귀댁은 다음과 같은 금융자산(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등)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있다면 그 총액은 얼마입니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시세를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1) 4	<b>L</b> 유 여부	(2) 금	액		
1) 은행예금(2	정기 예·적금, 저축성 예금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현재 총액	만원		
2) 주식, 채권	<u>.</u> , 신탁	① <b>예</b>	② 아니오	현재 총액	만원		
3) 저축성 보	험(교육보험, 연금보험 등)	① <b>예</b>	② 아니오	현재 총액	만원		
4) 아직 타지 않은 계		① <b>예</b>	② 아니오	현재 총액	만원		
5) 기타(	)	① 예	② 아니오	현재 총액	만원		
은행예금 예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분류. 요구불예금은 예금주의 출입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한 보통예금 당좌예금 병단예금 어린이예금 가계종한예금 비거주자 원화예금 등이 있을 저축성예금은							

-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정기예금·저축예금·정기적금·재형저축·목돈마련 저축 등을 포함
- 주식 사원인 주주가 주식회사에 출자한 일정한 지분 또는 이를 나타내는 증권
-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 채권 차용증서이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함.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이 있음
-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 등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이 자산을 신탁 운용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 개발신탁, 일반불특정 금전신탁, 적립식 목적 신탁,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이 이에 포함
- 저축성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급부금이 더 많은 보험.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높은 이율로 적립하여 만기에 지급하는 보험 보험을 말함.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이 여기에 포함. 지금까지 낸 돈(불입총액)을 응답
- 목돈 마련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주기적으로 구성원들이 일정금액을 모으는 형태. 아직 계 타지 않은 계는 지금까지 부은 곗돈의 총액을 써야 하며, 이미 일부를 탔다면 해당 액수를 빼고 응답
- 회원권(골프, 콘도 등),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고가의 내구재(현재 시가 300만원 이상) 등이 있음. 기타 택시 영업권, 상가 권리금 등의 무형 자산도 포함

**K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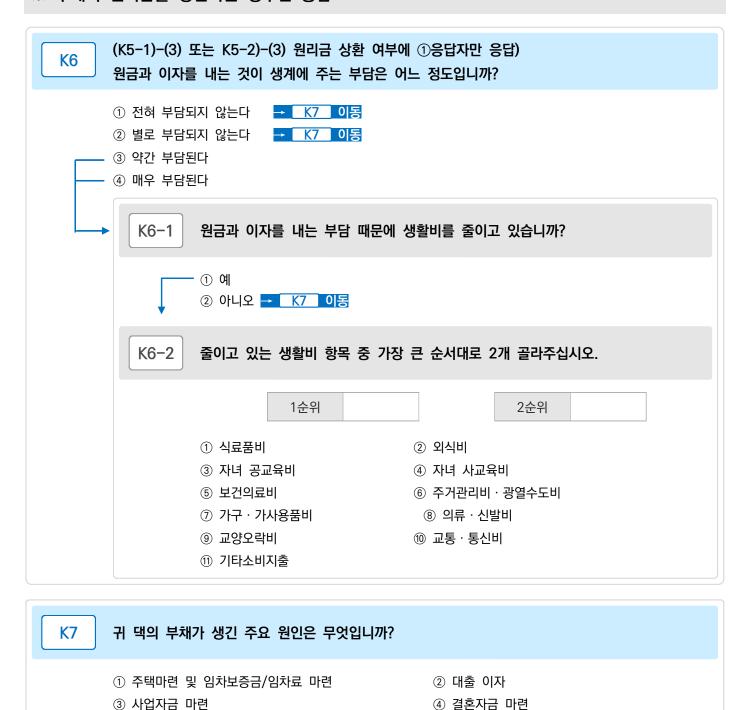
## 귀댁에는 다음과 같은 부채가 있습니까? 있다면 갚아야 할 잔액 총액과 한 달 평균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구 분		(1) 부채 유무	(2) 현재잔액 (남은 대출금액)	(3) 원리금 상환 여부	(4) 원리금 상환액
1) 70717L H-II	170	① <b>예</b>	마인	① 원리금 상환중 →	월만원
<ol> <li>금융기관 부채 (주택융자금,</li> </ol>	1금융	② 아니오	만원	② 원리금 연체중	
마이너스 통장, 카드대출 포함) 2	270	① <b>예</b>	만원	① 원리금 상환중 →	월만원
기드네돌 포함/	2금융	② 아니오	인편	② 원리금 연체중	
2) 비금융기관 부채		① <b>예</b>		① 원리금 상환중 →	월만원
(사채, 회사를 통하 친구·친지에게 빌린		<b>ज</b>	만원	② 원리금 연체중	
앞으로 부어야 할 포함)	로 부어야 할 계			③ 기타(중도상환 및 일시상환 등)	
3) 부동산 임대 보증금		1 예	ПРОІ		
		② 아니오	만원		

### ※ 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만 응답

⑤ 의료비 마련

⑦ 생활자금 마련



※ 지난 조사 이후 분가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M. 분가 가구 파트로 이동함. 없는 경우 가구용 설문 종료.

⑥ 교육비 마련

⑧ 기타(

)



## L. 퇴거 가구

L1

#### 귀 댁의 주택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일반단독주택
-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 ⑤ 연립주택
- ①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 ⑨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① 기숙사

- ② 다가구단독주택
- ④ 아파트
- ⑥ 다세대주택
- ⑧ 오피스텔
- ⑩ 고시원
- ⑫ 기타(특수사회시설 등)
- L2 귀 댁의 현재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또는 연세

⑥ 일세

- ⑦ 무상
-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전월세 전환한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 연 세: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일 세: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계혈족을 제외하고 응답
- L3 귀 댁은 현재 주택에 언제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셨습니까?

년 또는 지금으로부터 년 전

- 현재 가구주의 기준으로 거주 년도를 응답 받습니다.
- 가구주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가구주가 살게 된 시점으로 응답 받습니다.

L4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방은 몇 개입니까?
-------------	----------------

-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8m(6척) 이상, 넓이가 3.3m²(1평) 이상인 거주공간으로서, 취침용, 서재, 옷방, 놀이방으로 이용되는 공간
- 단순히 물건을 쌓아 놓거나(창고 기능) 사용하지 않는 방과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음
- 다락은 방의 요건을 갖추고 사람이 실제로 지내고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

L5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전용면적(실사용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평 또는		m
--	------	--	---

•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실사용 면적임

L6

## 귀 댁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

시설의 내용	(1) 사용형태	(2) 종류
1) 부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입식 ② 재래식
2) 화장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수세식 ② 재래식
3)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온수 ② 비온수
4) 상수도 시설	① 연결되어 있음(※ 수질이 양호한 ② 연결되어 있지 않음	지하수 이용시설 완비도 포함)
5) 하수 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6) 난방 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④ 기름 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⑥ 전기 보일러 ⑦ 연탄 보일러 ⑧ 기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 및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자가는 주택 구입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L7 전세나 월세는 최근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가(L2의 ①응답자)	현재가	격 :	 억	만원
현재주택 가격 및 임차료	2) 전	세(L2의 ②응답자)	전세보충	증금 :	 억	만원	
	a) LIT 7 AU BUILL AND A CENTIL		보증금	:	 억	만원	
		3) 보증급 (	있는 월세(L2의 ③응답자)	월 세	:		원
		4) 보증금	없는 월세(L2의④~⑥응답자)	월 세	:		원

- 입주 당시의 임차료가 아니라, 가장 근래에 체결/갱신한 현재 임차료를 기준으로 응답
-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융자받은 경우, 융자금을 포함한 총 주택 보증금액을 응답

(L2의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 , ⑤사글세 및 연세 가구 응답자만) 현재 살고 계신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1) =	금액 (2) 남은 대출금액		(3) 원리금 상환 여부	(4) 원리금 상환액(월)	
1) 자기자금		억	_만원				
					① 원리금 상환중 →	월만원	
2) 금융기관에서	1금융	억	만원	억만원	② 원리금 연체중		
융자받은 금액 (여러 기관에서					③ 상환완료		
(어리 기관에서 융자받은 경우 합산)					① 원리금 상환중 →	월만원	
	2금융	억	만원	억만원	② 원리금 연체중		
					③ 상환완료		
		<sub>액</sub> 억	만원		① 원리금 상환중 →	월만원	
2) 그오기가 이					② 원리금 연체중		
3) 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년 금액			억만원	③ 상환완료		
					④ 기타(중도상환 및 일시상환 등)		
4)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억만원							

- 입주 당시의 임차료가 아닌 현재 임차료를 기준으로 마련 금액을 응답
- 서울시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융자받은 경우, 융자금을 포함한 총 주택 보증금액을 응답
- 남은 대출금이 0인 경우 (3) 원리금 상환여부는 ③상환완료로 체크
- 3)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의 경우 이자가 없거나, 일시상환이나 중도상환 시 같이 이자를 주기로 한 경우는 모두 ④ 기타에 체크

**L8** 

(L2의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⑤사글세 및 연세 가구 응답자만) 귀 댁의 임차보증금은 어느 L9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약간 부담된다

④ 매우 부담된다

• 현재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부담 정도를 응답

⑦ 임차료를 마련하지 못해 연체하고 있음

(L2의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⑥일세 가구 응답자만 응답) 현재 살고 계신 L10 임차료(월세)는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 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 ③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⑤ 사회단체 도움

- ② 가족·친지의 도움
- ④ 주거급여를 제외한 정부 및 지자체 도움
- ⑥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론 이용
- (L2의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⑥일세 가구 응답자만 응답) 귀하께서는 L11 월임차료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 ②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③ 약간 부담된다

- ④ 매우 부담된다
- 귀 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내부의 상태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불량으로 L12 표기해 주십시오.

구 분	불량	다소 불량	다소 양호	양호
1) 주택성능(결로·곰팡이, 누수·방수상태 등)	1	2	3	4
2) 마감상태(도배, 장판, 도어, 창문 등)	1	2	3	4
3) 설비상태(냉난방·냉온수 설비, 주방설비, 전등·콘센트 전기기구 등)	1)	2	3	4
4) 배리어프리 설계(문턱 제거, 욕실단차 제거, 비상벨 등)	1)	2	3	4

귀 댁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환경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불량으로 L13 표기해 주십시오.

구 분	불량	다소 불량	다소 양호	양호
1) 휴게·녹지공간(놀이터, 야외운동시설, 공원 등)	1	2	3	4
2) 주차시설 및 공간의 이용편리성, 안전성	1)	2	3	4
3) 장애인·고령자 배려 시설(엘리베이터, 경사로, 보행로 단차 제거 등)	1)	2	3	4
4) 방범상태(CCTV 설치, 가로등, 안심벨 등)	1	2	3	4

#### 귀 댁이 현재 살고 계신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L14 장소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대중교통 편의성(지하철, 버스 등)	1	2	3	4
2)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시장, 마트, 백화점 등)	1	2	3	4
3) 공공시설 접근성(주민센터, 경찰서 등)	1)	2	3	4
4) 문화시설 접근성(도서관, 미술관 등)	1)	2	3	4
5) 의료시설 접근성(병원, 의료복지시설 등)	1)	2	3	4
6) 녹지·휴게공간 접근성(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1)	2	3	4
7) 복지시설 접근성(복지관, 경로당 등)	1	2	3	4
8) 교육환경(유치원, 학교, 학원 등)	1	2	3	4
9) 보육환경(어린이집, 놀이방 등)	1)	2	3	4

#### 귀 댁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L15 귀하를 비롯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근로 및 사업 소득, 자산 소득, 공적·사전이전소득, 사회보험수혜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① 1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 299만원
- ⑤ 400만원 ~ 499만원
- ⑦ 600만원 ~ 699만원
- ⑨ 1,000만원 ~ 1,499만원

- ② 100만원 ~ 199만원
- ④ 300만원 ~ 399만원
- ⑥ 500만원 ~ 599만원
- ⑧ 700만원 ~ 999만원
- ⑩ 1,500만원 이상

※ 퇴거 가구는 L 파트 응답 후, 설문 종료.



## M. 분가 가구

※ 분가 가구가 2개 이상인 경우, M. 분가 가구 파트를 가구별로 반복해서 질문함.

M1

#### 분가 가구의 주택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일반단독주택
-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 ⑤ 연립주택
- ①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 ⑨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 ① 기숙사

- ② 다가구단독주택
- ④ 아파트
- ⑥ 다세대주택
- ⑧ 오피스텔
- ⑩ 고시원
- ⑫ 기타(특수사회시설 등)

M2

### 분가 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또는 연세

⑥ 일세

- ⑦ 무상
  - 보증금 있는 월세 : 일정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매월 집세를 내는 경우
  -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한 액수의 집세를 내는 무보증월세에 해당되는 경우, 전월세 전환한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 연 세: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일 세: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 무 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직계혈족을 제외하고 응답

**M3** 

#### 분가 가구 주택의 방은 몇 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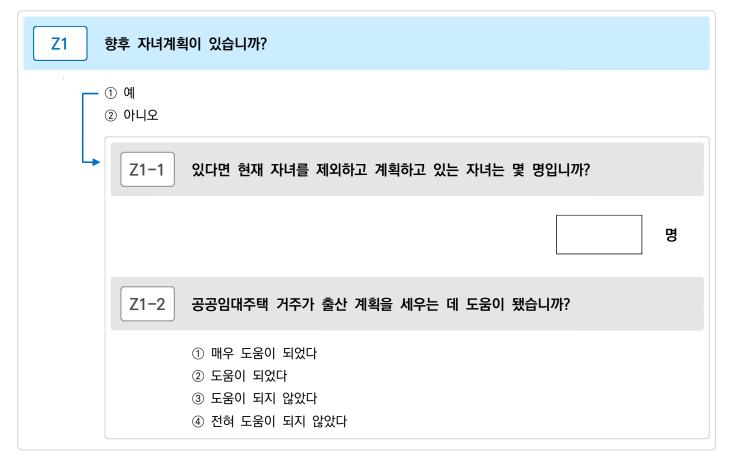
방 개

-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8m(6척) 이상, 넓이가 3.3㎡(1평) 이상인 거주공간으로서, 취침용, 서재, 옷방, 놀이방으로 이용되는 공간
- 단순히 물건을 쌓아 놓거나(창고 기능) 사용하지 않는 방과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음
- 다락은 방의 요건을 갖추고 사람이 실제로 지내고 있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

M4	분가 가구 주택의 전용면적(실사용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 전용면적은 실제	고 <del>조하</del> 는 시	ILO 대체이	평 또는		m²
	• 신용한식는 결제	기구이는 걸/	시중 단작님			
M5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자가는 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		가격을 기준으로	, 전세나
		1) 자	가(M의 ①응답자)	현재가격 :	억	만원
	분가 가구 주택 가격 및 임차료	2) 전	세(M2의 ②응답자)	전세보증금 :	억	만원
		3) 보증금 있는 월세(M2의 ③응답자)	보증금 :	억	만원	
		o,	ML E I(III   001 I)	월 세 :		원
		4) 보증금	없는 월세(M2의④~⑥응답자)	월 세 :		원
			가장 근래에 체결/갱신한 현재 유 · 융자받은 경우, 융자금을 포함한			
M6			!증금 있는 월세 응답자만 원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			백 구입
	① 지원해 주었다		→ M6-1. 지원 금액			만원
	② 지원해 주지 않	았다				



## Z. 출산 및 육아(행복주택 중 신혼부부만 진행)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4차년도 설문지

가구원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주거생활, 경제활동, 주거복지 수요 등 주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합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설문 응답 내용 및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9월

이 조사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주관기관

## **5H** 서울주택도시공사

※ 담당자 : 성진욱 책임연구원※ 연락처 : 02-3410-8521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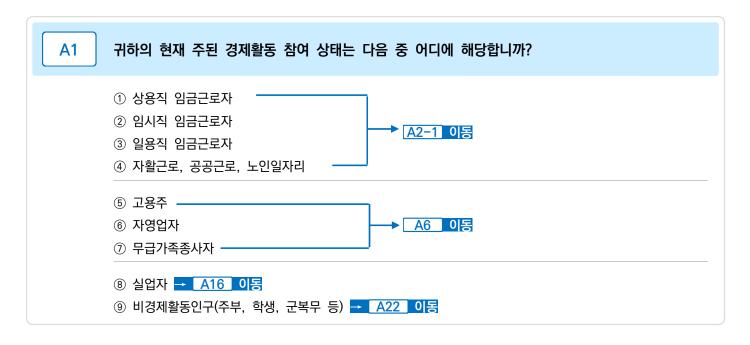
※ 담당자 : 김지혜 수석팀장※ 연락처 : 02-3014-0122

가구번호			응답자 구분				
응답자 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주소	시/도	시/군/	구 세부주소 :				
대전이니	QI	O.I.	면접 시작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일시	월	일	면접 종료시간	오전/오후	시	분	
면접원 ID			면접원 성명				
검증결과							



## A. 일자리

※ 가구용 설문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내용과 일치하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가구용 설문의 응답이 틀린 경우는 가구원용 A1에 변경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귀하께서 다니시는 일자리를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A2-1~A15, A25)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금근로자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만 응답(A1의 ①~④ 응답자만 응답)

귀하는 임금(급여)을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A2-1 받습니까? ① 현재 일하고 있는 곳 → A2-2 이동

> → A2-3 이동 ② 파견업체

> → A2-3 이동 ③ 용역업체

- 등록된 근로자파견업체와 '파견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파견업체로, 그 외에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와 현재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청소용역, 경비용역, 사내하청 등)에는 용역업체로 응답합니다.
- 귀하의 현재 직장(일)이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A2-2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 ① 例
  - ② 아니오
  - 등록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포함됩니다.

#### A2-3 귀하께서 평소 주로 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가정에서
- ② 사업장내 또는 사무실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 파출부, 입주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②에 해당됩니다.

#### **A3** 귀하의 근로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시간제
- ② 전일제

**A4** 

- 시간제 :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또한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 전일제 :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십장(혹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A4의 ②응답자만 응답) 귀하의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A4-1 일하는 형태입니까?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이 해당됩니다.

- ① 예
- ② 아니오

#### **A5** 귀하의 근로지속 가능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중대한 과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 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
  -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 A5-1

#### (A5의 ①응답자만 응답) '계속 다닐 수 있다'라고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 ②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 ③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A5-2

#### (A5의 ②응답자만 응답) '계속 다닐 수 없다'라고 답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 ②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 ③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 ⑥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 ⑦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므로
- ⑧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 ⑨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 ⑩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 ⑪ 기타 (

#### ※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만 응답(A1의 ①~⑦ 응답자만 응답)

#### **A6** 귀하의 업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 ③ 제조업
- 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⑦ 도매 및 소매업
- ⑨ 숙박 및 음식점업
- ⑪ 금융 및 보험업
- ③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 ② 국제 및 외국기관
- ※ 반드시 34~35쪽에 있는 보기카드 〈표준산업분류〉를 확인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A7**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관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광업

⑥ 건설업

⑧ 운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⑩ 교육서비스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④ 서비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⑩ 군인
- ※ 반드시 36쪽에 있는 보기카드 〈표준직업분류〉를 확인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현재 일자리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A8-1 평균 며칠이나 일하고 계십니까?

> 일주일 평균 시간 일주일 일 일한다

A8-2 (A1의 ①~④ 응답자만 응답) 현재 이 일자리에서 임금은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 세금공제 후 월평균 임금은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 보험요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노조회비와 사내동호회비 등 기타 공제 금액은 포함됩니다.
A8-3-1 (A1의 ⑤~⑦ 응답자만 응답) 현재 이 일자리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농림수산업은 판매하여 얻은 수입(비용 포함)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연간 매출액 만원
(A1의 ⑤~⑥ 응답자만 응답) 현재 이 일자리에서 얻는 귀하의 소득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순수입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월평균 만원
②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A9 귀하께서 직장까지 가는 주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① 승용차       ② 대중교통(버스, 전철 등)         ③ 도보       ④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포함)         ⑤ 오토바이       ⑥ 기타(재택 포함)
A10 위에서 응답하신 교통수단 이용시간을 포함하여 귀하께서는 직장까지 통근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은 얼마입니까? 편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분
A11 직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 구 읍/면/동

#### A12 현재부터 지난 1년간 정부가 제공하는 아래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있음	없음
1)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1	2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	2
3)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	2
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	2
5) 실업자 직업훈련	1	2
6) 창업지원	1	2

• 자활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공공근로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제공.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
•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화에 기여
• 실업자 직업훈련	구직자인 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해주는 프로그램
•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창업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A13 귀하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
- ② 미가입
- ③ 비해당
- 9 모름

#### **A14** 귀하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
- ② 미가입
- ③ 비해당
- 9 모름

#### A15 귀하는 현재 퇴직금 및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가입
- ② 미가입
- ③ 비해당
- 9 모름
- 귀하는 지금까지 응답해 주신 주된 일자리 이외에 다른 일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A25** 부업, 아르바이트 등도 모두 일자리에 포함됩니다.
  - ① 있다
  - ② 없다

→ 응답 후 B. 이웃관계 파트로 이동

## ※ 현재 실업자인 경우만 응답(A1의 ® 응답자만 응답)

A16	귀하께서는 지난 4 <sup>3</sup> 골라주십시오.	주간 어떤 방법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보셨습니까? 가장 경	동요한 순서대로	를 2개 -
	<ol> <li>3 취직시험 응시</li> <li>0 인터넷(온라인)을 통</li> <li>가업체 문의 또는</li> <li>자영업 준비</li> </ol>	통해 구직등록 또는 응모		등을 보고(오프라인을 : <sup>토</sup> 천	통해) 응모	
A17	다음 중 어떤 형태의	일자리를 원하십니까?				
	① 임금근로자 ③ 자영업자		<ul><li>② 고용주</li><li>④ 무급가족종사</li></ul>	자		
A18	희망하는 근로시간의	형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① 전일제 근로 ② 시간제 근로 <mark>→ </mark> /	<u>\19</u> 이동				
Ļ	A18-1 그렇다	<b>ŀ면, 희망하는 일자리(</b> 직	l장)에서의 수입 <del>:</del>	은 적어도 얼마나 도	어야 합니까?	
				월평균		만원
	• 세	전 세후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금액을 응답해 주십			만원
A19		전 세후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실시오.		만원

### **A20**

## 귀하께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겹치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학력, 경력(경험), 기술 부족(자격 제한)
- ③ 근무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 ⑤ 취업알선기관 및 서비스 부재, 접근의 어려움
- ⑦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
- ⑨ 심리적 불안감이나 초조함(자신감 결여)
- ⑪ 이동능력의 제한
- ⑬ 기타(

- ② 수입이나 임금이 맞지 않아서
- ④ 구직(취업, 창업) 정보접근의 어려움
- ⑥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
  - ⑧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건강문제)
- ⑩ 신체기능의 제한
- ⑫ 의사소통의 제한
- ⑭ 특별히 없었음

### **A21**

### 현재부터 지난 1년간 정부가 제공하는 아래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구분	있음	없음
1)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1	2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	2
3)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	2
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	2
5) 실업자 직업훈련	1	2
6) 창업지원	1)	2

• 자활근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공공근로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제공.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
•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화에 기여
• 실업자 직업훈련	구직자인 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해주는 프로그램
•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창업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 응답 후 B. 이웃관계 파트로 이동

#### ※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만 응답(A1의 ⑨ 응답자만 응답)

## A22

귀하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이유가 겹치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나이가 많아서
- ③ 군복무 및 군복무대기자
- ⑤ 진학준비
- ⑦ 가사
- ⑨ 간병
- ⑪ 근로의사 없음

- ② 신체적인 근로무능력(장애인 등)
- ④ 정규교육기관 학업
- ⑥ 취업준비(기술, 기능 등을 향상)
- ⑧ 자녀양육
- ⑩ 구직활동포기
- ① 기타(

### **A23**

### 현재부터 지난 1년간 정부가 제공하는 아래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구분	있음	없음
1)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1	2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	2
3)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1	2
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	2
5) 실업자 직업훈련	1	2
6) 창업지원	1)	2

<ul><li>자활근로</li><li>공공근로</li></ul>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국가 및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제공. 실업자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유형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
•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화에 기여
• 실업자 직업훈련	구직자인 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 이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해주는 프로그램
•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금을 직접 지원하거나 창업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 → 응답 후 B. 이웃관계 파트로 이동

)



## ■ B. 이웃관계

- **B1**
- 귀하께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B2**
- 귀하께서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의 이웃 사람들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B3**
- 귀하께서는 이웃과의 교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② 교류하지 않는 편이 좋다
- ③ 교류하는 편이 좋다
- ④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좋다
- **B4**

####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의 이웃과 어떻게 지내십니까?

- ① 이웃에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른다
- ② 이웃을 알지만 인사를 하진 않는다
- ③ 이웃과 인사를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 ④ 이웃의 집안대소사를 알거나 왕래가 있는 편이다
- **B5**

#### 귀하께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은 몇 명입니까?

① 없다

② 1명

③ 2명

④ 3명 이상

B7	귀하께서는 만일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의 이웃 사람 누군가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경우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B8	귀하께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이웃 거주자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현재부터 지난 1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간을
	① 있음 ② 없음 <mark>→ C.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파트 이동</mark>	
Ļ	B8-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주차문제         ② 소음 및 고성방가         ③ 자녀들 간 다툼         ④ 공동기물 파손 및 공용공간으로 인한 갈등         ⑤ 쓰레기 방치 및 투하         ⑥ 음주와 관련된 갈등         ⑦ 흡연과 관련된 갈등         ⑧ 애완동물 관련된 갈등         ⑨ 기타(	

귀하께서는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② 없음

**B6** 

① 있음



## C. 가족 및 사회적 관계

**C1** 

#### 귀하께서는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다른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십니까?

- ① 전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
- ③ 때때로 연락을 주고 받는다
- ⑨ 해당사항 없음(다른 가족 없음)
- ②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
- ④ 자주 연락을 주고 받는다

**C2** 

### 귀하께서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면 가족이 기꺼이 도와주십니까?

-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뿐 아니라 다른 가족까지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동거가구원이 없고 다른 가족도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 ⑨ 해당사항 없음(다른 가족 없음)
- **C3**

#### 귀하께서는 다음의 관계 각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1) 현재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의 관계	1	2	3	4	9
2)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	1)	2	3	4	9
3) 친구들과의 관계	1)	2	3	4	$\times$

### C4

### 귀하께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없다

② 동거 가족

- ③ 비동거 가족

④ 단지 내 이웃

⑤ 친구

⑥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관리사무소 등

- ⑦ 기타
  - C4-1

#### (C4의 ③~⑦ 응답자만)

위의 사람 또는 기관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자동차를 기준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① 10분 내

② 10분 이상 30분 내

③ 30분 이상 1시간 내

④ 1시간 이상



D3

## D. 주민활동 및 커뮤니티시설

귀하께서는 현재부터 지난 1년간 단지(지역) 내 각종 주민조직이나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D1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D3 이동 D1-1 어떤 조직입니까? ① 임차인대표회의 ② 부녀회 ③ 노인회 ④ 자율방범대 ⑤ 각종 동호회 ⑥ 입주자 커뮤니티(온라인 사이트) ⑧ 기타( ⑦ 청년회 )

>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단지 내에는 다음 커뮤니티 시설이 있습니까? 각각의 시설이 있는 경우 이용하고 계시는지, 이용하시는 경우 만족도는 어떠한지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존재 여부		존재 여부 2) 0		이용 0	이용 여부		3) 만족도			
	없다	있다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디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작은도서관(문고 등)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2) 어린이집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3) 경로당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4) 주민카페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5) 놀이터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6) 공용세탁실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7) 무인택배함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8) 게스트하우스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9) 공동주방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10) 운동시설 (피트니스 센터 등)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11) 다목적실 (화일, 세마실, 전명동사설 등)	1	2	$\Rightarrow$	1)	2	3	$\Rightarrow$	1)	2	3	4

#### **D4** 단지 내에 없는 커뮤니티 시설 중, 가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작은도서관(문고 등)
- ③ 경로당
- ⑤ 놀이터
- ⑦ 무인택배함
- ⑨ 공동주방

- ② 어린이집
- ④ 주민카페
- ⑥ 공용세탁실
- ⑧ 게스트하우스
- ⑩ 운동시설(피트니스 센터 등)
- ⑪ 다목적실(회의실, 세미나실, 주민공동시설 등)⑫ 없음

#### **D5** 현재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 중, 추가 및 증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 ① 작은도서관(문고 등)
- ③ 경로당
- ⑤ 놀이터
- ⑦ 무인택배함
- ⑨ 공동주방

- ② 어린이집
- ④ 주민카페
- ⑥ 공용세탁실
- ⑧ 게스트하우스
- ⑩ 운동시설(피트니스 센터 등)
- ⑪ 다목적실(회의실, 세미나실, 주민공동시설 등)⑫ 없음



## E.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E1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 E1-1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다소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E2** 향후 이사할 상황이 된다면 다음 중 어떤 곳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 ① 영구임대주택
- ③ 국민임대주택
- ⑦ 기타(

- ② 다가구매입임대주택
- ④ 장기전세
- ⑤ 민간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등) ⑥ 민간 아파트

#### **E3** 임대주택 입주민으로서 차별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E4 이동

#### E3-1 차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①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 ② 참는다
- ③ 항의한다

#### E3-2 차별을 주로 어디에서 느끼셨습니까?

- ①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
- ② 직장
- ③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 ④ 외부 출입구 및 단지 내 출입동
- ⑤ 주민회의, 반상회 등
- ⑥ 기타(

<b>F</b> 4	(현재 가구원 중 만 18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만 응답)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	0
E4	(현재 가구원 중 만 18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만 응답)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에 임대주택 거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② 없다

① 있다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사회통합을 위해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이 어울려 사는 것에 대해 **E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대체로 반대한다

③ 대체로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장례식장 등과 같은 비선호 시설이 **E6** 입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반대한다

② 대체로 반대한다

③ 대체로 찬성한다

④ 매우 찬성한다

귀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주택을 한 단지에 혼합하여 짓는 것이 좋다고 **E7** 보십니까, 다른 단지에 분리하여 짓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 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한 단지에 혼합하여 짓는 것이 좋다
- ②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다른 단지에 분리하여 짓는 것이 좋다
- ③ 모르겠다

귀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단지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例

**E8** 

② 아니오 <del>→ E9</del> 이동

혼합단지에 거주하면서 분양주택 거주민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나 갈등의 E8-1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다소 심각함	매우 심각함
1) 주차로 인한 갈등	1	2	3	4
2) 공용공간 기물 적치 또는 공용기물파손	1	2	3	4
3) 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결 문제	1)	2	3	4)
4) 단지 내 놀이터	1	2	3	4
5) 단지 내 통과도로	1)	2	3	4
6)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1)	2	3	4

**E9** 

## 귀 댁이 현재 살고 계신 주거환경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대중교통 편의성(지하철, 버스 등)	1	2	3	4
2)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시장, 마트, 백화점 등)	1	2	3	4
3) 공공시설 접근성(주민센터, 경찰서 등)	1	2	3	4
4) 문화시설 접근성(도서관, 미술관 등)	1)	2	3	4
5) 의료시설 접근성(병원, 의료복지시설 등)	1)	2	3	4
6) 녹지·휴게공간 접근성(공원, 생활체육시설 등)	1	2	3	4
7) 복지시설 접근성(복지관, 경로당 등)	1	2	3	4
8) 교육환경(유치원, 학교, 학원 등)	1	2	3	4
9) 보육환경(어린이집, 놀이방 등)	1)	2	3	4



## F. 장애인 및 고령자, 청년

F1 귀하는 등	등록 장애인이십니까?		
① 예			상애유형 상애구분 → F2 응답 후 F3 이동
	. <mark>→ F2 이동</mark> 당애인이신 경우, 아래 보기어	네서 주된 장애유형과 장애구분 <sup>.</sup>	을 선택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주特	된 장애유형	장애구분
보기	① 지체 ② 뇌병변 ③ 시각 ④ 청각 ⑤ 언어 ⑥ 안면 ⑦ 신장 ⑧ 심장	<ul> <li>⑨ 간</li> <li>⑩ 호흡기</li> <li>⑪ 장루·요루</li> <li>⑫ 뇌전증</li> <li>⑬ 지적</li> <li>⑭ 정신</li> <li>⑮ 자폐증</li> </ul>	① 중증(기존 1~3급) ② 경증(기존 4~6급)

F2 귀하의 출생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출생연도 년 → F1의 ① 등록장애인이거나 F2의 출생연도 1956년 이하인 경우 F3 이동 → F1의 ② 등록장애인이 아니면서 F2의 출생연도 1957년 이상인 경우 G. 건강 및 의료 파트 이동

#### ※ 등록장애인이시거나 만65세 이상(출생연도 1956년 이하)인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 F3 아래의 일상생활 수행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해주십시오.

구 분	전혀 할 수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	어렵지만 혼자 할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다
1) 식사준비	1)	2	3	4
2) 식사하기	1)	2	3	4
3) 근거리 외출	1)	2	3	4
4) 대중교통 이용(지하철, 버스 등)	1)	2	3	4
5) 옷입기	1)	2	3	4
6) 세수하기	1)	2	3	4
7) 목욕하기	1)	2	3	4
8) 화장실 사용	1)	2	3	4
9) 청소, 설거지, 빨래 등 집안일	1)	2	3	4

#### F4 귀하께서는 지난 3개월 동안 거동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F5 이동

#### F4-1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① 혼자 해결함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형제, 자매 등 가족

⑤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직원/관계자

⑥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⑦ 기타(

#### 〈각종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 재가노인 복지시설

다음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

)

- 1. 방문요양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요양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공동생활가정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F5 귀하의 주택 공용부분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배려 시설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불량	다소 불량	다소 양호	양호	비해당
1) 복도 및 통로 넓이	1)	2	3	4	
2) 승강기	1	2	3	4	9
3) 경사로(출입구 주변)	1	2	3	4	9
4) 출입구 넓이	1)	2	3	4	

• 승강기, 경사로가 없는 경우 비해당 응답

### 귀하의 주택 전용부분 중 생활하시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은 어디입니까?

① 현관

F6

- ② 거실
- ③ 침실
- ④ 주방

- ⑤ 욕실
- ⑥ 기타( ) ⑦ 없음

#### ※ 만65세 이상인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F7** 

#### (만65세 이상만 응답)

#### 현재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국민연금

② 기초연금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 ④ 특수직역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등)
- ⑤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⑥ 개인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등)

- ⑦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 ⑧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의 부양

⑨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⑩ 정부 및 사회 · 민간단체 지원
-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 후 기초연금제도 시행하고 있음. 대상은

만 65세 이상 중에서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이하(소득 하위 70%)가 해당

특수직역연급(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 특수직역연금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

예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있음

• 퇴직연금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

• 개인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제외한 개인연금만을

의미. 보험, 저축성 보험 등을 말함

• 금융자산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개인연금을 제외한

것으로 예금적금(CMA포함), 주식, 채권, 신탁, 저축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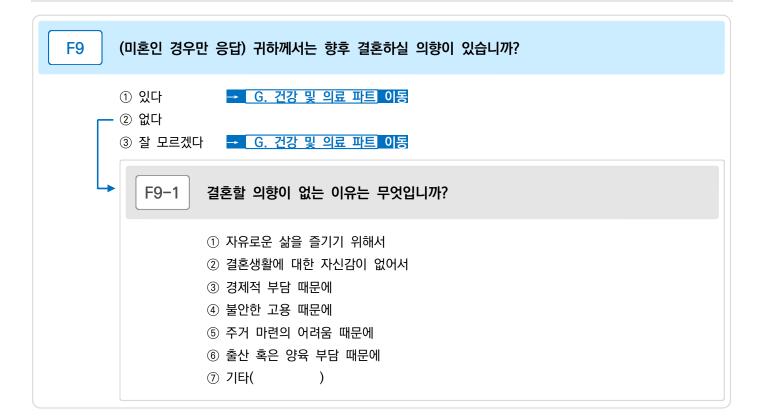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포함

F8

### (만65세 이상 1인가구만 응답) 귀하께서는 향후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생활할 계획이십니까?

- ① 계속해서 혼자 현재주택에 거주한다
- ② 현재주택에서 가족, 친지 등과 함께 거주한다
- ③ 가족, 친지 등의 집으로 이동한다
- ④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원 등 시설을 이용한다
- ⑤ 기타(

※ 만 39세 이하(출생연도 1982년 이상)인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 G. 건강 및 의료

G1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건강이 아주 안 좋다 ②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아주 건강하다 G2-1 (만19~49세 기혼 여성 가구원만 응답) 귀하는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셨습니까? 명 G2-2 (만19~49세 기혼 여성 가구원만 응답) 향후 자녀계획이 있습니까? ① 例 ② 아니오 → G3 이동 G2-2-1 있으시다면 현재 자녀를 제외하고 계획하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명 G2-2-2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출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② 도움이 되었다 ③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귀하께서는 현재부터 지난 1년간 의료기관(한방 및 치과 병의원 포함)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신 G3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G4 이동 • 외래진료란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함 • 동네 개인 병의원, 보건소, 4개과 이상의 진료과목과 전문의를 갖춘 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으신 경험을 말함 • 하루에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 • 순회진료(경로당 순회진료, 봉사 순회 진료 등)를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입원진료와 건강검진은 포함되지 않음 G3-1 귀하께서는 현재부터 지난 1년간 외래진료를 몇 회 받으셨습니까? 회 귀하께서 현재부터 지난 1년간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의 형태는 다음 중 G3-2 무엇입니까?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 내/지역 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G4 귀하께서는 3	현재부터 지난 1년간 입원	한 경험이 있습니까?		
<ul><li>① 예</li><li>② 아니오 ➡</li></ul>	G5 이동			
• 종합병원 분	뿐 아니라 보건소, 한방 및 치과 '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험을 말함	
G4-1	귀하께서는 현재부터 지	난 1년간 며칠 입원하셨습니	<i>ነ</i> ም?	
				일
G4-2	입원하신 이유는 무엇이? 가장 최근 입원한 경험을	었습니까? 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u>)</u>	
	① 사고 ④ 우울증 ⑦ 요양/휴식	<ul><li>② 질병</li><li>⑤ 출산</li><li>⑧ 미용/성형/비만</li></ul>	<ul><li>③ 중독(알콜, 도박 등)</li><li>⑥ 종합건강검진패키지</li><li>⑨ 기타(</li></ul>	)

#### G5 귀하께서는 현재부터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例 ② 아니오

#### G6 귀하께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계십니까?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 ②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 → H.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파트 이동
- 만성질환이란 보통 6개월 혹은 1년 이상 계속되는 질환을 말함. 급성질환과 달리 그 증세가 완만하게 나타나 장기간 지속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이라고 함

#### G6-1 어떤 질환입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② 관절염, 요통, 디스크
- ③ 위염, 위궤양 등
- ⑤ 당뇨병
- ⑦ 고혈압, 저혈압
- ⑨ 심근경색증, 협심증(심혈관질환) ⑩ 폐결핵, 결핵
- ⑪ 만성기관지염
- ⑬ 백내장, 녹내장
- ⑤ 만성신부전증(신장기능저하)
- ① 골다공증

- ④ 만성간염, 간경변 등 간질환
- ⑥ 갑상선질환
- ⑧ 중풍,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 ⑫ 천식
- ⑩ 만성중이염
- ⑯ 골절, 탈골 및 사고후유증
- 18 기타
- 귀하께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현재부터 지난 1년간 병의원을 G6-2 방문하고 계십니까?

① 例

② 아니오

귀하께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처방약(연고, 주사제 포함)을 G6-3 복용(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H.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파트 이동
- G6-4

(G6-3의 ①응답자만 응답) 위의 처방약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나 부담되십니까?

- ① 가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다
- ② 가계에 별로 부담을 주지 않는다
- ③ 가계에 약간의 부담을 준다
- ④ 가계에 매우 큰 부담을 준다

		i	
_			
_		×	
	~		
		×	
=			

**H3** 

H4

## H.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H1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	까?	
	① 매일 피움	매일 피우는 경우, 하루 기준	개비
	② 가끔 피움	가끔 피우는 경우, 한 달 기준	개비
	③ 피우지 않음 → H2 이동		

#### H2 귀하께서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② 한달에 1번 이하

③ 한달에 2~4번 정도

④ 일주일에 2~3번 정도

⑤ 일주일에 4번 이상

## (H2의 2~5) 응답자만) 현재부터 지난 1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전혀 없음	몇 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ol> <li>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li> </ol>	1	2	3	4	(5)
2)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3)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1)	2	3	4	(5)

#### 귀하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②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다
- ③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 ④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H5** 

##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1	2	3	4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6)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2	3	4)
7)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8)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 H5-1

## 귀하는 <u>지난 1주일간</u>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1	2	3	4
2)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3)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2	3	4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9) 마음이 슬펐다.	1)	2	3	4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1)	2	3	4

**H6** 

귀하께서는 현재부터 지난 1년간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I. 여가활동

11

#### 귀댁에는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12

#### 귀하께서는 인터넷 사용방법을 아십니까?

- ① 사용방법을 전혀 모른다
- ② 간단한 뉴스 등 조금 사용할 줄 안다
- ③ 인터넷을 활용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 ④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등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13

#### 귀하께서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14-1 이동

I3-1

####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전화만 한다
- ② 전화와 문자를 병행한다
- ③ 앱을 활용할 줄 안다(예: 카카오톡 등)

14-1

#### 귀하의 여가활동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입주민 동아리 소모임(스포츠) 개설
- ② 단지 내 공터, 노인정 등을 활용하여 입주민 공연 관람 제공
- ③ 입주민 학생들을 위한 국내탐방(문화유산, 캠핑, 온천, 해외, 테마파크 등)
- ④ 평생교육 강좌와 같이 취미·오락 프로그램(악기, 손글씨)을 통한 배움 제공

15

#### 평소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5시간 미만

- ②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③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 ④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⑤ 20시간 이상 ~ 24시간 미만
- ⑥ 24시간(하루종일)



## J. 정책 인식

J1

## 귀하께서는 자가주택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그렇지 않다
- ④ 매우 그렇지 않다



## ■ K. 코로나 추가 문항

#### K1

####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경험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 등 경제적 문제
- ② 휴직, 실업 등 일자리 문제
- ③ 자녀, 부모 등 가족 돌봄 문제
- ④ 본인 혹은 자녀의 교육 문제
- ⑤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제약으로 인한 어려움
- ⑥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 문제
- ⑦ 기타 (

### **K2**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및 불안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십니까?

- ① 항상 느낀다
- ② 종종 느낀다
- ③ 거의 느끼지 않는다 → 【3 이동
-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 → K3 이동

#### K2-1

####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 ②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염려
- ③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 ④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이상
- ⑤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 ⑥ 기타(\_\_\_\_\_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만 응답(A1의 ①~⑦ 응답자만 응답)) **K3** 귀하께서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인 2020년 2월 이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근무하셨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K3-3 이동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근로시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K3-1 ① 증가했다 ② 감소했다 ③ 변화 없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급여 또는 소득(매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K3-2 ① 증가했다 ② 감소했다 ③ 변화 없음 K3-3 귀하께서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공공임대주택의 감염병 예방 및 위생 관리 조치 수준은 어떠하다고 **K4** 생각하십니까?

② 없다

- ①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
- ② 잘 관리되는 편이다
- ③ 잘 관리가 되지 않는 편이다

① 있다

④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이후의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K5**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을 골라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변화 없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1	2	3	4	(5)
2) 주위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1)	2	3	4	(5)
3)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1)	2	3	4)	(5)
4) 가족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1)	2	3	4	(5)
5) 위생, 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	2	3	4)	(5)
6)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1)	2	3	4)	(5)
7) 사회규범 준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커졌다	1)	2	3	4)	5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6 보기카드

<u> </u>	ᇈᄑᄌ	사어	
인포			ᄑᄑ

인독교군인입 군규 대분류	중분류
7112-11	01.농업
1. 농업, 임업 및 어업	02.임업
	03.어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2. 광업	06. 금속 광업
2. 정법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6. 수도사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복원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0. 건글급 	42. 전문직별 공사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 도매 및 소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8.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 부동산업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74. 시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 교육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창작, 예술 및 여기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21.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직업 분류

건축프로그리 교표	조님리
대분류	중분류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 관리자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2-14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7. 성상임용 선문가 및 관련직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0 110 5117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 사무 종사자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사무직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 서비스 종사자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1. 영업직
5. 판매 종사자	52. 매장 판매직
O. E-11 B-11-1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1. 농축산 숙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3. 어업 숙련직
	71.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72.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 710 E x CC 710 644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79. 기타 기능 관련직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이 자원/기계 조자 미 조리 조니지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9. 단순노무 종사자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V. LE-1 0 171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40 70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10. 군인	A1. 군인